



외국의 세제

미국 지방재정의 주요 이슈

- 지방정부의 選擇稅 -

류 금 렬

행정자치부 세제과 세제1담당

I. 미국의 주 및 지방세제의 변천

미국 연방정부 기능이양 추세와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주 및 지방정부의 대응이 매우 다양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정치적·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대한 주 정부의 신속한 대응은 미국의 연방제를 발전시켜온 원동력이 되어 왔다. 주 정부의 대응은 정치·경제체제에 영향을 주는 전통과 원칙을 중시하는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 왔다. 특히 주 정부의 재정정책은 이러한 기초 위에서 형성되는 경향이 강하였다. 이에 따라 과

거의 주 및 지방세제의 변천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1. 주 및 지방세제의 변화 추세

1970년부터 1994년까지 지난 25년간 주 및 지방세제상의 변화의 추세(trends)를 보면 다음과 같은 5가지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1) 주 및 지방세 부담의 증가 추세

주 및 지방세 부담 수준은 통상 1인당(per capita) 세부담액과 개인소득 중에

<표 1> 개인소득 \$100중 주 및 지방세 부담액

기 간 별	계	지방	주
'70년대	\$11.88	\$5.13	\$6.74
'80년대	\$4.35	\$4.35	\$6.69
'90년대	\$4.63	\$4.63	\$6.78

자료: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A Guide to Local Option Taxes, p.3.

서 차지하는 세액(a share of personal income)의 2가지 방법으로 측정한다. 후자의 방법이 일정기간의 소득의 증가율에 비해 조세의 증가율이 어느 정도 높은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더 적합하다. <표 1>은 '70년대, '80년대 및 '90년 초반의 개인소득 100달러 중 주 및 지방세 부담액을 보여주고 있다. '80년대의 세수는 '70년대에 비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90년대에 들어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2) 州의 財政集權化 傾向

주의 재정집권화(fiscal centralization) 경향은 주 및 지방세가 주정부에 의해 징수되는 비율에 의해 측정된다. 이러한 추세는 1970년과 1994년도의 주 및 지방세수중 주정부가 징수한 주 및 지방세수의 비율의 대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1970년도 평균 주정부 징수 비율은 55%이었으나, 1994년은 60%로 증가하였다. 가장 비율이 높은 주는 하

와이주로서 80%이었으며, 가장 낮은 주는 뉴햄프셔주로서 34%이었다.

주의 재정집권화에 따른 장점은 주 전역에 걸쳐 지역간의 재정력 격차를 최소화(minimization of fiscal disparity)하고 세부담의 형평화(equalization of tax burden)를 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재정집권화에 따른 단점으로는 지방의 재정책임(fiscal accountability)이 약화되고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지역에서는 별로 필요하지 않은 행정 서비스 비용까지도 부담하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3) 재산세수의 감소

주의 재정집권화가 촉진된 주요 이유는 재산세(property tax)의 감소를 들 수 있다.

1970년도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재산세의 비중은 84%이었으나, 1970년대말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재산세 저항운동과 이에 따른 제안13(proposition

13)¹⁾의 채택 등의 영향으로 1994년에는 75%로 감소했다. 또 주 및 지방세수에서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1970년 39%에서 1994년에는 32%로 감소하였다. 워싱턴 D.C를 포함한 미국 51개 주 중 43개 주에서 1970년도 이후 재산세의 비중이 감소했으며, 8개 주만이 재산세의 비중이 높아졌다.

재산세의 주요 대체재원(replacement revenue)으로는 주 산하의 지방정부가 새로운 과세대상을 선택하여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선택세(local option tax)와 사용료·부담금(user fees and charges)을 들 수 있다. 지방 선택세는 주로 지방판매세(local sales taxes)와 지방소득세(local income taxes)로 한정되었으며 1970년도 이후에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1970년도 23개 주가 산하의 지방정부에 지방

판매세를, 10개 주가 지방소득세의 과세권을 부여하였다. 1997년 현재 33개주가 지방판매세를, 16개 주가 지방소득세의 과세권을 부여하였다. 사용료 및 부담금은 선택세 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해왔다.

4) 개인소득세의 비중 증가

개인소득세는 주정부의 세원으로서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1970년 주정부의 세입 중 개인소득세의 비중은 19%이었으나, 1994년에는 31%로 대폭 증가하였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재원으로는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다. 주 및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에는 12.5%이었으나, 1994년에는 21%로 증가하였다. 1970년 이후의 주 및 지방세 중 개인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는 <표 2>와 같다.

<표 2> 개인소득세 비중의 변화

과세권자별	1970	1980	1994
계	12.5	18.8	20.9
주	19.1	27.1	31.4
지방	4.2	5.8	4.6

자료: *ibid*, P.8에서 재구성

1) 캘리포니아주의 제안13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행정자치부 발행 「외국의 지방세제」, pp.170-171 참조

1970년 이후 개인소득세를 도입한 주는 Ohio('71), Pennsylvania('71), Rhode Island('71), New Jersey('76), Connecticut('91)이다. 특히 Ohio주는 교육재원인 재산세를 대체하기 위해 개인소득세를 도입하였다. New Jersey주와 Connecticut주는 재산세와 소비세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개인소득세를 도입하였다. Alaska주는 개인소득세제를 1979년에 폐지하였다. 개인소득세의 도입에 따라 1970년에 주세 중 27%의 비중을 차지하였던 소비세가 1994년에는 17%로 하락하였다. 자동차연료세(motor fuel tax)도 이 기간 중 13%에서 6%로 떨어졌다.

5) 지역별 세원의 다양성

미국의 주 및 지방정부의 세원은 지역별로 다양하다. <표 3>은 이러한 지역별 세원 구성을 보여 주고 있다.

뉴잉글랜드 지역의 주들은 재산세에 대한 의존도가 타 지역에 비해 높고 판매세의 비중이 낮다. 남동부 지역의 주들은 재산세에 대한 비중이 매우 낮고

판매세에 대한 비중이 매우 높다. 이것은 이 지역에서 재산세에 대한 반감이 높고 지방판매세가 널리 활용되고 있음을 말해 준다.

2. 주 및 지방세제의 최근 경향과 그 원인

위에서 본 주 및 지방세제의 변화 추세는 재산세에 대한 저항(property tax revolt), 교육재원 형평화 압력(school finance equity pressures), 주요 세원의 경제적 특성(economic characteristics of the major tax sources)을 들 수 있다.

1) 재산세에 대한 저항

유권자들의 재산세에 대한 반감은 껄껄과 정부관계자문위원회 (Adversary Commission on Intergovernmental Relations)²⁾의 여론조사결과에 의해 확인된 바 있다. 이 조사는 1972년에 시작되었는데 “가장 나쁜 세금(the worst tax)” 순위 조사로 알려져 왔다.

2) ACIR은 연방정부와 주 및 지방정부간의 관련된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하여 1959년에 연방의 회에 의해 설치된 기구로서 연방정부 대표 9명, 주 및 지방정부 대표 14명, 공익대표 3명 도합 2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표 3> 주 및 지방정부의 세율 구성비

지역/주	재산세	일 반 판매세	개 별 판매세	개 인 소득세	법인세	기타
U.S.	31.5%	23.8%	11.9%	20.6%	4.5%	7.6%
New England	44.0%	13.8%	12.4%	19.4%	4.5%	5.8%
Connecticut	38.9%	19.4%	10.0%	19.8%	6.2%	5.7%
Massachusetts	34.7%	13.4%	7.5%	33.2%	6.2%	4.8%
Maine	40.2%	21.2%	9.4%	21.1%	3.2%	5.0%
New Hampshire	65.9%	0.0%	19.5%	1.4%	5.8%	7.4%
Rhode Island	42.1%	16.6%	12.5%	21.2%	3.2%	4.5%
Vermont	42.4%	12.2%	15.7%	19.9%	2.4%	7.4%
Middle Atlantic	30.2%	13.7%	11.9%	27.6%	5.8%	10.7%
Delaware	14.9%	0.0%	12.1%	32.7%	8.8%	31.5%
District of Columbia	32.1%	18.2%	13.7%	25.8%	6.0%	4.2%
Maryland	27.2%	13.6%	12.7%	36.9%	2.4%	7.1%
New Jersey	46.1%	14.9%	12.5%	17.7%	4.3%	4.5%
New York	32.3%	17.2%	9.4%	28.7%	8.0%	4.3%
Pennsylvania	28.6%	18.5%	11.2%	23.7%	5.3%	12.7%
Great Lakes	36.1%	19.8%	9.9%	24.3%	5.3%	4.7%
Illinois	38.5%	19.7%	15.1%	17.4%	4.2%	5.1%
Indiana	34.9%	20.6%	7.3%	27.8%	6.6%	2.9%
Michigan	41.1%	18.7%	6.6%	20.1%	9.0%	4.5%
Ohio	28.5%	21.3%	11.2%	29.9%	2.7%	6.4%
Wisconsin	37.2%	18.6%	9.2%	26.5%	3.9%	4.5%
Plains	32.0%	25.4%	12.4%	17.9%	3.6%	8.6%
Iowa	34.4%	22.2%	9.3%	23.5%	2.7%	7.9%
Kansas	31.4%	26.4%	10.4%	20.2%	4.3%	7.3%
Minnesota	29.2%	20.3%	11.2%	27.6%	4.4%	7.2%
Missouri	23.4%	30.6%	11.8%	24.2%	2.6%	7.4%
Nebraska	36.8%	23.4%	11.6%	19.3%	3.0%	5.9%
North Dakota	28.8%	21.6%	19.1%	10.6%	5.5%	14.4%
South Dakota	39.9%	33.7%	13.4%	0.0%	2.8%	10.3%

지역/주	재산세	일 반 판매세	개 별 판매세	개 인 소득세	법인세	기타
Southeast	22.8%	29.9%	15.6%	18.8%	3.8%	9.1%
Alabama	12.2%	31.0%	20.9%	21.2%	3.2%	11.5%
Arkansas	15.1%	35.2%	15.6%	23.3%	4.5%	6.3%
Florida	36.1%	33.9%	17.1%	0.0%	3.1%	9.9%
Georgia	29.5%	29.3%	8.9%	24.0%	3.5%	4.7%
Kentucky	16.5%	21.1%	17.6%	29.1%	3.6%	12.0%
Louisiana	17.3%	39.6%	13.9%	13.2%	3.0%	13.0%
Mississippi	23.5%	36.0%	15.8%	14.5%	3.8%	6.4%
North Carolina	21.9%	24.3%	13.9%	28.7%	4.9%	6.2%
South Carolina	28.6%	26.0%	10.5%	23.2%	3.3%	8.4%
Tennessee	22.8%	44.1%	17.6%	1.1%	4.6%	9.8%
Virginia	31.0%	16.6%	14.6%	26.9%	2.2%	8.7%
West Virginia	19.5%	21.7%	20.7%	20.0%	5.5%	12.6%
Southwest	24.2%	34.1%	13.6%	13.6%	2.4%	12.0%
Arizona	30.7%	34.6%	10.2%	15.9%	3.4%	5.2%
New Mexico	12.5%	40.5%	12.0%	16.6%	3.5%	14.9%
Oklahoma	16.4%	29.1%	14.5%	21.9%	2.7%	15.4%
Texas	37.3%	32.4%	17.9%	0.0%	0.0%	12.5%
Rocky Mountain	32.8%	21.3%	9.8%	19.0%	2.7%	14.4%
Colorado	32.3%	27.6%	9.4%	23.5%	1.8%	5.4%
Idaho	26.2%	24.3%	10.4%	25.4%	4.1%	9.7%
Montana	42.7%	0.0%	14.5%	20.7%	4.1%	17.9%
Utah	25.6%	32.5%	9.0%	25.3%	3.4%	4.3%
Wyoming	37.4%	22.2%	5.8%	0.0%	0.0%	34.6%
Far West	23.6%	21.5%	11.7%	12.3%	3.0%	13.8%
Alaska	33.0%	5.0%	6.0%	0.0%	9.0%	47.0%
California	27.3%	27.5%	9.0%	23.2%	6.1%	6.8%
Hawaii	16.6%	35.5%	16.1%	25.6%	1.8%	4.4%
Nevada	21.8%	34.8%	28.3%	0.0%	0.0%	15.1%
Oregon	36.0%	0.0%	9.6%	36.9%	3.8%	13.7%
Washington	30.1%	47.7%	13.0%	0.0%	0.0%	9.3%

자료: U.S. Census Bureau, *Government Finances 1994*

연도별 조사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유권자들의 재산세에 대한 반감은 재산세의 비중을 낮추게 된 원인이 되었다. 1978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제안13 (Proposition 13)이 채택되자 1979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재산세수는 30억 달러나 감소되었다. 이러한 재산세에 대한 저항은 서부지역의 주들로 확산되었다. 재산세에 대한 저항은 주의회로 하여금 재산세의 강력한 인상억제 조치를 도입하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재산세 인상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는 稅率制限(rate limits), 재산세수가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가치(과표)의 증가로 주에서 설정한 稅收增加限度(revenue growth ex-

ceeding limits)에 달하는 경우 종전 세율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財産稅率回歸(property tax rate rollbacks), 과세대상의 종류에 따라 법령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의 평가액의 상한(cap)을 설정하는 評價上限制(limits on assessment)가 있다.

미국의 주별로 채택하고 있는 재산세 증가 억제유형은 <표 5>와 같다.

2) 교육재원의 형평성

재산세는 미국의 주요 교육재원이 되어 왔다. 그러나 재산세의 세수는 부유한 지역과 빈곤 지역간에 격차가 심하다. 이에 따라 지역간 교육에 대한 투자가

<표 4> 가장 나쁜 세금 순위

(단위: %)

연도별	재 산 세	연방소득세	州소득세	판매세	모르겠음
1972	45%	19%	13%	13%	11%
1974	28	30	10	20	14
1977	33	28	11	17	11
1978	32	30	11	18	10
1980	25	36	10	19	10
1982	30	36	11	14	9
1984	29	36	10	15	10
1986	28	37	8	17	10
1988	28	33	10	18	11
1991	30	26	12	19	14

자료: ACIR, Changing Public Attitudes on Government and Taxes, 1992

달라지는 불형평의 문제가 발생된다. 이
 에 따라 주정부에서는 이러한 격차를 해
 소하기 위해서는 재산세에 대한 의존도

를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학생 1
 인당 교육비가 지역간에 불형평한 것은
 무효라고 한 법원의 판결은 이러한 주정

<표 5> 주별 재산세 증가 억제제도

주 별	무 제 한	세율제한	세율회귀	평가상한
계	17	28	11	8
New England				
Connecticut	○			
Maine	○			
Massachusetts		○		
New Hampshire	○			
Rhode Island				
Vermont	○			
Middle Atlantic				
Delaware			○	
District of Columbia	○			
Maryland	○			
New Jersey		○		○
New York		○		
Pennsylvania				
Great Lakes				
Illinois		○		
Indiana				
Michigan		○	○	○
Ohio		○	○	
Wisconsin	○			
Plains				
Iowa		○		○
Kansas			○	
Minnesota	○		○	
Missouri		○	○	
Nebraska		○		
North Dakota		○		
South Dakota		○		

주 별	무 제 한	세울제한	세울회귀	평가상한
Southeast				
Alabama		○		○
Arkansas		○	○	
Florida		○	○	
Georgia	○			
Kentucky		○	○	
Louisiana		○	○	
Mississippi		○		
North Carolina				
South Carolina			○	
Tennessee	○			
Virginia			○	
West Virginia		○		
Southwest				
Arizona		○		○
New Mexico		○		
Oklahoma		○		○
Texas		○		
Rocky Mountain				
Colorado		○		
Idaho	○			
Montana	○	○		
Utah	○			
Wyoming	○			
Far West				
Alaska		○		
California		○		○
Hawaii	○			
Nevada	○			
Oregon		○		○
Washington		○		

자료 : NCSL survey of legislative fiscal officers, municipal leagues and association of counties, 1997

부의 노력을 더욱 촉진시켰다. 주의회도 교육재원으로서 재산세를 대체할 재원을 모색하게 되었다.

3) 세원의 경제적 특성

주요 세목의 경제적 특성도 세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경제학자들은 소득 탄력성(income elasticity)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소득이 1% 증가할 때 세수가 1% 이상 증가하는 것을 탄력적(elastic)이라고 하고, 소득이 1% 증가할 때 세수의 증가가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탄력적(inelastic)이라고 한다.

소득세수는 탄력적인 경향을 가지고 판매세는 비탄력적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세법의 개정이 없이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소득세증가율은 판매세나 소비세의 증가율보다 높다고 한다. 의회는 경제 성장에 맞추어 세율을 인상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탄력적인 소득세가 선호된다.

3. 미래의 세제 전망

지난 25년간의 미국의 주 및 지방세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 미래의 세제의

발전 추세를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전망해 볼 수 있다.

- 1) 재산세는 과거의 조세 저항기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즉 재산세의 부담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 2) 일부 주와 지방정부는 사용료와 부담금을 통한 세입증대 노력을 극대화할 것으로 보인다.
- 3) 지방정부는 의회에 지방선택세의 확대 도입을 요구하여 세원의 다양화를 통한 세수증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80년대 재산세수가 약간 늘어난 적도 있었지만, 일부 주에서는 재산세의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을 계속 해왔다. 미시건주는 20억 달러 이상의 교육재원을 재산세로부터 판매세와 담배세로 전환해서 충당한 바 있다. 또 오에곤주는 항구적으로 재산세의 부담을 줄이는 헌법 개정을 통과시켰다. 위스콘신주는 교육재원을 종래 지방정부의 재산세로 충당했으나, 州稅로 충당하도록 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90년대에 들어 각종 통계는 재산세가 점차 감소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II. 지방정부의 선택세

1. 선택세의 도입과 관련된 이슈

지방선택세(local option tax)라 함은 주 의회가 산하의 지방정부로 하여금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여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세목을 말한다. 선택세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이슈들을 고려해야 한다.

1) 책임성과 탄력성

지방선택세는 주민들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방정부에 과세와 지출에 관한 결정권을 줌으로써 납세자들에 대한 책임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지방 선택세는 주내에서 전체 주민이 부담하기를 꺼려하는 경우 특정 지역의 주민들이 직접³⁾ 또는 그들의 대표를 통해 어떤 행정서비스 비용충당을 위해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2) 주정부의 세제 개혁에 대한 제약

일단 지방 선택세가 자리잡고 나면 이를 폐지하거나 내용을 변경시키는 것은

어렵다. 왜냐하면, 폐지나 변경시 지방정부의 세수를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예를 보면, 콜로라도주, 조지아, 노드 캐롤라이나주는 빈곤층의 식품구매에 대한 州판매세 면제를 결정했다. 그러나 이들 주 관내의 지방정부들은 빈곤층에 대한 지방판매세(선택세)의 면제를 허용하지 않았다. 지방판매세는 일반적으로 州의 판매세나 소득세와 함께 과세되므로 주정부가 향후 판매세나 소득세를 인상하기가 어렵게 된다.

3) 세무행정경비와 납세의무 이행 경비

지방 선택세의 구성이 잘못되면 세무행정 경비와 납세의무 이행경비(compliance cost)가 증가될 뿐만 아니라, 주의 경쟁력과 사업환경을 악화시킨다. 예를 들어 지방정부(기초단체)가 지방판매세의 과세대상, 비과세, 징수 등을 주관매세와 달리 독자적으로 정하게 하는 경우 납세자들의 혼란과 납세의무 이행비용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주에서 지방판매세를 선택세로 허용하는 경우 주 전역에 걸쳐 통일성(uniformity)을 확보

3) 주민들은 주민발의(initiative)를 통해 직접 법안을 제출할 수 있다.

보하게 하면 보다 효율적이고 형평성을 지닌 세제가 될 수 있다. 다수의 주에서 행정경비 절감의 차원에서 주정부가 지방판매세를 징수하여 지방정부에 배분하는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4) 세원들간의 균형

질적으로 고도화된 세제는 세원들 간의 균형(balance)이 중요한 요소이다. 여기서 균형이라 함은 세원으로서 소득·소비·재산이 대략적으로 비슷한 분포를 지닌 상태를 말한다. 세원들 간의 균형은 세율을 가능한 최소로 유지할 수 있게 하고 경제 활동의 왜곡 가능성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또 이러한 균형은 다양한 형태의 경제활동에 대해 세부담을 분산시킴으로써 주와 지방정부의 재정에 안정성(stability)을 가져다 준다. 따라서 주는 선택세를 허용하는 경우 세원들 간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5) 장기적 지방재정의 안정성 확보

경제학자들은 개인소득세가 가장 탄력적이고 소비세는 가장 비탄력적이라고 한다. 따라서 지방선택세의 도입을 고려할 때에는 장기적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에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적은 탄력성이 큰 세원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6) 지역간 재정력 격차 해소

지방선택세는 도입할 때는 이로 인하여 지역간의 재정력 격차를 해소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7) 지역간 경쟁

지방선택세를 허용하는 경우 지방정부간 경쟁(inter-local competition)이 일어나 지역간 세부담 수준이 다르게 되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 날 수 있다. 이러한 경쟁의 예는 세금을 싸게 하여 타 지역의 소비자나 기업을 유치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쟁은 주 전체의 경제적 성과를 낮추고 자원의 생산적 이용을 저해한다.

이러한 경쟁은 세원이 풍부한 지방정부가 선택세의 세율을 낮게하는 경우 인근의 세원이 빈약한 지방정부가 타격을 입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8) 세제의 누진성과 역진성

미국의 연방체제에서 연방정부는 소득세 위주의 과세를 하고 있으며 주 및 지방정부는 소비세와 재산세 위주의 과세를 하고 있다. 따라서 선택세를 허용할 때에는 주 및 지방세제에 역진적

(regressive) 또는 누진적(progressive) 경향이 강화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9) 시행지역의 범위

선택세의 허용 지역을 일부 지역으로 한정할 것인가 또는 주 전역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실제로 어떤 주에서는 대도시 또는 카운티 지역으로 한정하는가 하면, 일부 주에서는 주 전역에 걸쳐 실시토록 하고 있다. 주 전역에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도시 지역에서 높은 세율을 유지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다.

10) 유권자의 동의

주에 따라서는 선택세를 도입하는데 주민들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주민동의를 받게 하는 경우에는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 어려워진다.

11) 연방세 공제

주 및 지방정부의 소득세와 재산세는 연방정부의 소득세 공제대상이 되나, 판매세 등 소비세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선택세로 지방판매세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 주민들의 세부담이 더 높아지게 된다.

2. 지방선택세의 종류

여기서는 실제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지방선택세별로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지방판매 · 이용세(local sales and use taxes)

가) 현황

판매 · 이용세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널리 도입된 지방선택세이다. 판매 · 이용세를 과세하고 있는 45개 주 가운데 33개 주가 지방정부에 지방판매 · 이용세를 선택세로 과세토록 허용하고 있다. 알래스카주의 경우에는 주 자체의 판매 · 이용세는 없으나, 관내의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판매세의 과세를 허용하고 있다.

지방판매 · 이용세를 선택세로 도입하고 있는 33개 주중 23개 주가 관내의 시 및 카운티에 판매 · 이용세를 과세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주에서는 시

만, 또 다른 일부 주에서는 카운티만 판매·이용세를 허용하고 있다. 9개 주에서는 交通區(transit districts)가, 2개 주에서는 學校區가 판매·이용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지방판매·이용세는 주에 따라서는 주정부에서 징수하여 지방정부에 배분하거나, 지방정부의 세입국에서 징수된다. 지방판매·이용세의 과표는 주정부의 판매·이용세 과표와 같다. 주에 따라서는 지방정부가 독립한 별도의 과표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납세자는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별도의 신고를 해야한다.

나) 정책 이슈

① 지방정부간 경쟁(local competition)

지방판매세를 선택세로 하는 경우 세율을 낮추어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자기 관내로 와 구매를 하도록 하여 판매세의 수입을 증가시키려는 경쟁을 벌이게 된다.

② 역진성(regressivity)

판매세는 가장 역진성이 강한 세금이다. 특히 식료품, 약품, 기타 생필품에 대해 과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경향이 현충 강하다. 따라서 지방선택세로 판매

세가 도입되는 경우에는 역진성이 더욱 강화된다.

③ 세무행정 비용 및 납세의무 이행 비용

선택세로서 지방판매·이용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과세 당국과 납세자들에게 추가적인 행정비용 및 납세의무 이행 비용을 발생시킨다. 어떤 사업자가 여러개의 과세권을 달리하는 지역에 사업소를 두고 있는 경우 지역간 과표, 세율 등 세제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큰 어려움이 없으나, 과표나 세율이 지역별로 각각 다른 경우에는 혼란스럽게 되고 납세의무 이행비용이 더 들게된다. 실제로 콜로라도주, 조지아주, 노드 캐롤라이나주에서는 지방정부별로 비과세 제도 등을 달리하여 납세자들에게 위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세무행정 비용도 더 소요된다고 한다.

이렇게 세제의 내용이 지방정부별로 다른 경우 납세자는 여러번에 걸쳐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불편도 따른다. 또 세무인력이 부족한 지방정부는 징수를 민간회사에 위탁하고 이들 회사들이 과육적으로 징수에 나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④ 주정부의 세수 신장성 위축

선택세로서 지방판매세는 주정부의 세수의 신장성을 저해한다. 특히 주판매세와 지방판매세의 세율을 합한 세율이 높은 주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 심하다. 알라바마, 루지애나, 뉴욕, 텍사스주는 양자의 세율을 합한 세율이 9%를 넘고 있어 주 정부의 판매세 세율인상을 제약하고 있다고 한다.

⑤ 연방세 과세시의 공제

지방판매세는 연방소득세 신고시의 공제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정부에서 재산세의 대체재원으로서 지방판매세를 도입하는 경우 납세자들의 연방소득세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2) 지방개인소득세 (local individual income taxes)

가) 현황

15개주가 지방정부에 대해 선택세로서 소득세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2개주(Arkansas, Georgia)에서는 지방정부에서 아직도 이를 채택하지 않았다. 지방소득세는 대부분의 경우 전통적인 소득세 방식으로 과세를 하고 있으나,

일부 주(Colorado, Washington)의 경우에는 소득과는 관계 없이 종업원 1인당 단일세율(flat rate)로 인두세 방식으로 과세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지방소득세제는 주별로 다양하다. 뉴욕주에서는 2개 시만 과세를 하고 있으나, 10개 주에서는 주 전역에서 실시하고 있다. 일부주(Iowa, Kentucky, Ohio, Pennsylvania)에서는 학교구(school districts)에서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의 경우 시나 카운티에서 과세하고 있다.

과표를 주 소득세와 동일하게 하는 문제는 다양한 형태를 보여 주고 있다. Iowa주와 Maryland주의 지방정부들은 주 소득세의 일정율(%)로 과세하는附加稅(piggyback tax)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New York주와 Pennsylvania주의 시들은 주소득세의 과표와는 별개의 독립된 과표의 적용을 허용하고 있다. 주별 선택세인 지방소득세의 현황은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다.

나) 정책 이슈

① 누진성(progressivity)

지방소득세가 선택세로 채택되면 누진성이 강화된다. 특히, 지방소득세가 역

<표 6> 지방 소득세 과세현황 ('97)

주 별	시	카운터	학 교 구	기 타	소득과세 또는 대민과세	과세지역 범위
Alabama	○	○			소득	주 전 역
Arkansas*	○	○			소득	주 전 역
Colorado	○				대인	특정지역
Delaware	○				소득	특정지역
Georgia*	○	○			소득	주 전 역
Indiana		○			소득	주 전 역
Iowa			○		소득	주 전 역
Kentucky	○	○	○		소득	주 전 역
Maryland		○			소득	주 전 역
Michigan	○				소득	주 전 역
Missouri	○				소득	주 전 역
New York	○				소득	특정지역
Ohio	○		○		소득	주 전 역
Pennsylvania	○		○		소득	주 전 역
Washington*				○	대인	특정지역

자료 : Commerce Clearing House, *State Tax Guide*, 1997

진적인 판매세나 재산세⁴⁾의 대체 세원이 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② 행정비용과 납세의무 이행 비용

지방소득세가 주 소득세의 부가세 형태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행정 경비나 납세의무 이행경비가 소요되지는 않는다. 실제로 Maryland주와 Iowa 주에는 주정부 세입국에서 지방소득세를 징수하여 지방정부에 배분하는 방식

으로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Philadelphia주의 지방정부는 별도로 과세하고 있다. 지방정부 입장에서 볼 때 부가세 방식은 주가 세율을 낮추게 되면 세수가 감소되고 주의 세율이 인상되면 세수가 증가된다.

③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지방소득세를 채택하는 경우 과세지를 직장 소재지로 할 것이냐, 또는 거주

4) 미국의 재산세는 우리나라의 재산세와는 달리 단일세율(flat rate)이므로 역진적이다.

지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대부분의 주는 직장 소재지를 과세지로 하고 있다. 그러나 5개주에서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도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 방식은 소위 “통근자소득세(commuter income taxes)”라 불린다. 통근자도 직장 소재지에서 행정 서비스 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부담 차원에서 과세하는 것이다.

④ 지방정부간의 경쟁

지방소득세를 어떤 형태로 하느냐에 따라 지방정부간의 경쟁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직장 소재지 원칙에 따라 과세를 하는 경우 기업들은 지방소득세가 낮은 지역에 입지하게 되므로 기업유치를 위해 세율을 낮게 책정하게 된다.

거주지 원칙에 따라 과세하는 주(Maryland, Iowa)에서는 지방소득세율을 낮게 하여 주민 수가 늘어나도록 하는 유인책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⑤ 주정부 세입의 신장성 위축

지방소득세는 주정부의 세입의 신장

성을 위축시킨다. 특히 주와 지방정부의 소득세율의 합계 세율이 높은 주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특히 심하다.

⑥ 연방소득세 과세시의 공제

지방소득세는 연방소득세 과세시 공제 항목에 포함된다.

3) 지방사업세 (local business taxes)⁵⁾

지방정부는 사업에 대해 지방법인세, 지방총수입세, 급여 및 기타사업세, 지방자동차연료세, 지방담배세, 지방숙박세, 지방음식세 등을 과세하고 있다.

① 지방법인세 (local corporate income taxes)

적어도 미국의 25개 대도시가 법인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지방법인세의 세수를 지방정부에 배분(apportion)하는 것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지방법인세를 지방정부에 배분하는 것은 복잡한 계산 절차를 요하고 주별로 배분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추가적인 행

5) 지방사업세는 특정한 세목명이 아니다. 미국의 각주와 지방정부는 동일한 세원에 대해 과세하는 경우에도 세목명이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그러한 성격을 가진 조세를 총칭하는 일반 명칭으로 이해하는 것이 편하다.

정비용이 소요된다. 그러나 지방법인세의 과세대상·과표 등을 주법인세와 동일하게 하고 주정부가 동시에 징수하여 배분하는 경우에는 비용 문제는 완화될 수 있다. 세율이 지방정부별로 각각 다른 경우 지방정부간 경쟁을 유발하여 지방정부의 세수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

② 지방총수입세

(local gross receipts taxes)

미국 주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주에서 지방정부에 총사업수입에 대해 지방총수입세 또는 면허료(license fees) 부과를 허용하고 있다. 총수입세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다. 총수입세는 이윤(profit)과 관계없이 기업에 대해 부과하기 때문에 소득세보다 안정적 재원확보가 가능하다. 그러나 신설기업과 이윤을 내지 못하는 기업에게는 부담스런 세금이다.

주내에 여러개의 사업장을 가진 기업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별로 세액을 안분하여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한 계산 절차와 의무이행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된다. 더욱이 사업장 소재지별로 과표, 세율, 신고납부 절차 등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그 비용은 더욱 높아지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내에서 통일적인 세제가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로 Virginia주는 1996년에 각 지방정부별로 다양하게 과세하던 총수입세(business, professional and occupational license tax : BPOL)를 통일적인 세제로 개혁한 바 있다.

총수입세는 지역간 세율을 달리 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입지 결정이 달라진다. 또 총수입세는 이윤이 아닌 총수입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에 이세제를 도입한 지역에서는 기업의 신설을 어렵게 만든다.

4) 급여 및 기타 사업세(payroll and other local business taxes)

지방정부들이 사업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는 꽤 다양하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지방정부들은 기업이 당해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권리를 누리는 데 대해 총수입세를 과세하거나, 매년 단일율의 부담금(flat rate fee)을 부과한다. 전통적인 재산세외에도 주식, 채권 등의 무체재산(intangible property),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도 과세하고 있다. 이러한 세금중 총수입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급여세 또는 인두세(head tax)이다. California, Missouri, New Jersey, Oregon주의 지방정부들은 급여의 일정율(%)로 급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Illinois, Washington주의 일부 지방정부들은 관내의 사업장 종업원들에 대해 1인당 정액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급여세나 인두세는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납부에 따른 비용 부담이 적다. 그러나 그 지역의 세제에 익숙하지 못한 타지역 기업(out-of-state business)은 이에 익숙해질 때까지 의무이행 비용이 더 소요된다. 급여세는 노동집약적(labor intensive)인 산업에 큰 부담이 되므로 이러한 사업자는 입지하기 전에 지방정부와 세금감면을 위한 협상을 거쳐 입지를 결정하는 일이 흔히 발생한다.

5) 지방자동차연료세(local motor fuels taxes)

14개주가 지방정부에 대해 자동차연료세의 과세를 허용하고 있다. 9개 주는 주 전역에 걸쳐 과세를 허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주는 관내의 일부 지방정부만 과세토록 하고 있다.

지방자동차연료세는 지역간 세수의 불균형을 유발하기 쉽다. 이는 州간 고

속도로(interstate highway) 주변 지역 또는 교통 중심지역에 위치한 지방정부는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주는 세수가 적어 질 수밖에 없다. 경계를 접하고 있는 지방정부들은 타 지역 소비자들을 유치하여 세수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세율 인하 경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는 세율의 한도를 설정하여 지나친 가격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동차연료세는 주정부의 세율 인상을 어렵게 하며 역진성의 문제를 지니고 있어 빈곤층과 장거리 통근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자동차연료세는 유가의 일정율로 과세되는 종가세가 아니고 꺾런당 몇 달러로 과세되는 종량세이므로 세수가 가격 인상이나 경제성장률에 못미치게 되어 세수의 신장성이 적은 것이 흠이다.

6) 지방담배세 (local cigarette and tobacco taxes)

담배세는 10개 주에서 지방선택세로 허용하고 있다. 뉴욕주에서는 뉴욕시만 담배세를 과세하고 있다. 나머지 9개 주 중 3개주만 담배세의 세율에 한도를 정해 두고 있다. Virginia주에서는 카운티

는 갑당 5센트를 한도로 하고 있으나 시 지역에서는 한도가 없다. Arkansas, Louisiana주도 담배세를 선택세를 허용하고 있으나, 실제로 과세하고 있는 지방정부는 없다.

지방정부간 세율인하 경쟁이 심해지면 접경지역의 세율이 높은 지역의 담배 판매업자들이 타격을 받는다. 담배세와 기타 소비세는 판매세보다 더 역진적이라고 한다. 주정부의 담배세는 일반적으로 담배가격에 대한 정율세의 형태이나, 지방정부의 담배세는 갑당 정액세로 되어 있어 세수의 신장성이 적다.

7) 지방숙박세 (local lodging taxes)

지방선택세로 가장 널리 활용되는 것이 호텔 등의 숙박에 대한 숙박세이다. 43개 주가 1개 또는 다수의 지방정부에 30일 이하의 단기 숙박에 대해 과세하는 숙박세를 허용하고 있다. 숙박세를 선택세로 허용하지 않은 주에서도 관광객에 대해 과세하는 선택세를 허용하고 있다.

숙박세는 당해 지역의 거주자가 아닌 외지인에게 과세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나 정책결정자들에게 인기가 있다. 이에 따라 세율도 꽤 높은 편이다. 미국

전체의 세율평균은 주숙박세와 지방숙박세를 합하여 약 10% 정도이며,

Washington, Ohio, California주의 시지역에서는 14% 내지 15.2%에 이르고 있다. 숙박세는 대규모 행사를 유치하고자 하는 지방정부간에 세율인하 경쟁을 유발하고 있다. 숙박세도 위에서 본 교통세와 같이 교통이 편리하여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과 농촌지역간에 세입 격차를 유발하고 있다고 한다.

8) 지방음식·음료세 (local restaurant taxes)

음식과 음료수를 판매하는 사업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선택세로서 현재 27개 주가 지방정부에 대해 허용하고 있는 세금이다. 세율은 지역에 따라 0.5~9%의 세율로 과세되고 있다. 주정부의 음식·음료세와 지방음식·음료세의 세율을 합하는 경우에는 6~13%의 세율이 적용된다.

IV. 결 어

지방선택세제의 내용을 결정하는 데에는 주의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많은 주가 지난 20년간 지방선택세를 확

대해왔다. 특히 주로 지방관매세가 선택세로 많이 채택되었다.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대한 연방정부의 기능 이양은 주정부의 재원 조달의 합리화 노력과 더불어 지방선택세의 장점을 강조하게 되었다.

지방선택세는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조세정책 결정에 대한 통제를 강화시키고, 지방정부가 지역의 수요에 신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켰다. 그러나 지방선택세는 주정부의 재정적 신축성을 위축시키고 세무행정 경비와 납세자의 의무이행 경비가 추가적으로 소요되게 했다. 또 주와 지방정부세제의

균형과 형평성 문제, 지방정부간 유해한 조세경쟁(harmful tax competition)을 유발하였다.

미국의 대부분 주정부가 과세하고 있는 세원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형태로 지방선택세를 도입하고 있으므로 우리의 지방세제 개선에도 참고할만한 가치가 있다 하겠다. 우선 소비세제가 취약한 우리나라의 지방세제에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는 데 있어 미국의 지방선택세는 시사하는 바가 크며,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간의 공동세 형태 등을 도입하는 데도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지방세제관련 시사정보 ●

◆ 2000 조세총액중 지방세 비중

(단위: 억원, %)

조 세 총 액	국 세 (관세포함)		지 방 세	
	세 액	비 율	세 액	비 율
982,238	797,029	81.1	185,209	18.9

※ 외국의 예

구 분	국 세	지 방 세	비 고
일 본	61.1	38.9	'96
미 국	57.9	42.1	'96
영 국	95.4	4.6	'96
독 일	88.3	11.7	'96
프 랑 스	80.3	19.7	'95
이 탈 리 아	92.6	7.4	'94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현황』(2000. 3월 현재)

- 편집실 -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 해설

전 재 원

재정경제부 세제실 조세정책과

I. 머리말

일반적으로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일정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비상장법인의 주식 및 기타자산 등과 같은 특정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얻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다만, 소득세법에서는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히 예외를 인정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즉,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됨을 받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고 있다.

여기에서 ‘비과세소득’이라 함은 과세요건은 충족하지만 사회정책적 측면에서 국가가 과세권을 포기함으로써 당초부터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이는 납세자의 신청이나 신고를 요건으로 하는 감면소득과는 달리 납세자의 비과세신청이나 과세관청의 행정처분 없이도 당연히 과세되지 않음을 뜻한다. 이들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의 요건과 범위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II.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파산법 제187조 및 제192조의 규정에 따라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매각처

분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여타 부동산등과 마찬가지로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III.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다.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 다만,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한한다.

위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i)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안의 지역

ii) ‘가’에서 제기하는 지역과 연결한 시·군·구 안의 지역

그리고 새로운 농지의 취득 후 3년 이내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라. 농어촌정비법·농지법·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위에서의 농지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는 농지세가 비과세되거나 감면 또는 소액부징수인 농지(농지세 과세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어 있는 보리나 밀과 같은 농작물을 생산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그러나 다음에 계기하는 농지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농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i)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또는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 제17조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사업지역 내의 토지 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ii)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IV.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농지를 양도하고 이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것)하는 농지에 있어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허용, 보장함으로써 농민을 보호하여 농업의 발전·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위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i)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ii) 위의 'i)'에 계기하는 지역과 연접한 시·구·구안의 지역

그리고 새로운 농지의 취득 후 3년 이내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

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이 경우 면적기준과 가액기준 중에서 어느 한 기준만 충족하면 되는 것이다.

V.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 비과세 범위와 지원취지

1세대1주택(고급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에 대하여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 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이와같이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제도의 취지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2.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3년이상(다만, 1999. 1. 1부터 1999. 12. 31사이에 주택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분에 대하여는 1년 이상. 이하 같다) 소유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1세대1주택이라 한다.

가. 1세대의 요건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집단이다. 위에서 가족이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되 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제외)의 취학,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배우자가 없더라도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경우
즉, 배우자가 없더라도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1세대로 보

며,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미만이라도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립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 역시 배우자가 없더라도 1세대로 본다는 뜻이다.

-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 3)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나. 주택용도의 사용 요건

‘주택’이라 함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건물정착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에 대하여는 10배)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판정하되, 실제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공부상의 용도에 의하여 판정한다. 다만, 뒤에서 설명하는 고급주택은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한편, 1세대가 국내에서 소유하는 유일한 부동산이 주택 이외의 건물(예: 집포)인 경우라든지 또는 나대지인 경우에는 설사 당해 거주자가 3년 이상 소유하였다고 하더라도 비과세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다. 1주택만을 소유할 요건

양도의 목적이 된 주택은 당해 1세대가 국내에서 소유하는 유일한 주택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취급한다. 그러나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

한편, 다음에 제기하는 사유와 같이 1세대가 그 세대의 의사와 관계없이 추가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부동산 매매의 특성에 기인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또는 주택경기의 부양을 위하여 일정기간 중에 신축주택을 취득함으로써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1세대1주택으로 취급하도록 하고 있다.

1) 상속으로 인한 2주택의 경우

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

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즉 상속받은 하나의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그 양도시기 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다.

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던 것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른 1주택에 한해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 ① 피상속인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 ② ‘①’의 주택이 2이상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 ③ 피상속인의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 ④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
 - ⑤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 다)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

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으로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2) 대체취득 목적의 일시 2주택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대체취득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먼저 취득함으로써 소유하던 주택(종전주택) 양도 당시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되나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본다.

- 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 ② 종전 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3년 이상 보유)을 충족할 것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전세대원이 다른 시·군으로 퇴거하여 그곳에서 종전 주택 양도전에 새로운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 주택 양도 당시 2주택

에 해당하나 새로운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주택의 보유요건에 불구하고 대체 취득을 위한 일시 2주택으로 보아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야 하나 2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년 이내 양도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여 의무양도기간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의무양도기간에 대한 특례를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교부하는 부동산매각 의뢰신청서 접수증, 법원경매신청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의뢰를 신청한 경우
-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중인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의뢰를 신청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를 교부받아 세무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의무양도기간 특례적용을 받았다고 매각을 철회한 경우에는 기비과세 받았던 양도소득세를 추징하게 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의뢰신청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한

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의뢰 부동산의 평가, 매각이 이루어지게 된다.

-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필증 및 등기부등본
-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대체취득할 목적으로 낡은 주택을 취득하여 이를 헐어버린 경우에는 나대지에 해당하므로 그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기 전까지는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 경우 종전 주택 양도 전에 새로운 주택을 먼저 신축한 때에는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본다.

3) 효도 및 혼인주택

노부모 봉양을 위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는 효를 기본으로 하는 우리 전래의 미풍양속 계승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노부모와 자녀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중 자녀가 노부모와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그 중 1주택을 세대를 합친 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노부모에는 세대주의 부모 또는 조부모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의 부모와 조부모도 이에 포함되며 노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여자의 경우 55세) 이상이지만 하면 이에 해당된다.

4) 문화재 주택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이와 같이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규정한 취지는 증·개축, 매매 등 사유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게 되는 등 소유자의 애로사항이 있어 이를 적극 수용하고 문화재를 보호한다는 측면을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지정문화재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지정문화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5) 농어촌주택

가) 농어촌 주택의 특례인정 취지

상속·이농 및 귀농목적의 농어촌주택과 농어촌주택 외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 양도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관정함에 있어 농어촌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는 고향과의 유대관계를 지속하고 도농간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도시자본이 농어촌에 유입되도록 하여 농어촌주택의 수요를 유지하고 농어촌주택의 정비를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나) 농어촌주택의 소재지역

상속·이농 및 귀농목적의 농어촌주택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 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수도권이라 함은 서울·인천을 포함한 경기 일원을 말한다. 따라서 서울·인천은 물론 이들 지역과 근접거리에 있는 경기

도 전역이 농어촌 주택 비과세 특별적용 대상지역에서 제외된다.

다) 농어촌 주택의 요건

(1) 상속주택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말한다. 또한 상속주택의 토지·건물에 대한 별도의 규모제한은 없다.

(2) 이농주택

이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구(특별시와 광역시의 구를 말한다)·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이 소유하는 주택을 말한다. 또한 상속주택과 마찬가지로 이농인이 취득일 후 5년 이상 거주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이농주택에 대한 규모의 제한은 없다.

(3) 귀농주택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300평 이상의 농지와 함께 본적지 또는 연고지에 소재하

고 있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연고지 등에 300평 이상의 농지를 미리 취득하여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귀농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① 귀농주택의 소재

귀농주택은 귀농인(어업인을 포함한다)의 본적지 또는 연고지에 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고지라 함은 영농 또는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그들의 직계존속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한다. 어업인이라 함은 수산업법에 의한 신고·허가 및 면허어업자와 그들에게 고용된 어업종사자를 말한다.

또한 귀농인의 본적지 및 연고지는 본적지 및 연고지가 소재한 읍지역(도시계획구역 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과 그 연결한 읍·면지역을 말한다.

영농을 목적으로 귀농하는 자는 300평이상의 농지와 함께 귀농주택을 취득(귀농이전에 선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귀농주택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지역(그 연결한 시·군·구지역을 포함 한다)에 소재하여야 한다. 또한, 영농목적의 귀농이므로 귀농이전에 농지 300평 이상은 먼저 취

득해야 한다.

② 귀농주택의 규모

대지 면적이 200평 이내이면서 소득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면제방법

귀농으로 인하여 전세대원이 농어촌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④ 사후관리

귀농주택소유자가 귀농일로(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3년 이상 영농 또는 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동안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주택 양도로 기비과세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한다. 이 경우 3년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간중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피상속인의 영농 또는 어업의 기간과 상속인의 영농 또는 어업에 종사한 기간을 통산한다.

3.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등의 범위

가. 주택의 분할양도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3년 이상 보유한 주택과 그 부수되는 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거나 3년 이상 보유한 주택부분만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분할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1주택을 부부가 각각 2분의 1씩 공동으로 3년 이상 소유하다가 남편의 사업실패로 남편지분이 부채청산을 이유로 경매되어 주택과 함께 그 부수토지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의 분할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며 그 후 잔여배우자의 주택지분도 타인에게 양도시 역시 비과세된다.

나. 고급주택의 양도

다음에 제기하는 고급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3년이상 소유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1)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취득세 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것
 - i) 주택의 연면적(겸용주택에 있어서 주택으로 보는 주택외의 건물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264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 ii)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 2) 공동주택(다가구 주택을 포함하며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 3)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택

다. 정착된 면적이 일정배율을 초과하는 경우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하더라도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다음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 ①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 : 5배
- ②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 : 10배

라. 겸용주택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VI.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는 토지투기를 억제하고 세원의 근원적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미등기양도라 함은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불가능한 자산이나 소유권개념이 희박하여 관습상 미등기 상태로 매매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①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 ②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 ③ 다음에 개시하는 농지

i)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ii)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iii)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대토하는 농지

④ 1세대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

地方稅法令 質疑回信

- 行政自治部 稅政課 -

1. 법인분할로 인한 면제시 근저당권도 재산의 범위에 포함여부

내국법인 “갑”사는 예규질의서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분할할 예정인바, 분할 존속법인 “갑”사로부터 분할신설법인 “을”사가 취득하는 근저당권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0호에 의하여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귀부의 빠른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동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취득하는 재산의 범위에는 근저당권이 포함됨.

(세정 13407-745, 2000. 6. 12)

2. 건설기계대여업의 소재지 변경신고시 면허세 납세의무

건설기계대여업신고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 금번 당 법인이 임차하고 있던 건물이 매매가 되어 부득이 사무실을 이전하게 되었으나 區와 洞은 같고 번지만 다른 곳입니다. 관리법인의 번지만 바뀌어도 650여명의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되는지 여부.

회 신

귀문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6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사업자가 사무실·주기장 또는 정비장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신고를 하는 것은 건설기계사업장소가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소유자의 단순한 주소지 변경과는 다르므로 면허세 과세대상임. (세정 13407-544, 2000. 4. 22)

3.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

서초구청에서는 지방세 감면금액(취득세, 등록세)의 100분에 20에 해당하는 농특세 부과통지를 당사에 해움에 따라, 당사에서 서초구청 공문을 검토한 결과 당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②항에 해당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이므로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3절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며, 귀부에서 회신한 공문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③항, 제120조 ③항에 의하여 감면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 농특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단되 귀부에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회 신

귀문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과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지 않음. (세정 13407-670, 2000. 5. 25)

4. 종업원사택을 종업원에 매각시 비업무용 토지 해당 여부

【질의 배경】

1.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갑법인은 1996년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100

세대를 동법에 의한 임대사업자인 (주)○○건설로부터 임차하여 사원용 기숙사 및 사택으로 현재까지 사용해 오고 있으며,

2. 이 과정에서 임대사업자인 (주)○○건설의 부도로 인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갑법인은 법원에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신고를 마쳤고, (주)○○건설은 임대주택시행령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당해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3. (주)○○건설이 당해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3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갑법인은 (주)○○건설에 제공한 임차보증금의 회수를 위하여는 부득이 당해 주택을 분양받을 수밖에 없으며, 분양받은 후 적당한 시기에 이를 다시 종업원에게 매각하고자 함.

【질의내용】

이 경우 임차인인 갑법인이 당해 임대주택을 (주)○○건설로부터 분양받아 이를 다시 종업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에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갑 설>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

<이 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은 「법 제11조 제2항 제6호에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5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갑법인이 당해 임대주택을 사실상 취득한 날로부터 5년 내에 이를 매각한다면 당해 주택의 부속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

<을 설>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2 제1항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법인이 종업원(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사택(임대용 사택을 포함한다)·기숙사·합숙소 등 주거용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들고 있다. 갑법인은 이미 당해 임대주택을 종업원 사택 등으로 사용해 왔으며, 취득 후에도 일정기간은 사택으로 제공되다가 매각하는 것이므로 조세법의 기본원칙인 조세법률주의와 이에 수반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입각한다면 동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실질과세원칙과도 부합되기 때문이다.

<병 설>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유> (주)○○건설이 이미 부도가 발생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으며, 갑법인은 임차보증금의 회수를 위하여 부득이 당해 주택을 분양받을 수밖에 없는바, 이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2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되므로 취득일로부터 3년내에 매각한다면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 설>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유> 갑법인은 비록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에서 취득의 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날부터 목적사업에 사용한 날이 2년이 되지는 아니하였지만 사실상 취득일 이전부터 5년여 동안 당해 주택을 목적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회 신

귀문의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종업원의 사택용으로 취득한 공동주택을 사택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종업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 ‘갑설’이 타당함.

(세정 13407-553, 2000. 4. 25)

5. 창업보육센터의 감면범위

지방세법(법 제280조 제4항)에서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가 창업보육센터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여 창업보육센터육성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 세제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A지역에 위치한 甲이라는 대학은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을 받아 운영중이나, 시군구를 달리하는 B지역에 소재한 연구소에 중소기업청장의 별도의 창업보육센터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창업보육사업(창업보육센터를 설치·운영)을 할 경우, B지역에서의 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도 취득세, 등록세 등이 면제 및 경감되는지 여부

회 신

지방세법 제2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가 창업보육센터용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이 감면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대학 ‘갑’이 창업보육센터용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갑’소재지가 아닌 타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취득세 등이 감면되나 창업보육센터 설치 후 2년이내에 이를 폐쇄하거나 창업보육센터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등이 추정됨.

(세정 13430-556, 2000. 4. 25)

6.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

【쟁점사항】

○○○시장이 유원지 조성사업 승인시 사업구분을 제1, 2단계로 구분하여 승인하고 쟁점토지가 제2단계 사업기간에 포함될 경우 사업기간 종료(2000. 12. 31까지)되지 않은 경우 비업무용토지 해당 여부

<갑 설> ○○○시장이 승인한 사업기간까지(2000. 12. 31)사업 준공을 하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이 유> ○○유원지 사업은 제1단계와 제2단계로 구분하여 사업계획을 ○○○시장이 승인해 주었고, 쟁점토지는 제2단계 사업에 포함된 것으로서 제2단계 사업 종료 기한(2000. 12월까지)이 미도래하였으므로 제2단계 사업은 2000. 12월 까지 사업을 준공하면 되므로 사업종료 기한까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종가세할 수 없다.

* 법인측은 IMF이후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을 미루고 있지만, 사업기간 내에는 완료하겠다고 함.

<을 설> ○○○시장이 사업시행 승인기간에 관계없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유> ○○○시장이 ○○유원지 조성사업을 승인할 때 사업기간을 2000. 12. 31까지 승인하여 준 사항이 법인이 비업무용토지 개념인 토지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계속하여 유예기간을 적어도 2000. 12. 31까지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쟁점사항으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는 적어도 제1단계 준공 기한(1998. 4. 30)이후부터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했는가를 판단해야 할 것이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을 사업준공 승인 기간에 계속하여 연장하여 주는 것은 아니다.

회 신

귀문의 경우 “을설”(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판단은 지방세법상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것임)이 타당함. (세정 13430-566, 2000. 4. 27)

7. 산업단지내 기존공장용 부동산 취득시 감면 여부

폐사는 산업단지 내에 입주하고 있는 제조업체로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아래의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감면대상에 해당되

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현 황】

- (1) A사가 산업단지개발사업 사업시행자지정을 받아 사업시행중 미준공상태에서 도산으로 입찰에 붙여진 기존건축물이 있는 공장용지를, A사와 인접하고 있는 당사가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자 2000년 4월 4일 경락으로 인수하였음.
- (2) 기존건축물은 철거하고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할 예정임. 취득한 기존의 공장건축물이 제품생산에 부적합하고 노후하여, 기존건축물은 모두 철거하고 공장을 신축할 예정임.

【질의요지】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서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각각 50%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경락받은 토지와 건축물의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여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 신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기존의 공장용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기존 공장용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된 공장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재산세가 감면됨.

(세정 13407-570, 2000. 5. 1)

8. 법인의 취득세 과세표준

본인은 2000년 2월 25일 정부출연 연구소 조합원들로 구성된 ○○연구단지 주택조합연합회 소유 건물인 연구단지 내 상가 4층을 분양받았음.

분양매입당시 관할구청으로 등록세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매입 등기를 마친 상태임.

그러나, ○○구청 세무 담당자가 ○○연구단지 주택조합은 법인이 아니므로 개인 간의 거래로 적용, 실제 거래 가격을 인정할 수 없다 하여 등록세와 취득세에 대해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추정 통보받았음.

본 상가는 실제 거래가(價)보다 시가 표준액이 높은 상태임. 그러나, ○○연구단지 주택조합 연합회는 약 4,000여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법인 이상의 이사회와 조직을 가진 단체이며 이사회를 거쳐 매각된 본 건물은 실제 거래 가격 이상, 이하도 아닌 분양계약서상의 금액으로 분양받았음.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등기부 등본 등에도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단체명과 단체등록번호가 등재되어 있음.

○○연구단지 주택조합이 개인인지, 단체 적용을 받는 것인지.

회 신

귀문의 경우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의 과세 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하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며,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라 함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한 단체를 말하며,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은 동 규정의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함. (세정 13407-573, 2000. 5. 1)

9. 자경농지 취득세 감면

본인은 ○○광역시 ○구 ○○동 634번지에서 10년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2000년 3월 2일 ○○지방법원으로부터 농작물을 재배코자 전 5,975 m²를 경락받아 취득했으나, 관할 북구청에서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사실상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261조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각면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취득당시(2000년 3월 2일)는 도시계획 입안지역으로서 자연녹지지역이었으며, 그

이후(3월 9일) 일반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상황일 경우 지방세법 제261조에 의한 취득세, 등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없는지 하교바랍니다.

회 신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농지가 녹지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일시적으로 농작물이 재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상 농지에 해당되는 경우로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됨. (세정 13407-574, 2000. 5. 1)

10. 기존차량의 카고크레인을 새차량에 이동설치시 취득세 납세의무

위 본인은 1991년도에 자동차 화물트럭 4.5톤과 카고크레인을 구입하여 자동차 구조변경하여 자동차취득세 및 크레인설치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였음.

그리고 1995년도 전차량 4.5톤을 처분하고 다시 5톤화물차량을 구입하여 당시 4.5톤에 설치된 카고크레인을 5톤차량으로 다시 이동설치하여 5톤차량에 대한 취득세는 납부하였음.

그런데 전차량에서 이동설치한 카고크레인에 대하여 다시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으며 어떻게 다시 구입하지도 않은 카고크레인에 대하여 취득세가 부과되었는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 신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종류변경을 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보아 그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기히 소유하고 있던 카고크레인을 새로운 화물차량에 설치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차량의 종류변경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세정 13407-575, 2000. 5. 1)

11. 합의금이 광업권 취득세 가격에 포함 여부

석회석 광산의 前소유자 및 광산개발의 어려운점 등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 기득권 (영업권) 포기 및 기타문제 합의 등의 명목으로 합의하여 지출한 합의금에 대하여 법인 장부상 영업권으로 계상하였는바 이 영업권 항목에 대하여 지방세 과세대상 여부?

과세대상이 된다면 과세항목과 필요 사항들을 알려주십시오.

아울러 이들에게 지출한 합의금에 대한 공식적인 영수증 및 증빙자료는 없습니다.

회 신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광업법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영업권으로 계상된 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세정 13407-587, 2000. 5. 3)

12. 회수한 화재선박을 매각시 취득세 과세기준

【현 황】

甲회사의 선박이 화재사고로 인하여 추정전손(推定全損)처리되어 乙보험회사에서 사고선박에 대하여 전손보험료를 지급하고 甲회사를 대위하여 동선박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있어서

【질 의】

가. 을보험회사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나. 을보험회사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면 그 취득세 과세표준은?

- ① 을보험회사가 갑회사에게 지급한 전손보험금
- ② 화재발생 당시 갑회사의 선박 법인장부가액

- ③ 사고선박의 잔존가액을 평가한 금액
- ④ 화재발생 당시 사고선박의 시가표준액

【우리 시 의견】

가. 질의 가항에 대하여 :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나. 질의 나항에 대하여 : ③.

회 신

귀문의 경우 “을” 보험회사가 전손보험료외에 “갑” 회사에게 지급한 취득비용이 없다면 무상취득에 해당되어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될 것으로 판단됨. (세정 13430-579, 2000. 5. 2)

13. 창업 벤처중소기업의 범위

당사는 1995년 3월 29일 인천 ○○공단에서 설립한 반도체조립용 장비 및 금형을 제조(매출에 수출 70% 내수 30%)하는 수출유망중소기업입니다. 또한 동 사업을 영위하다가 1999년 9월 10일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하여 인천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1999년 8월 31일 법률 제5996호로 개정) 제119조 3항에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및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라고 개정되었습니다.

【질 의】

당사는 밀려드는 주문량에 현재의 공장 규모로는 생산을 소화해낼 수 없어 현재의 공장을 매각하고 남동공단 단지내로 좀더 큰 공장용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이전을

계획하는바 이전시 상기 법에 의하여 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과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후 2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95. 3. 29 설립하고 '99. 9. 10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귀사는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대상이 아님. (세정 13407-522, 2000. 4. 25)

14. 분양광고비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여부

폐사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공동주택 및 부대상가 등을 분양하기 위한 견본주택관리 및 선전광고업무까지를 포함한 분양업무를 시공자인 다른 법인에게 건축공사비와 구분표시하여 일괄도급을 주었을 경우 도급계약서상에 구분표시되어 있는 분양경비를 건축물판매비용으로 건축물 취득세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 신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과세대상물건의 신축비용이 아닌 선전광고비 등 분양비용은 신축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세정 13407-678, 2000. 5. 25)

15. 과세전환시 취득세 가산세 부과기산일

폐사는 냉동·냉장·수산가공을 영위하는 (주)○○콜드프라자 법인으로서 ○○

광역시 ○구 ○○동 산 100-1 지선 공유수면 매립지상의 유통가공단지내에서 건축물 가사용 승인(99. 10. 25)을 받아 현재 사용중에 있으나 현재 건축물에 대하여 폐사에서 모두 사용할 수 없어 수산물 유통가공사업에 노하우가 있는 임차인에게 제조가공공장(전체면적의 6%)을 일시적으로 임대(99. 12. 1)하고 있는 실정임.

지방세법 제280조 제5항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통단지내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고 되어 있고, 다만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20조(신고납부) 제3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경감받은 경우에는 이에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인에서도 동법 제280조 제5항의 단서 규정에 있는 2년은 유보기간으로 보고 있음, 동법 제120조 제3항 규정에 그 사유발생일은 2년 유보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신고 납부하여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자체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저희의 판단이 정확한지를 존경하는 행정자치부 세정과에 질의함.

회 신

귀문의 경우 지방세법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 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과세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음. (세정 13407-679, 2000. 5. 25)

16. 창업중소기업에 해당여부

당사는 농어촌지역인 ○○○도 ○○시 ○○읍에서 1998년 2월 11일 부도로 인 한 사실상 폐업중인 기존공장을 일시 임차하여 법인설립등기하고 (임대인이) 부도난

기존업체가 생산하던 업종과 동종의 업종(주형 및 금형 제조업 29294)을 영위하던 중 경매진행으로 1999년 6월 17일 경매로 낙찰받은 개인(이영식)으로부터 매입한 공장으로 경락절차에 의거 유입 물건을 매수하였을 뿐 채권 채무를 인수하지 않고 동종의 사업을 최초로 영위하는 경우로서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이라 생각하여 질의합니다.

아래의 절차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채권채무는 일체 인수하지 않았습니
다.)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요?

【취득절차】

- ① 1998년 1월 (주)○○(임대인) 당좌거래 정지(부도) 공장가동중지
- ② 1998년 2월 11일 (주)○○○ 시스템 설립등기(임차인)
- ③ 1998년 3월 16일 ○○지방법원 경매개시결정(98타경11040)
- ④ 1999년 6월 17일 경매낙찰자 ○○○
- ⑤ 1999년 7월 30일 낙찰자 ○○○과 매매계약으로 소유권이전
(주) ○○○시스템

회 신

귀문의 경우 기존 공장을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과 동법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음. (세정 13407-703, 2000. 6. 5)

17. 지방이전 취득세 관련 질의

【내 용】

당사는 1992년 서울에서 회사를 설립하여 수출용 의류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본점(서울)은 임차(2년이상 영업)하여 사용중(임차료: 보증금 1000만원, 임대료 90만)에 있으며, 대전에 지점을 두고 금번 회사방침에 의거 대전에 부동산을 매입(부동산가액: 2억6천만)하였고, 공장을 신축하여 본사를 대전으로 이전하게 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세법 274조, 275조에 의거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시 감면에 해당되는지와 감면 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 1】 감면해당여부

<갑 설> 본점부동산이 당해법인소유의 부동산이 아니고,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지방세법 제274조 본문에서 규정하는 “……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을 설> 본점 및 주사무소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은 수도권집중화방지 및 지역균형개발이라는 조세정책적 목적이 있으므로,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지 않더라도 본점등기를 지방으로 이전하고, 공장을 설립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목적이 있으므로 감면에 해당됨.

【질의 2】 을설해당시 감면범위여부

<갑 설> 법인 장부가액과의 차액(서울: 장부상 임차료-대전: 장부상취득가액)

<을 설> 부동산의 시가표준액과의 차액(서울: 임차한 부동산의 시가표준액-대전: 취득부동산의 시가표준액)

조세입법취지에서 비추어 보아 수도권집중화 및 지역균형개발촉진에서 감면조항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자가 유리한 쪽으로 법해석을 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회 신

지방세법 제2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고 대도시 이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여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갑설”(감면대상이 아님)이 타당함. (세정 13407-700, 2000. 6. 5)

18. 외국정부에 대한 비과세 질의

지방세법 제106조 및 제126조에서 외국정부에 대한 비과세는 “외국정부 및 주한 국

제기구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하여는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호주의에 대한 적용에 다툼이 있어 질의하오니 국제관계임을 감안하여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황】

- 1) 매각대상 재산: ○○구 ○○동 139-20 대지 2,468㎡, 2,316백만원.
- 2) 매각추진 개요
 - 1999. 12. 29: 매수신청
 - 2000. 1. 10: 매각방침 결정
 - 2000. 1. 31: 감정평가액 및 계약서(안) 통보
- 3) ○○○측 제안 내용: 취득세·등록세 채권매입비용 등 토지매입에 따른 제비용 면제 요청

【질의 내용】

○○○ 국내법에 외국정부의 부동산 취득시 우리나라 지방세법과 같이 외국정부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비과세 또는 감면하는 상호주의의 규정을 두고 있으면 상호주의에 따라 비과세·감면하면 되나, 상호주의의 규정이 없을 때 ○○○ 정부로부터 상호주의에 의한 비과세·감면 약속서한을 한국 외교통상부에 제출한다면 취득세 등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갑 설>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할 수 있다.

러시아에 한국과 같이 상호주의의 규정이 없을 경우 한국정부가 향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비과세·감면하겠다는 약속서한을 한국외교통상부에 제출할 경우에는 외교상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을 설>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할 수 없다.

러시아 정부의 국내법에 상호주의원칙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비과세 할 수 없다.

【우리 시 의견】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회 신

귀문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세정 13430-712, 2000. 6. 8)

19. 가설건축물 취득세 관련 질의

기존 사원사택을 매수하여 공동주택을 건립하고자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도급금액에는 아래 항목의 공사비와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 경우 사용검사후 보존등기시 등록세와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항목은 어느 항목인지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항목의 내역서와 집행금액은 각각 산출되어 있음.)

아 래

1. 직접공사비
2. 모델하우스 신축 공사비
3. 기존 사원사택 철거비용 및 폐기물 처리비용
4. 감리비용
5. 광고선진비를 포함한 분양비용
6.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간의 위탁관리비용(공동주택관리령 제8조제1항에 의거)
7. 하자이행보증과 관련된 비용
8. 개발부담금 및 학교시설부담금
9. 시공사에게 귀속되는 체세공과금

회 신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에 의하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하므로 귀문의 경우 직접공사비, 기존 사원사택 철거비용 및 폐기물 처리비용, 감리비용,

각종 부담금(개발부담금 제외) 및 제세공과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모텔하우스 등 가설건축물의 경우는 지방세법 제107조 6호에 의거 독립적인 과세객체로서 존속기간 1년 초과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과세권자가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세정 13407-706, 2000. 6. 7)

20. 창업중소기업의 정의 관련 질의

당사는 현재 벤처기업으로서 금번 사업계획에 따라 경기도 ○○시 소재의 공장(대지 및 건물)을 매입할 계획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을 바랍니다.

다 음

1. 공장 매입시기: 2000년 4월이후
2. 매입 대상처: 경기도 ○○시 ○○동 소재 공장(대지 및 건물)
-서부지역 관리공단 내 위치
3. 질의내용: 벤처기업인 당사가 상기 지역의 공장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 등록세 감면 또는 면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와 관계 법령 조항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과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후 2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1986. 9. 12 설립하여 99. 9. 28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귀사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대상이 아님. (세정 13407-546, 2000. 4. 24.)

21. 합병으로 인한 비업무용토지 과세표준 질의

【질의 배경】

- 건축자재 및 유리제품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금강(회사설립일 58.

8. 12. 이하 “존속법인”이라 함)이 도료 및 PVC바닥재 제품 제조가 주업인 ○○화학주식회사(회사설립일 74. 7. 18. 이하 “소멸법인”이라 함)을 흡수합병(합병기일 2000. 3. 31/합병등기일 2000. 4. 1)하고 흡수합병법인의 상호는 (주)○○○○화학임.

-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①항2호 및 동법시행령 제116조의 1항에 의한 합병에 해당되며
- 합병법인 (주)○○○○화학의 소멸법인명의 부동산 취득등기와 관련하여 양론(兩論)이 존재하고 합병원인 지방세 관련 의문사항을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요지】

1. 존속법인의 소멸법인 명의 부동산 취득등기 「○○화학(주) → (주)○○○○화학」과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110조 4호 단서에 의하면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 후에 제112조의2 및 제11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비과세된 취득세를 추정)”라고 되어 있고, 또한 소멸법인 명의 부동산을 존속법인명으로 등록시에는 감면 등록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토록 되어 있음.

이와 같이 합병 원인으로 취득한 물건이 지방세법 제110조 4호에 의한 단서조항에 해당될 경우 추정될 취득세와 소멸법인명의 부동산을 존속법인 명의로 등기시 납부할 농특세 계산시 감면 등록세액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11조 ②항 1호 및 2호에 의한 시가표준액인지 소멸법인의 미상각 장부가액인지 여부?

2. 소멸법인의 물권(근저당권 등)을 흡수합병법인인 (주)○○○○화학으로 명의변경 등기시 지방세법 제131조 ①항 6호의 세율(설정금액의 1000분의 2)을 적용하는지,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①항 2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으로 인한 양수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포함될 경우 납부할 농특세 계산시 감면 등록세액의 과세표준은?

3.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해당 여부?

가. 소멸법인의 취득 토지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토지

판정 유예기간 도래 전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법인에게 승계된 경우, 그 토지를 소멸법인이 최초 취득한 날과 합병으로 존속법인이 승계 취득한 날 중 어떤 날을 비업무용토지의 판정 기산일로 하는지 여부?

나. 존속법인과 소멸법인이 공동지분으로 취득한 토지가 비업무용판정 유예기간 도래 전 소멸법인의 취득지분이 존속법인으로 승계된 경우, 비업무용 판정의 기산일은?

다. 소멸법인이 5년이상 사용한 부동산을 합병 후 존속법인이 2년이내에 매각하였을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①항 2호 나목에 해당되는지 또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라. 합병 전 소멸법인의 사업부지에서 제외된 일부 토지가 비업무용토지로 판정되어 취득세 중과분을 납부한 후 존속법인이 소멸법인의 취득세 중과된 토지를 승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존속법인이 소멸법인의 취득세 중과된 토지를 2년이내에 매각하거나 업무에 직접사용함이 없이 소유하고만 있다면, 지방세법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존속법인이 재차 취득세 중과세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마. 상기 가 내지 라목의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면 그 과세표준은?

회 신

○ 귀문 1)에 대하여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등기하는 물건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알려드립니다.

○ 귀문 2)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법인의 근저당권을 합병법인이 인수하여 명의변경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가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귀문 3)에 대하여

소멸법인의 토지를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법인이 승계취득하는 경우 존속법인이 승계취득한 날이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 기산일이며 존속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한 토지를 5년이내 매각하거나 유예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된 취득세가 추정됨과 동시에 취득세가 중과되며 이때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됨.

(세정 13407-548, 2000. 4. 24)

22. 창업벤처중소기업 취득세 관련 질의

- 당사에서 1999년 12월 30일 매입한 물건(서초구 양재동 275-6 삼호물산빌딩 비동 7층 701-1호)에 대한 지방세 감면신청(2000. 3. 29)을 90일 이내 ○○구청에 접수하였으며,
- 접수에 대한 회신을 검토한 결과 회신에 대한 적용 법규가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지방세 유권해석 질의를 드립니다.
- (주)○○○○는 1997. 11. 10에 창업하여 벤처기업(1999. 4. 9. 서울지방중소기업청 확인)으로 등록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면세 대상이며.
- 서초구청 ‘지방세 감면 신청서 회신’에 대한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적용 법규는 부칙(1999. 8. 31. 법률 제5996호) 제2조(제6조, 제31조 해당)가 아닌 제10조 (【지방세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 내지 제1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동산 취득)부터 적용한다)가 적용되어야 될 것으로 사려됨.
- 따라서 당사는 1997. 10. 31일에 설립되어 1999. 4. 9일에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았기에 개정된 법에 의한 취득세 등록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서초구청 담당자의 잘못 적용된 고정관념속의 유권해석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므로, 공정하고 적법한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과 동법 제120조 제3항, 부칙(’99. 8. 31 법률 제5996호)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

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97. 11. 10 벤처기업으로 창업하여 99. 4. 9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아 '99. 12. 30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됨. (세정 13407-550, 2000. 4. 24)

23. 기계장비 취득세 관련 질의

Gantry Crane의 취득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지방세법 제104조 2의2호 기계장비의 정의 중 취득세 과세대상은 건설기계관리법에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규칙 제40조의 2에 별표 5에 규정된 기계장비로 언급한바, 별표 5의 내용 중 기중기를 보면 강재의 지주 및 상하좌우로 이동하거나 선회하는 장치를 가진 모든 것(타워크레인류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 내용 중 기중기는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강재의 지주 및 선회장치를 가진 것. 다만, 궤도(레일)식인 것을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강구조물의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레일식으로 된 Gantry Crane을 보유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취득세 부과기준에 대해 다음의 두 가지 의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바랍니다.

<갑 설> 지방세법시행령 별표 5에 기재된 과세대상 기계장비의 범위 중 '7. 기중기' 중 타워크레인류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다.

<을 설>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별표 1에 기재된 건설기계의 범위 중 '7. 기중기'에서 궤도(레일)식인 것은 제외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회 신

지방세법 제104조 제2의 2호와 동법시행규칙 제140조의2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 사용·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강재의 지주 및 상하좌우로 이동하거나 선회하는 장치를 가진 기중기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인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공장의 생산라인에 고정 부착되어 선박·자동차 등의 제조과정에 활

용되는 기계설비의 일종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공장의 생산라인에 고정 부착되지 않아 생산공정용이 아닌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임.

(세정 13407-555, 2000. 4. 25)

24. 잔금을 지급했는지 여부 관련 질의

물건: ○○시 ○구 ○○동 산 137번지외 33필지

○○아파트 102동 1102호

분양계약서와 같이 위 물건을 분양받아 분양대금의 일부를 납부하고 전매하였습니다. 전매후 명의변경을 하고 취득세 신고를 하는데 아래와 같은 의문이 생겨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 중 잔금을 분납한 경우 잔금 중 일부를 처음 납부한 시기가 취득시기인지, 잔금을 완납한 시기가 취득시기 인지요?
- 위의 질의중 잔금을 완납한 시기가 취득시기라면 잔금 중 아주 소액만 남겨 놓은 경우(예: 잔금이 5,000만원인데 10만원이하를 미납한 경우)는 언제가 취득시기 인지요?
- 취득세 고지서에 대하여
위 물건의 입금현황처럼 잔금을 2000년 3월 28일에 납부한 경우 2000년 3월 30일 납기의 고지서가 적절한 지요?

회 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과의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이나 귀문과 같이 총대금(192,159천원) 중 소액(355천원)을 미납한 경우가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취득시기가 도래했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회통념상 잔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매수자가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졌는지의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검토 후 판단할 사항임.

(세정 13407-554, 2000. 4. 25)

특 집

정보화·효율화를 지향한 지방세조직의 개편 방향

이 삼 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I. 서론

정보화·효율화를 지향한 지방세 조직이라고 할 때에는 두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첫째는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조직, 둘째는 지방세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정보화와 함께 효율화도 증진할 수 있는 조직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정보화란(informationization)란 정보의 생산과 활용이 확장되는 사회현상을 말하며 주로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처리기술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도래하는 미래형 사회의 특징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화에 따라 정보의 축적과 확산이 이루어지게 되면 정부와 시민간의 거리가 단축됨에 따라 시민들로 부터의 참여요구가 증대할 가능성이 있다¹⁾. 결과적으로 정보화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세정조직 체계로의 개편을 의미하게 된다.

반면에 효율화에 초점을 두게되면 조

세순응 비용의 절감, 체납세의 감소 등 조직내부의 운영과정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고 이는 어느부분에 있어서는 납세자의 납세편의와 대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여기에서는 정보화 효율화의 의미를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세정조직의 개편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실제로 1980년대 이후 획기적 정보기술의 발달은 재정체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경우 조세행정의 방향은 납세자의 조세순응(compliance)을 제고하는 것이 핵심요소가 되고 있다²⁾.

우리나라의 경우도 납세자의 조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자치단체별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세무조직 자체의 변화라기 보다는 현재의 조직을 그대로 유지한채 시행방법상의 방안이라는 점에서 정책효과의 지속성 부분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시말해 시민의 참여

1) K. Young, "The Justification of Local Government" in Goldsmith ed. Essays on the Future of Local Government, 1986. 이승중, "지방자치의 새로운 이해와 장기적 발전방향", 지방자치 50년의 회고와 21세기 전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세미나 발표논문, 1999, pp. 55-56에서 재인용.

2) Glenn P. Jenkins,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novation in Tax Administration,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novation in Tax Administration*, 1996. PP. 1-3.

증대를 통한 납세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세정조직의 개편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II. 현행 지방세조직 체계

1. 자치단체 계층별 지방세무 조직 현황

가.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세무 조직

광역자치단체의 세무행정조직은 <표 1>에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대부분

이 과단위에 주무부서가 설치되어 있으며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그리고 제주도의 경우 만이 계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광역자치단체의 세무조직의 구성은 당해 자치단체에서 지방세수입의 절대액수가 많은 자치단체일수록 세정과가 상위의 조직체계에 구성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좀더 세분되어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지방세의 절대액수가 가장 많은 서울시의 경우 세무관련부서가 세무행정과와 세무운영과로 구성되어 있고

<표 1> 광역자치단체별 세정조직 편제

자치단체		국	과	계
광역시	서울	행정관리국	세무행정과 세무운영과	
	부산	재정관	세정담당관	
	대구	내무국	세정과	
	인천	자치행정국	세정과	
	광주	기획관리실	세정담당관	
	대전	자치행정국	세정과	
	울산	자치행정국	지방세과	
도	경기	자치행정국	세정과	
	강원	자치지원국	세무회계과	세정계
	충북	자치행정국	재정과	세정계
	충남	자치문화관광국	세정과	
	전북	자치행정국	세정과	
	전남	기획관리실	재정담당관	세정계, 세무조사계
	경북	자치행정국	세정과	
	경남	자치지원국	세정과	
	제주	자치경제국	자치재정과	세정계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조직 편람, 1998.

그 산하에 8개의 계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산의 경우도 세정담당관 산하에 5개의 세무관련계가 설치되어 있어 다른 광역 자치단체에 비해 많은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반면에 지방세수입의 절대액 수가 적은 일부 도의 경우는 계단위에서 지방세정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의 세정과에 설치된 계조직은 자치단체별로 일관된 체계를 갖기는 곤란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림 1>과 같이 세정계, 세외수입계, 평가계, 세무조사계, 심사계 등 5개의 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세정계는 지방세 제도운동을 핵심기능으로 하고 있으며, 평가계는 토지등급 설정, 수정등 조정업무 지도, 부동산 과세표준액 결정 및 승인, 부동산 과표 시가조사, 표준지 관리, 재산관련세과정에 관한 사항등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세무조사계는 지방세의 세원조사

와 각종 과세자료의 통보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심사계는 지방세의 재조사 청구 및 심사청구 결정,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 지방세 관련 행정소송 관리, 지방세 심사위원회 운영, 기타 지방세 심사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시의 지방세무조직

지방시의 지방세무조직은 전국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고는 있으나 크게 2종류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는 부과와 징수기능이 철저히 분화되어 있는 지역(A 유형), 둘째는 부과와 징수 두 기능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B 유형)이 그것이다.

먼저 A 유형의 경우(<그림 2> 참조), 과단위에서 부과와 징수가 구분되는 유형으로 경기도 부천시, 광명시, 시흥시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 광역자치단체도의 지방세무 관련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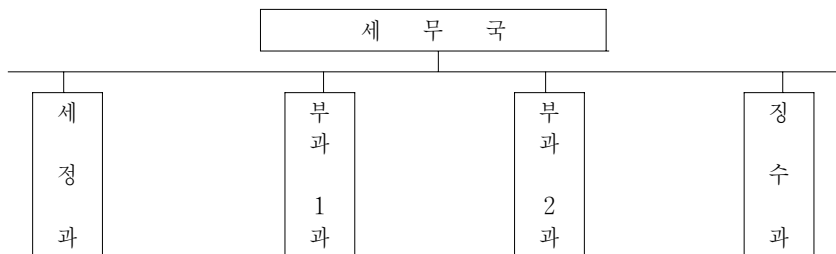
부천시의 경우는 과단위에서 부과와 징수기능이 분리되어 있지만 시흥시의 경우는 계단위에서 이러한 기능을 구분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직은 둘다 부과업무와 징수업무를 구분하므로써 세무관련 부조리를 예방하고 상호통제와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설계라고 할 수 있다.

한편 B 유형은(<그림 3> 참조) 부과와 징수기능의 상호견제보다는 유사세목을 기준으로 조직을 구분하는 것으로 군포시, 구리시 등의 세정조직이 대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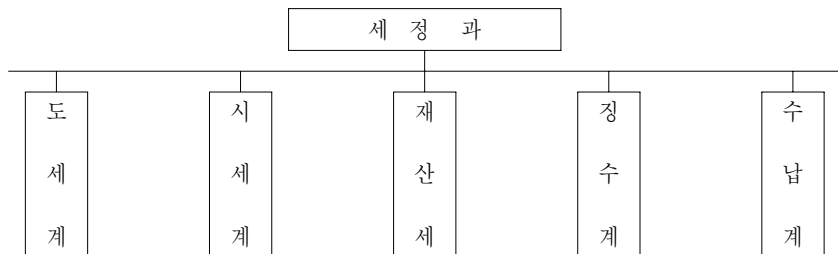
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직은 부조리의 방지보다는 우리나라 지방세의 부과·징수업무가 세목별로 연계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많으므로 이러한 업무의 연계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 측면을 강조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지방시의 세무관련 부서는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세무과 또는 세정과가 주무부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세무과 또는 세정과에는 대부분 부과담당, 징수담당, 재산

<그림 2> 부천시의 세무기구A 유형



<그림 3> 군포시의 세무기구B 유형



세담당이 설치되어 있고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에 조사계 또는 평가계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중 부과담당은 과소관 행정의 종합조정 및 일반사무, 지방세 재조사, 심사청구, 취득세 부과조정, 등록세 부과조정, 자동차세 부과조정, 농지세 부과조정, 면허세 부과조정, 도축세 부과조정, 담배소비세, 과내예산·경비 및 물품관리, 납입감액 결정통보, 지방세 가산세 조정 및 과내 타계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등을 처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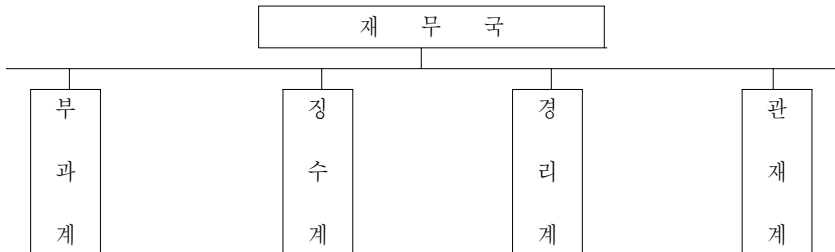
그리고 징수담당은 지방세 징수계획수정 및 시행, 납세홍보 및 징수 독려, 독촉장 발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처분, 압류물건 공매, 징수촉탁, 수입일계표 정리, 지방세 2차 납세의무자 지정, 자금배정 및 수급계획, 세목별 과징상향보고, 지방세 수입과정 상황보고, 도세보고(월보), 도세 세입징수액 계산서(기보), 교육세 세입징수 보고(기보), 과오납 환불, 도세불입, 세입정정, 가산금 조정, 등록세 징수결의 및 이동증감 결의, 시금고 및 공과금 수납은행 지도감독, 세입결산 및 총괄, 이월액 조서 작성, 보조금 및 교부금 수입결의, 지방교부세 수입결의, 수입금 출납원등을 관리하고 있다.

한편 재산세담당은 재산세 부과조정, 종합토지세 부과조정, 도시계획세 부과조정, 공동시설세 부과조정, 종합토지세 p·c운영, 재산세 과세증명 발급, 종합토지세 과세 및 미과세 증명발급 등을 담당하고, 마지막으로 조사와 평가담당은 주로 기존의 부과계에서 담당하던 업무를 분할 수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법인 및 사업소 세무조사계획 수립, 법인 및 사업소 세무조사, 사업소세 및 주민세에 관한 사항, 농지세원 조사, 토지, 건물 일제조사, 기타세원 발굴, 토지등급 설정 및 수정, 부동산 과세표준액 조사 결정, 무신고 이동지 조사결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군의 지방세무조직

군 자치단체의 지방세무조직은 세무과 또는 재무과를 주무부서로 하고 있는데 세무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지방세의 부과·징수업무만을 담당하고 있는데 반해 재무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세정기능외에 경리와 재산관리까지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군 자치단체의 세무관련 부서는 대부분이 부과기능과 징수기능이 분리되어 설계되어 있으며, 부과계, 경리계, 징수계, 관재 등 4개의

<그림 4> 군 자치단체의 세무기구



계조직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4 참조>).

이러한 군 자치단체의 세정부서중 경리계와 관재계는 지방세의 부과 및 징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며 지방세정업무는 주로 부과계와 징수계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중 부과계는 지방세 개인별 이동증감, 재산세대장 직권 등재, 사업소 신고지, 농지세 자진신고, 취득세 자진신고, 세원조사, 지방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지방세 고지, 농지재해 감면신청, 세무사범 처리, 세원자료 조사에 관한 사항, 납세홍보, 농지세 과세표준액 결정, 지방세 이동증감 결의, 지방세담당공무원 순회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징수계는 표준지 시가 조사보고, 군유재산의 매각사용 대부료 이자징수, 공유재산의 변상금 조정징수, 국유재산의 변상금 연체이자 조정징수, 국유재산

의 임대료 산정,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건물의 과세지가 표준액 조정, 기타물건 과세시가 조사, 국유재산 용도폐지 및 관리청 지정 실적보고, 변상금 조정, 국공유 건물현황 보고, 지방세 징수독려, 과오납의 정리 및 환불, 도세 및 세외수입 교부금 청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지방세 부과·징수업무의 부서간 연계

가. 신고납부세목의 부서간 연계

신고납부는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신고하고 동시에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현행 지방세법에서 신고납부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세목은 <표 2>와 같다.

신고납부방법에 의한 부과과정은 대

<표 2> 신고납부세목 및 내용

세 목	신고납부 내용	신고납부 기한
취득세	일반사항	취득시기로부터 30일 이내
	상속취득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
	실종선고에 의한 취득	실종선고일부터 6월 이내
	중과세로 추정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
	감면분 추정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
등록세	일반사항	등기·등록신청서 접수하는 날까지
	중과세로 추정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
	감면분 추정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
경주·마권세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주민세	신고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기한 연장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20일 이내
	결정·경정분	연장된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수정신고분	고지서상 납부기한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납부분	신고일부터 30일 이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분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특별징수분	특별징수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사 업 소 세	재산할	매년 7월 10일까지
	종업원할	급여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농지세	중간예납	제1기분: 8월 16일-31일 제2기분: 12월 16일-31일
	확정신고	다음해 1월 31일까지
	결정징수	다음해 3월 16일-31일
도 축 세		특별징수한 날의 다음달 5일까지
담 배 소비세	제조자의 당월 반출분	다음달 말일까지
	수입업자의 보세구역 당월 반출분	다음달 말일까지
	특별징수 시·군	다음달 10일까지
지 역 개발세	일반사항	다음달 10일까지
	컨테이너세	다음달 20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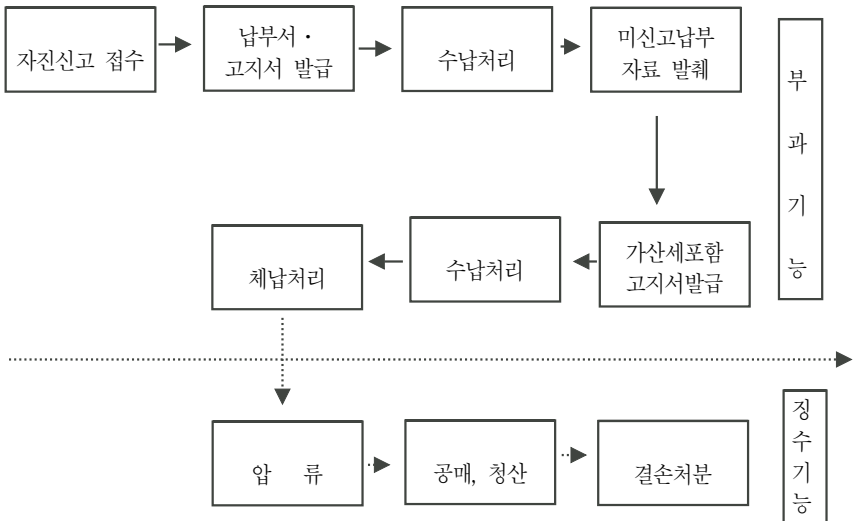
체로 자진신고서 접수, 납부고지서 발급, 수납처리, 미신고납부자료 발체, 가산세 고지서 발급, 수납처리, 체납처리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편 징수과정은 일차 체납통지서 발급 이후부터 이루어지며 주로 체납처리와 관련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과정은 <그림 5>에 나타나 있다. 결과적으로 신고납부세목을 부과·징수하는 과정은 자진신고서 납부부터 체납처분까지의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부과업무와 징수업무가 완전히 별개로 독립되어 처리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

나. 보통징수세목의 부서간 연계

보통징수는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으로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징수되는 지방세목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자동차세, 면허세 등이 있으며, 이러한 세목의 납세의무자 및 납기 등은 <표 3>과 같다.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는 세목의 경우도 부과업무는 일차체납고지서까지는 부과기능에 속하며 그 이후의 결손처분까지의 업무가 징수업무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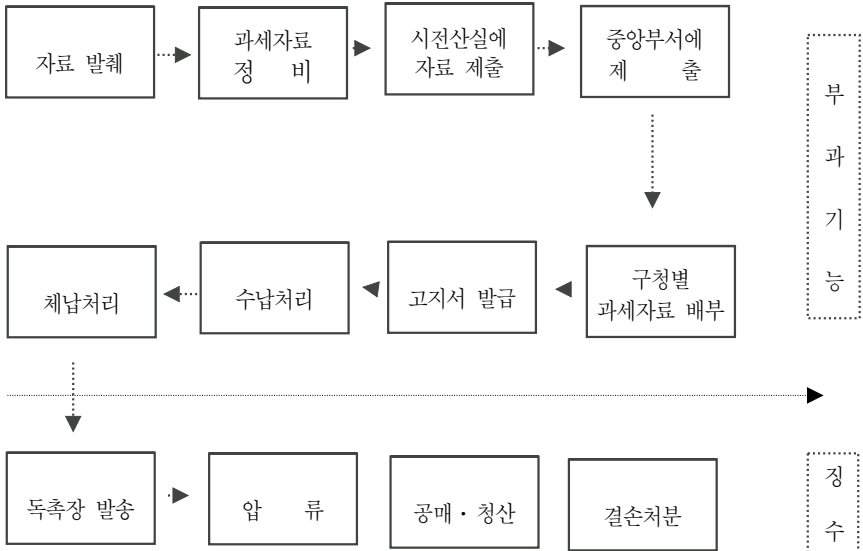
<그림 5> 신고납부세목의 부과업무와 징수업무의 연계 과정



<표 3> 보통징수 세목의 종류 및 내용

세 목	납세의무자	납 기	관련조항
재 산 세	재산세과세대상에 재산소유자로 등재된자	매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	제190조 제1, 2항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	매년 10월 16일 10월 31일	제234조의17 제234조의18
도시계획세	도시계획구역내에 토지, 건물 소유자	건물분(재산세와 동일) 토지분(중토세와 동일)	제238조
공동시설세	소방시설등으로 인해 이익을 받는 자	재산세와 동일	제241조
자동차세	자동차 소유자	제1기분: 6월 16일부터 6월 30일 제2기분: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	제196조의6 제1, 2항
면 허 세	면허소지자	납세고지서상 납부기일	제165조

<그림 6> 보통징수세목의 부과업무와 징수업무의 연계



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징수기능은 체납처분 뿐만 아니라 세원조사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과와 징수기능은 징수부서→ 부과부서→징수부서의 업무순환과정을 거치게 된다(<그림 6> 참조).

그러므로 현행 세무행정 조직체계가 부과와 징수를 분리하는 체제로 구성되어 있음으로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다.

3. 지방세 부과·징수의 자치

단체 계층간 연계 현황

지방세 관련업무는 한 자치단체내의

부서간에도 분담처리하고 있지만, 자치단체간에도 위임·처리하고 있다. 즉 시·도세는 시·군으로 위임하고, 다시 시·군은 읍·면·동에 당해 사무의 일부를 재위임하고 있으며, 시·군세도 읍·면·동에 위임하여 지방세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자치단체 계층간 지방세관련업무의 위임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3조와 제95조로서 이를 근거로 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데 각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다.

이러한 근거규정에 따라 도와 시·군 그리고 읍·면·동은 지방세의 부과와

<표 4> 지방세관련업무의 위임규정

관련법규	조 문	주요 내용
지방자치법	제93조	시·도와 시·군·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 시, 도지사 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한다.
	제9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입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 다시 위임할 수 있다.
도세 조례	제 6 조	도지사의 도세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 하고는 당해 과세객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출장소장을 포함)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시세 조례	제 6 조	시장은 시세의 부과징수사무 중 납세의 고지독촉 및 체납처분과 가산금 및 가산세의 수납,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공무원 또는 읍, 면,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징수기능을 상호 연계하여 수행하고 있는데 일례로 도세의 경우, 도지사의 위임을 받은 시장 및 군수가 읍·면의 협조하에 과세자료를 조사하여 징수결의서를 작성한 다음, 징수부에 기재하고 이를 통지하게 된다. 이후의 과정은 앞에서 기술한 시·군의 행정조직 내부에서 나타나는 부과과정을 거쳐 다시 읍·면으로 징수결의서가 통지되게 된다. 징수결의통지서를 받은 읍·면장은 수납부를 작성하고 납세고지서를 작성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납세의무자와 납세관련부서와의 1차적 관계를 종결하게 된다.

그러나 읍·면에서는 이후에도 세목별 월말집계를 하여 부과·징수사항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해 수납부 등을 정리하고 이를 시청 및 군청의 징수부와 월 1회 이상 대사를 하며, 이외에도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수납부에서 발췌하여 정리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된 체납액은 독촉, 압류, 공매, 청산, 결손처분 등의 과정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납세의무자와 징수관련부서와의 2차적 관계가 끝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시장 및 군수는 세입징수보고서를 세목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15일 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게 된다.

이렇게 시·군별로 위임 및 재위임되고 있는 지방세관련사무를 표로 나타내면 <표 5>와 같다.

<표 5> 읍·면·동에서 처리하고 있는 지방세관련업무

지방세관련 단위업무명	
납세완납증명	취득세부과고지
지방세감면신청	면허세부과고지
등록세비과세확인	지방세체납세금 독촉 및 징수
세목별과세증명	지방세감액 결산자료 작성
매각·등기·등록관계서류의 열람	지방세징수 포상금 지급 신청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	지방세체납처분
과오납금환부금 지급통지	주민세부과고지
지방세변동 자료관리 및 고지서 전달	법인세균등할주세 부과대상자 조사보고
지방세수납부 작성관리	사업소세부과대상자 사업장 조사
농지세부과고지	건축물실측 현지조사
도축세부과고지	

자료 : 행정자치부, 동 기능전환 확대시행 지침, 2000.

4. 지방세무조직의 특징

우리 나라의 지방세무행정조직은 지역별로 차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조직을 일반화하여 조직체계의 현황을 기술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그러나 지방세무조직간에는 자치단체 계층별로 공통분모를 발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통분모를 토대로 현행 지방세무조직이 갖고 있는 특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나라의 지방세체계는 도세와 시군세 등 징수주체별로 분류되어 징수액의 사용은 명확히 구별이 된다. 그러나 부과 및 징수과정에서는 이러한 구별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도의 세무관련 부서는 직접적인 지방세의 부과·징수업무 보다는 지방세제도의 운영, 세원조사, 소송관리 등 전반적인 지방세 관련업무의 조정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는 반면,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의 세무관련부서에서는 도세 및 시·군세의 실질적인 부과·징수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광역자치단체 세무부서의 분장업무는 주로 기능별로 분배되어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는 과정보별 그리고 세목별 기능분담을 주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읍·면·동도 조례로서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지방세 관련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둘째,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부과업무와 징수업무를 철저히 분리하여 조직을 설계하고 있다. 과거 세정계에서 일괄 담당하던 부과·징수업무를 부과계, 징수계로 구분하여 부과업무와 징수업무를 분리·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세의 부과 및 징수업무의 혼재로 발생할 수 있는 세무비리를 예방하고 상호 통제와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셋째, 일부자치단체의 경우 관련세목의 통합관리로 업무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다. 즉 현행 지방세의 과세대상중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등은 과세대상 및 세율이 각 세목간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에도 부과와 징수업무를 구분하게 될 경우 동일한 과세대상을 다시 관리해야 하는 업무의 비효율성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유사한 세목을 중심으로 조직을 설계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기능을 중심으로 구분한 조직이 세무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설계라면 이러한 조직은 업무의 효율성을 강조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시의 세무조직에서 조사평가계

의 기능이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조사평가제는 1995년 이루어진 행정구역개편 이후 신설 내지는 강화된 기능으로서 토지등급 설정 및 수정, 부동산 과세표준액 조사결정, 무신고 이동지 조사결정 등 기존의 부과 업무의 일부 분할하여 관장하고 있으나, 이외에도 세무조사, 토지, 건물등의 일제조사 등 기존의 세무관련 부서에서는 담당하고 있지 않거나 소홀히 취급하였던 과세대상의 조사 및 평가업무를 좀더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Ⅲ. 정보화 효율화를 위한 지방세 조직의 개편 방안

1. 기본방향

1980년대 이후 획기적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조세행정의 방향도 변화의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시말해 과거 조세행정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법은 탈루세원을 찾아내고 납세를 회피하는 사람들에게 강한 제재를

가하는 등 강제적인 방법이었으나 정보체계의 발달로 컴퓨터의 활용이 증가된 현대에는 납세자에 대한 기록과 정보관리로 그 방향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납세의무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거나 조세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을 때 조세순응은 더욱 확보될 수 있고 납세비용의 절감에도 기여하게 된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따라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외국에서도 조세순응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납세자에게 어떻게 서비스를 하는 것이 납세자를 고객으로 대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다³⁾.

이 경우 납세자의 조세순응을 확보하기 위한 제1차적 과제는 각 개별 세무관련 공무원은 어떻게 적절한 정도의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지가 관건⁴⁾이라는 점에서 조직개편의 방향도 정보의 확보와 연관하여 개편할 필요가 있다.

3) Glenn P. Jenkins,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novation in Tax Administration,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novation in Tax Administration, 1996. p.4.

4) Ibid, p. 7.

2. 세무조직체계의 개편 방향

현행 세무조직의 대다수는 부과기능과 징수기능을 구분하여 조직을 설계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직설계는 업무의 효율성 측면보다는 지나치게 세부비리를 예방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향이 있다.

뿐만 아니라 고객지향적 서비스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문의가 있을 때 한사람이 모든 문의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하나 우리의 경우 부과와 징수업무가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어 한명의 담당자가 모든 과정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다시말해 부과징수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사람이 대부분의 징세과정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지만 현재는 부과와 징수가 엄격히 구분되어 있어 납세자가 따로따로 질문을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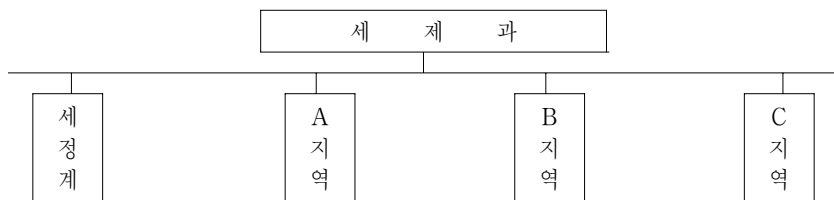
이는 현행 지방세무조직이 기능별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로

이에대한 대안으로는 첫째, 세목별 조직 둘째, 지역별 조직 등이 상정될 수 있다. 세목별 조직은 부과와 징수업무가 연계되어 이루어지는 세목을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직설계는 현재 일부 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체제로서 지방세의 경우 국세와는 달리 세목간 연계가 긴밀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중시한 개편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인 지역별 조직체계는 당해 지역을 권역별로 구분하여 부과와 징수업무를 동일 부서에서 수행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그러나 세정기능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세정 일반업무를 하는 부서는 필요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세정계에서 수행하던 기능은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세정조직을 지역별 조직체제로 전환할 경우 <그림 7>에 나타난 바

<그림 7> 지역별 조직체계 예시



와 같이, 세정계, 지역별 담당조직 등으로 구성된다. 이 경우 계단위의 크기 및 개수는 당해 자치단체내의 담당지역의 인구, 넓이 등을 기초로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지역별 조직이 갖는 장점으로 는 하나의 부서가 한 지역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과 밀접한 관계 유지가 가능하고 지역의 사정에 대한 파악이 용이하기 때문에 새로운 세원의 발굴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방세의 경우 납세자의 의식이 대단히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⁵⁾ 주민과의 긴밀한 연계는 주민의 납세의식 제고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보화와 연관해서는 지역별 조직체계를 고려해볼 만 하다.

지방세정조직을 지역별 편제로 전환할 경우 예상될 수 있는 문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첫째는 한 사람이 다수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며 둘째는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연계로 인한 세무부조리의 발생 가능성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첫 번째 문제는 세무행정의 전산

화로 해결이 가능하며 두 번째 문제의 경우는 세무부조리를 제도로써 억제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세무부조리를 조직설계의 기본인식으로 삼기보다는 업무의 효율성 또는 납세자의 조세순응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당위성을 찾을 수 있다.

2. 자치단체 계층별 세무업무의 연계 제도 개선

우리나라의 지방세무행정의 업무는 광역자치단체, 시·군 그리고 읍·면·동의 연계에 의해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도 자치단체의 세정업무에 대한 기능분석 결과에 의하면 현재 도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세정업무는 모두 집행기능으로 분석되고 있다⁶⁾. 결과적으로 지방세의 부과 및 징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광역부터 시·군, 읍·면·동까지 모두 집행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 업무의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광역자치단

5) 이영희, 체납세의 징세관리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5, p. 74.

6) 한국능률협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충청남도 경영진단보고서, 1999.

체의 지방세 부과·징수와 관련된 집행 기능은 기초자치단체로 이관하고 광역 자치단체는 납세서비스개선, 인프라구축 등 정책개발에 치중하는 한편 도내 각 시·군의 업무를 조정 및 지원하는 기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기초자치단체의 기능은 기획기능보다는 집행기능 위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지방세정 업무중 체납세의 징수와 같은 기능은 한 자치단체에만 국한하여 처리할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은 각 개별자치단체별로 전산화와 같은 세정인프라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인해 재원의 낭비 및 업무의 비효율이 초래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지방세정업무의 특성상 세정기획기능은 적어도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기초자치단체는 집행기능중심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읍·면·동의 기능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는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을 모색하고 있다⁷⁾. 그러나 지금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는 다양한 지방세정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

며 이러한 업무는 대부분이 고지서전달, 체납세 징수 및 처분, 지방세부과대상조사 등 본청으로 이관되어도 계속 추진하여야 하는 업무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기능전환에 따라 본청으로 이관되더라도 기존의 업무중 주민과 밀접한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업무는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3. 지방세 종합전산 시스템 구축

정보화사회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조직체계의 개편도 필요하지만 지방세관련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도 동시에 병행해야 하는 필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현재의 지방세 전산시스템은 지방세의 부과 및 징수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별적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세무행정 전 과정이 연계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앞에서 기술한 자치단체계층별 업무의 연계와 관련된 문제로, 세무행정 뿐만 아니라 지역별 통합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기획기능을 주로하는 광역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통합

7) 행정자치부, 동 기능전환 확대시행 지침, 2000.

전산망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곳도 있으나⁸⁾ 당해 지역에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치단체간 연계가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체납처분의 경우 체납자가 타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지역간 연계가 곤란하여 결손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좀 더 광역적인 자치단체를 주축으로 전산시스템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지방세의 체납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주민전산망과 세무전산망의 연계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주민전산망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공개되는 정보가 아니므로 특정기간 다시말해 주간 또는 월간 주소 변경된 자료 만을 별도로 제공받는 방법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IV. 결 론

최근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자치단체별로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지방세조직이 부과기능과 징수기능이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어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

하여 여기에서는 정보화 사회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대안중 하나로 주민의 납세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조직개편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주민에 대한 납세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조직자체의 개편 외에도 조직내부의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예로 현재 세무직렬의 6급 상한제는 승진할 경우 일반직화되므로 인사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세무행정의 전문화에는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보화와 관련하여 세무인력의 승진상한제에 대한 재고가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세무행정인력의 충원은 당해 자치단체 전체의 인력수급계획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무행정업무가 증대하더라도 세무인력 만의 증원이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력의 증대보다는 업무의 절감측면에 초점을 두는 것이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체납세의 징수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과 같은 업무절감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

8) 광명시의 통합전산망이 예로될 수 있다

특 집

민선자치시대의 세수확보 정상화 방안

원 윤 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I. 머릿말

1995년 민선 자치시대가 출범한 이후 5년이 경과하였으며 2기 단체장의 임기도 이미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그 동안 민선자치시대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역에 기초를 둔 풀뿌리 민주주의로서 지역주민의 의사를 다양하게 수렴하여 행정과정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민주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재정 측면에서도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결정하는데 있어 주민들의 선호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재정수입을 확보하려는 시도들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와 동시에 민선자치가 초래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지역의 이해관계가 강하게 표출됨으로써 이를 조정하는데 많은 사회적 비용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수도권 난개발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지역의 관점에서 추진되는 많은 정책들이 사회전체적으로는 많은 비효율과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민선자치의 출범 이후 지방세의 운영 및 세수확보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의 특징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자치단체의 세입구조에서 지방세의 비중이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국세에 비해 세수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낮게 나타남에 따라 전체 조세에서 점하는 지방세의 비중도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종합토지세의 과표현실화율이나 과표증가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점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선거를 의식하는 민선단체장들의 행태가 정상적인 세수확보를 저해하고 있으며, 또한 재정책임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지방세의 역할을 위축시키고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민선자치시대 출범이후 지방세의 운영상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을 제고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메카니즘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지방자치의 기본이념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선호에 따라 지방공공서비스의 공급과 재원조달을 자율적으로 수행하고 그에 대해 책임을 짐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메카니즘 속에서 지방세는 지역주민이 소비하는 지방공공서비스에 대한 조세가격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방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하에서 본고의 진행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90년대 지방세수의 변화를 살펴보고 특히 민선자치의 출범을 전후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살펴본다. 3절에서

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들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4절에서는 요약과 결론을 제시한다.

II. 민선자치 출범 이후 지방세수의 변화와 특징

<표 1>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연도별로 보여주고 있다. 1987년에 36.3%이던 지방세의 비중은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담배소비세를

<표 1>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세입내역순계 결산

(단위: 억원, %)

연 도		1987	1990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합	계	60,421	154,910	250,611	302,808	366,673	449,954	507,497	509,892
	지방세	21,923	63,786	110,258	132,286	153,169	173,947	184,977	171,483
	세외수입	10,330	39,796	59,935	77,380	90,325	138,887	166,917	154,431
	지방교부세	16,097	27,647	44,124	48,214	56,713	65,239	70,146	73,313
	지방양여금	-	-	14,211	16,961	18,701	25,744	28,764	28,795
	국고보조금	9,715	20,418	17,435	23,371	32,190	38,684	43,332	61,754
	지방채	2,356	3,263	4,648	4,596	15,575	7,453	13,361	20,116
비중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지방세	36.3	41.2	44.0	43.7	41.8	38.7	36.4	33.6
	세외수입	17.1	25.7	23.9	25.6	24.6	30.9	32.9	30.3
	지방교부세	26.6	17.8	17.6	15.9	15.5	14.5	13.8	14.4
	지방양여금	-	-	5.7	5.6	5.1	5.7	5.7	5.6
	국고보조금	16.1	13.2	7.0	7.7	8.8	8.6	8.5	12.1
	지방채	3.9	2.1	1.9	1.5	4.2	1.7	2.6	3.9

주: 분류기준상 다른 연도들과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1987년의 경우 세외수입에 포함되어 있던 지방채를 별도로 분리하였으며, 1993년의 경우 지방양여금특별회계의 내용을 지방양여금으로 포함하였음.

자료: 행정자치부(내무부), 『지방재정연감』, 각년도.

도입하는 등 지방재정을 확충하려는 제 반 노력에 따라 1993년에는 44% 수준 까지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후 지방세의 비중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IMF 사태의 영향이 반영된 1998년의 경우 그 비중은 33.6%까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지방세 비중의 변화에 대비하여 세외수입의 경우 그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1987년에 17.1%이던 세외수입의 비중이 1994년에는 25.6%, 그리고 1998년에는 30.3%의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세외수입의 70% 이상이 이월금이기 때문에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수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자 수입이 크게 증가하는 등 세입확보를 위

한 자치단체의 노력이 반영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표 2>는 90년대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증가율과 전체 조세에서 지방세가 점하는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세수증가율을 살펴보면 1993년까지 지방세수의 증가율은 국세의 증가율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1994년의 경우는 양자가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1995년부터 반대로 전환되고 있는데 1999년까지 연도별 지방세의 증가율은 국세에 비해서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세수가 감소한 1998년의 경우 세수감소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세수증가율 추세를 반영하여 전체 조세에서 지방세가 점하는 비중은 1990년 19.2%에서 1994년까지 21.9%로 높아지다가 1995년 이후 감소하기

<표 2> '90년대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증가율 및 지방세 비중

(단위: %)

연 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세 수 증가율	국 세	26.4	12.9	16.2	11.5	20.4	20.1	14.4	7.6	-3.0	11.6
	지방세	28.4	26.2	17.8	16.5	20.0	15.8	13.6	5.8	-6.8	8.4
총조세 대비 지방세 비중		19.2	20.9	21.2	21.9	21.9	21.2	21.1	20.8	20.2	19.7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년도.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각년도.

시작하여 1999년에는 19.7%로 나타나고 있다.

<표 3>은 국세와 지방세의 징수율 변화를 90년대 전기간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 우선 지방세의 징수율은 1990년 94.4%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999년에는 83.8% 수준에 이르고 있다. 한편 국세의 징수율도 1990년에 93.6%에서 1998년에는 86.8%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징수율 하락이 단지 지방세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세부과가 증가하고, 특히 IMF 사태 등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이 표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특징은 1995년 이전에는 지

방세의 징수율이 국세에 비해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1995년 이후에는 그 반대 현상이 발견되고 있다는 점으로서 특히 IMF 사태의 영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1998년에 지방세 징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1995년을 전후해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지방세수나 징수율의 변화추세가 과연 민선자치시대의 출범과 연관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치 않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수치들은 1997년 후반에 발생한 IMF 사태의 영향이 강하게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이전에도 경기침체라는 경제적 요인이 세수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민선자치시대 출범이 지방세수 변화에 어

<표 3> 지방세와 국세의 징수율

(단위: %)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주 민 세	92.9	93.5	93.7	93.0	93.1	92.2	92.7	90.8	87.5	88.3
자 동 차 세	92.0	92.2	93.4	94.0	93.4	91.4	91.5	90.1	88.4	88.7
재 산 세	98.4	98.3	98.1	97.7	97.3	96.6	96.8	96.5	93.6	94.2
종합토지세	96.2	97.2	97.0	96.7	95.7	95.1	96.2	95.0	92.3	93.4
지방세 계	94.4	94.2	93.6	93.2	92.5	91.2	90.7	89.1	84.5	83.8
국 세	93.6	93.3	92.6	90.7	91.8	91.2	91.1	89.2	86.8	-

주: 1) 징수율은 국세의 경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을, 그리고 지방세의 경우 부과액 대비 징수액을 의미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년도.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각년도.

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논하기 위해서는 보다 엄밀한 통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를 의식하는 민선자치단체장들이 지역주민들의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게 되며 따라서 지방세를 통한 세입확보노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설득력 있는 가설이라고 여겨진다.

<표 4>에 제시된 종합토지세의 과표현실화를 및 과표인상율을 살펴보면 이러한 추세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90년 15.0%이던 종합토지세의 과표현실화율은 1995년의 31.5%에 이르기까지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으나, 1996년 이후 이 비율은 감소하기 시작하여 1999년에는 29.3%로 하락하고 있다. 과표의 인상율도 1996년을 기점으로 크게 하락하여 1996년에는 0.15%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종합토지세 과표상의 변화는 등급제에서 공시지가 대비 비율로의 전환, 그리고 과표설정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지침 제시 등 다른 외적인 요인에서도 일부 원인을 찾아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하여 각 자치단체들이 과표현실화 노력을 회피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1995년 민선자치시대가 출범한 이후 자치단체의 지방세수 확충노력이 크게 약화되었고 이에 따라 전체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지방세의 비중 감소와 함께 지방자치의 이념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지방세의 역할이 축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들을 살펴보고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해 본다.

<표 4>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를 및 과표인상율

(단위: %)

연 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과표현실화율	15.0	15.3	17.3	21.3	26.9	31.5	31.1	30.5	29.2	29.3
과 표 인 상 율	-	-	-	-	20.6	17.3	0.15	2.0	-0.7	2.7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세개요』, 2000.

III. 세수확보 정상화를 위한 개선방안

1. 민선자치단체장의 의식전환 과 세수확보 노력의 강화

민선자치 출범이후 지방세 확보노력이 미진하였던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는 선거에서의 표를 의식하는 민선단체장이 주민들의 세부담을 증가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어쩌면 당연한 전략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선호에 따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서비스에 대한 조세가격으로서 지방세를 부과하는 자율과 책임의 메카니즘을 통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의 이념을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인 재정운영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인 경우 그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이나 지방의원들을 설득하고 탄력세율 적용이나 과표인상 등을 통해서 그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세율인상이나 과표인상 등을 통한 세수확보노력은 각 지방자치

단체가 스스로의 책임하에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설득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필요로 하는 것이며, 이러한 노력들이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하고 결국은 더 많은 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지주권 확충차원에서 지방세제내에 광범위하게 도입되어 있는 탄력세율제도의 경우 실제 그 활용 정도는 매우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현실적으로 볼 때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들의 입장에서 세율을 인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으며, 반대로 세율을 인상하여 추가적인 세수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의존재원외의 의존성이 높은 자치단체장이 주민들의 저항을 무릅쓰고 이를 추진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과감한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자치단체의 자체노력을 유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세무행정상 징세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앞의 <표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세의 징수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1999년의 경우 징수율은 겨우 83.8%에 불과한 실정이다. 물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많은 자치

단체들이 자동차번호판 영치, 급여압류, 공매, 법인사업체나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강화 등 여러 측면에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민선자치 출범이후 이러한 노력들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이 밖에도 탈루되거나 누락되는 세원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도 적극적으로 요청되고 있다. 건축물 일제조사나 사업체조사, 토지현황조사, 비과세·감면 세원에 대한 실태조사 등 각종 세원에 대한 적극적인 실태파악을 통해서 과세대장상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파악하고 정확한 과세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투명성 제고

최근 한 자치단체의 재정담당자는 세입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고민을 토로하고 있다. “각종 지원이 적어 재정이 열악하면 자치단체는 부득이 세원발굴이나 경영수익사업 시행 등 자체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는데, 엄청난 노력으로 늘린 자체수입은 그만큼 자립도를 높이게 되고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등 지원금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비록 그 내용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중앙에 의존적인 우리 나라 지방재정의 현실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중앙의존적인 재정구조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확충노력을 감소시키는 더욱 근본적인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각종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운용과정에 중앙정부의 재량성이 개입될 여지가 높은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별교부세의 배분내역이나 배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지방양여금이나 보조금 등의 배분에 있어서도 중앙정부의 재량성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한 자치단체는 자체적인 세수확충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오히려 중앙정부로부터의 각종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데, 이러한 전략은 자치단체장이나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지방세를 확충하는 것보다 바람직한 대안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민선단체장의 입장에서는 중앙정부로부터 추가적인 지원을 확보하는 것이 주민들의 반발을 초래하는 지방세인상을 피할 수 있으며 주민들로부터 그 능력을 인정받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들의 경우에도 자신의 추가적인 부담이 아니라 외부의 지원에 의해서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방세의 증가보다 선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인사 등 제반 측면에서의 통제권이 약화된 중앙정부의 경우에도 이러한 재정제도를 활용하여 일정 부분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세원의 확충보다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확충을 선호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수확충노력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지방공공서비스는 자신의 부담하에 제공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업을 억제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세원의 확충과 더불어 지방재정조정제도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각종 교부금이나 보조금의 배분기준이 투명하게 제시됨으로써 재정의사결정에 있어 불필요한 왜곡을 방지하고 지방공공서비스의 가격으로서의 지방세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는 것이다.

3. 지방세제의 개편

지방세의 핵심적인 세목인 취득세나 등록세, 종합토지세나 재산세 등 재산과세는 기본적으로 과세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그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세수확충을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그 과세표준을 인상해야 하는 대장과세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경제성장에 따라 자연적으로 세수의 증가가 이루어지는 소득과세나 소비과세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인위적인 과정을 필요로 하는 대장과세의 성격은 지방세의 세수확충을 어렵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담배소비세나 자동차세, 면허세 등 지방세의 주요세목들은 정액세의 세율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수증가율이 낮게 되는 특징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지방세원으로서 소득과세와 소비과세를 확충하는 것이 지방세제의 발전이나 세수확충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지방세수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소득이나 소비세원의 확충이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담배소비세를 증가세로 전환하는 등의 개편과 함께 주민세와 소

득세등의 통합징수, 종합토지세의 이원화 등 가급적 지방자치단체의 세무행정이 간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IV. 맺는 말

본고에서는 민선자치시대가 출범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수 확보노력이 감소하고 있는 현상을 여러 가지의 지표를 통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과 대처 방안들을 살펴보았다. 기본적으로 현행과 같은 중앙의 존적인 지방재정구조와 더불어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이 낮은 상황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세수확보노력이 강화되기는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볼 때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가격으로서 지방자치를 통해 추구하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에 가장 핵심적인 정책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민선단체장들은 지방세 확보노력을 회피하기보다는 보다 사업에 따른 주민들의 편익과 부담을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주민을 설득함으로써 필요한 세수확보노

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조정제도 운영에 있어 중앙정부의 자의성을 배제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지방세제의 측면에서도 소득이나 소비세율이 확충됨으로써 탄력적인 세수확보가 가능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노력이 세수로 연계될 수 있어야 하며, 저비용의 세무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세제개편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判例 및 審査 決定事例

- 大法院 判例 -

1. 2000. 2. 8. 선고 98두1120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1]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9호 소정의 유예기간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사용불능기간을 위 유예기간에서 제외하여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와 관련한 법인의 고유업무로서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의 판단 기준
- [3]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한 토지로서 매립면허 취득시 인가받은 매립목적에 '상업시설확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 매립지 자체의 매각은 인가받은 업무가 아니어서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 (마)목에서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로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

지를 들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9호에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된 토지로서 공사준공인가일(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 승낙일 또는 허가일)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위 제4항 소정의 제외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 우선하여 위 제4항 제9호 소정의 4년의 유예기간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인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위 공사준공인가일 등 이후 위 유예기간 내에 토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된다 하더라도 그 사용불능 기간을 판정 유예기간에서 제외하여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에 불구하고 위 제4항 제9호가 정한 공사준공인가일 등으로부터 4년의 유예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사정은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 참작될 수 있을 뿐이다.

[2]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2항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와 관련한 법인의 고유업무로서 ‘법인등 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이외에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를 들고 있는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는 그 특수성에 비추어 법인의 목적사업과는 독립하여 인·허가의 내용만에 의하여 법인의 고유업무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인·허가를 받은 업무가 아니면 설사 그것이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이라 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고유업무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3]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한 토지로서 매립면허 취득시 인가받은 매립목적지 ‘상업시설확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 매립지 자체의 매각은 인가받은 업무가 아니어서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와 관련한 법인의 고유업무로서 ‘법인등기부상 목적사

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이외에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를 들고 있는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는 그 특수성에 비추어 법인의 목적사업과는 독립하여 인·허가의 내

용만에 의하여 법인의 고유업무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인·허가를 받은 업주가 아니면 설사 그것이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이라 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고유업무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2226 판결, 1997. 10. 10 선고 96누11556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토지는 원고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한 토지로서 매립면허 취득시 인가받은 매립목적이 ‘상업시설확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므로, 그 매립목적만에 의하여 고유목적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위 매립면허만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이나라 할 것인바,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위 매립목적인 상업시설확장이란 매립지에 상업시설을 건축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상업시설용지를 조성하여 공급하는 의미의 매립지 자체의 매각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를 매각한 것이 원고,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비업무용 토지 판정을 위한 고유업무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

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매립목적인 ‘상업시설확장’에 매립지 자체의 매각 등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를 매각한 것은 1996. 2. 29. 이므로 준공인가일인 1991. 12. 27.부터 4년의 유예기간 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 되는데, 기록상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제1토지를 매각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 볼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제2점에 관하여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된 후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 (마)목에서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로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들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9호에서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된 토지로서 공사준공인가일(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위 제4항 소정의 제외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 우선하여 위 제4항 제9호 소정의 4년의 유예기간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위 공사준공인가일 등 이후 위 유예기간 내에 토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된다 하더라도 그 사용불능 기간을 판정유예기간에서 제외하여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에 불구하고 위 제4항 제9호가 정한 공사준공인가일 등으로부터 4년의 유예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99. 7. 9. 선고 97누11843 판결 참조), 다만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사정은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 참작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건축이 금지된 1991. 8. 14.부터 1992. 7. 13.까지의 기간 및 원심 판시와 같은 소유권분쟁으로 건축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1993. 3. 22.부터 1995. 7. 6.까지의 기간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9호 소정의 4년의 유예기간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관계 법령에 의한 건축의 금지 등으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었던 기간을 위 4년의 유예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비업무용 토지 판정을 위한 유예기간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원고는 이 사건 제1, 2 토지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6호 소정의 사용금

지 토지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위 유예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한 논거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이를 독립된 상고이유로 본다 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이 위 제9호 소정의 4년의 유예기간보다 짧아 위 주장은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제1, 2토지를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앞서 이미 배척한 유예기간의 연장을 뒷받침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독립한 상고이유의 주장으로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제1, 2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없다고 한 판단은 옳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받아 들일 수 없다.

2. 2000.3.16. 선고 98두11731 전원합의체 판결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1] 조세법률주의의 의미

[2] 법인의 설립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다른 주주로부터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 소유의 주식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1]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이러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하므로, 법률의 위임이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 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2]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 본문은 “법인의 주식을 주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간주취득이 인정되는 경우를 주주로부터의 주식취득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된 때로 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61호로 신설되고 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은 법인의 설립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주주로부터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가 된 자가 주주로부터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1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법인의 설립 등으로 인한 과점주주로서 그가 이미 소유하고 있던 주식분에 대하여도 사후에 소급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셈이 되어 지방세법 규정보다 취득세 과세대상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같은법시행령에서 과세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구 지방세법 규정과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확장의 위임규정도 같은 법에서 찾아볼 수 없고, 다만 같은 법 제66조에서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집행명령을 발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으로 간주되는 주식의 취득과 같은 과세요건에 관한 법규의 제정까지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한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은 무효라 할 것이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소외 회사 설립 당시 발행된 주식 전부의 실질주주는 원고이고 나머지 주주들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여 과점주주 중의 1인인 김선희가 과점주주 아닌 이충행의 주식 500주를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주주로부터의 주식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함에 거친 증거의 취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이러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 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법률의 위임이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 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누6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 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 본문은 “법인의 주식을 주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간주취득이 인정되는 경우를 주주로부터의 주식취득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된 때로 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61호로 신설되고 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은 법인의 설립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주주로부터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법인의 설립 등으로 인한 과점주주로서 그가 이미 소유하고 있던 주식분에 대하여도 사후에 소급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셈이 되어 지방세법 규정보다 취득세 과세대상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지방세법시행령에서 과세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위 지방세법 규정과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확장의 위임규정도 지방세법에서 찾아볼 수 없고, 다만 지방세법 제66조에 서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집행명령을 발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과세대상 물건

의 취득으로 간주되는 주식의 취득과 같은 과세요건에 관한 법규의 제정까지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한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위 지방세 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은 무효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위 시행령 규정을 무효가 아니라고 하여 그 규정에 따라 행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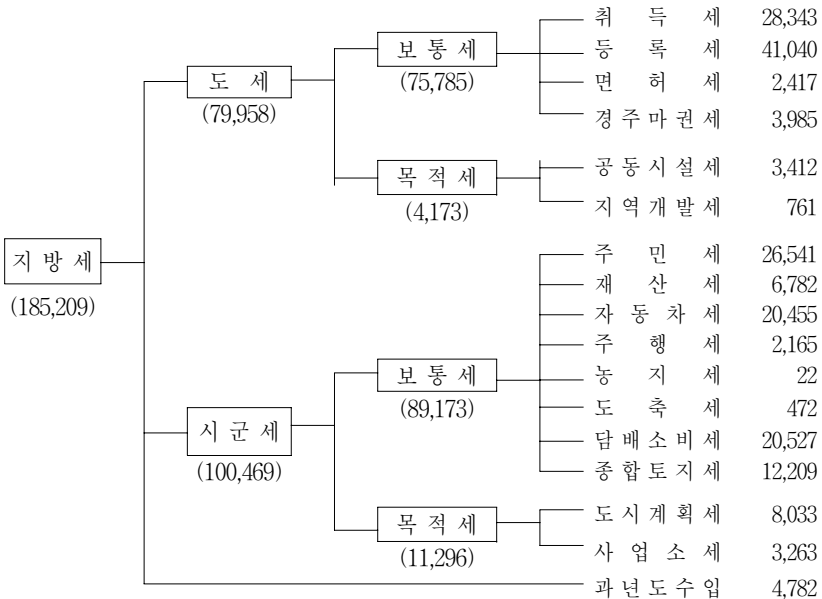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지방세제관련 시사정보 ●

◆ 2000 세목별 세수 규모

(단위: 억원)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현황」 (2000. 3월 현재)

- 편집실 -

判例 및 審査 決定事例

- 行政自治部 決定事例 -

1. 2000.6.27. 제2000-511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 사원교육시설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골프장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개업비를 포함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결정요지】

사원교육시설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농지 등을 취득한 후, 일부 토지는 농지전용허가만 받았고, 일부 토지는 건축허가만 받은 채,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고 있다면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지만, 개업비의 경우 골프장 건설공사와는 별도로 회원권 분양 등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으로서, 그 내역도 급여,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으로 이러한 비용은 골프장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라기보다는 법인의 일상적인 경상 경비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개업비중 골

프장 건설에 소요되었음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개업비를 골프장 조성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겠으므로 경정 결정

가.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 3. 9 경기도 포천군 신북면 고일리 산 59번지 일원의 토지상에 회원제 골프장을 조성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세무조사 결과 차량운반구 등 일부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비용을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며, 골프장 조성공사비의 일부를 누락하였으므로, 그 신고누락 및 과소신고한 취득비용(일반과세분 6,398,683,014원, 중과세분 10,477,348,042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28,549,450원, 농어촌특별세 75,764,980원, 합계 904,514,430원(가산세 포함)을 추징하는 한편, 호텔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1996. 10. 22.부터 같은해 12. 31. 사이에 취득한 경기도 포천군 신북면 삼성당리 228번지의 10필지 토지 26,60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유예기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733,361,280원)에서 구지방

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70,404,340원, 농어촌특별세 24,787,040원, 합계 295,191,380원(가산세 포함)을 1999. 8. 12.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이건 토지의 경우 호텔 및 연수원을 건설하기 위한 절차를 시행중에 있으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해 건축공사가 지연된 것이므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건 토지상에 있는 지상건축물을 종업원 숙소와 사무실 및 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부속토지에 해당되는 부분만이라도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며,

둘째,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취득가액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보아 추징한 비용

중 개업비의 경우 청구인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개업비를 장부에 계상하고, 그중 일부는 골프장 조성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는데, 처분청이 아무런 합리적인 기준도 없이 개업비의 대부분을 골프장 건설비용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취득세 과세표준이 적법한지 여부와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본문 및 제3호,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

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차례로 살펴보면,

첫째,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토지에 대하여 건축공사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농지전용허가의 지연으로 유예기간 내에 건축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토지의 경우에는 그 지상건축물을 기숙사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1996. 10. 19.에 이건 토지중 460-2번지의 1필지를, 같은 해 12. 16에 228번지의 7필지를, 같은 해 12. 30.에 460-1번지를 각각 취득하였으며, 이건 토지의 취득 당시 지상 건축물현황을 보면 461-2번지 토지상에 축사 및 창고용 건축물 572.11㎡, 460-1번지상에 동물관련시설 및 창고 등 270.1㎡, 470-6번지 토지상에 축사 793.6㎡, 460-2번지상에 근린생활시

설 및 숙박시설 1,173.92㎡가 있었고, 청구인은 이건 토지중 228번지의 8필지 토지상에 사원교육시설 및 향토자료실을 건축할 목적으로 1996. 12. 5. 농지전용허가만 받았으며, 같은해 12. 23.에 460-1번지에 대해 농지전용 용도변경승인을 받고서, 1997. 12. 9.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는 않고 있으며, 이건 토지중 460-2번지상에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1997. 9. 6. 건축허가를 받았고, 1998. 9. 3. 기존 건축물의 멸실신고를 하였으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는 않고 있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건축을 위한 행정절차만 일부 이행한 채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방치하고 있음을 볼 때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또한 이건 토지상의 기존의 건축물을 고유업무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도 460-2번지상의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은 대부분 동물관련시설 및 축사 등으로서 이를 창고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빙자료도 없으며, 460-2번지상의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의 경우에도 건축물의 외

관은 양호한 상태이지만 그 내부구조가 종업원 숙소 등으로 사용하기 부적합한 상태이며, 취득 당시에는 골프장을 조성 중에 있었으므로 상주하는 종업원이 거의 없어 종업원 숙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취득일로부터 1년 11개월이 경과할 무렵 건축물 멸실신고를 한 사실을 볼 때, 460-2번지상의 건축물을 종업원 숙소를 사용하였다는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건 토지에 대하여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하겠다.

둘째, 개업비를 합리적인 기준없이 골프장 건설비용에 안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의 법인장부상 개업비 총액은 12,822,358,018원이었으며, 그 중 2,220,086,863원을 골프장 취득비용으로 보아 건설가계정에 대체하였으나, 처분청은 또다시 7,369,563,826원이 골프장 취득비용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였지만, 청구인은 골프장 건설사업은 1995. 10. 9 (주)대우와 공사도급계약(도급금액 615억원)을 체결하였고, 공사도급액을 포함하여 골프장 조성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은 모두 건설가계정에 계상하여 1998년말까지 총 98,853,815,

112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개업비는 골프장 건설공사와는 별도로 청구인이 추진한 회원권 분양, 자금, 회계관리 등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으로서, 그 내역을 보면 임원 급여, 급료, 상여금, 잡급,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등으로서 골프장으로 지목변경하는데 소요된 비용이 아니라 법인의 일상적인 경상 경비에 속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처분청은 이러한 개업비를 서울사무소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과 골프

장 소재지의 본점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구분하고, 골프장 조성에 소요된 비용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채 본점에 대하여 안분한 개업비 총액을 골프장 조성비용으로 추정하여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2000.6.27. 제2000-520호(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공사를 하다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수령한 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다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나, 문화재 발견으로 인한 공사지연과, 그 후 화의개시결정으로 인하여 계속하여 공사하기를 포기하고 이를 매각하였던 일련의 사유를 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종과세할 수 없고,
-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수령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매수인의 화의개시신청으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합의해제 약정에 기초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 조치의 결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 소정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취소로 결정

가.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 7. 13.부터 1998. 7. 20. 사이에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팔달동 132-18번지의 17필지 토지 29,689㎡(이하 “이건 전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그 취득하는 도중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1996. 6. 16.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건축을 하다가 1999. 12. 24. 이 건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각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팔달동 132-18번지의 9필지 토지 11,81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6,232,392,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98,309,630원, 농어촌특별세 54,845,050원, 합계 653,154,680원(가산세 포함)과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매각하였다가 매매계약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를 다시 취

득하였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7,897,274,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89,534,570원, 농어촌특별세 17,373,990원, 합계 206,908,560원(가산세 포함)을 2000. 3. 10.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은 이 건 전체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 내에 주택건설 공사에 착공하였으나 문화재 발견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었고, 그 후 문화재 발굴이 완료된 때에 다시 공사를 재개하였으나, 그때에는 IMF 사태로 인하여 아파트의 분양이 어려워지게 됨에 따라 1998. 9. 10. 부도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회사 정리절차 개시신청 및 회사재산보전처분 신청을 하여 같은 해 9. 21. 회사재산보전처분결정을, 1999. 1. 21.에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각각 받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회사갱생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처분 허가를 받아 아파트건축사업시행권에 대하여 1999. 9. 6. (주)동서개발과 양도양수계약을, 같은 해 12. 24. 이건 전체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계약금만 수령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나, 매수자인 (주)동서개발이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3일이 경과한 1999. 12. 27. 대구지방법원에 화의신청 및 재산보전처분 신청을 함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지하기로 하고 대구지방법원의 중재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한 후 계약금은 반환하였던 것으로, 이와 같이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공사를 하다가 자금사정으로 인한 같은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공사를 하다가 자금사정으로 인한 경영의 정상화를 위해 매각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증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둘째, 청구인이 이건 전체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한 것은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에 해당되지 않

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전체토지를 다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 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가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에서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5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를 법인

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 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로 살펴보면,

첫째, 이권 토지를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권 전체토지를 취득하여 최초 토지취득일로부터 4년 이내인 1996. 1. 16. 주택건설공사에 착공하였으나, 문화재 발굴로 인하여 1997. 8. 23.까지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그 후 다시 공사를 재개하였으나 1998. 9. 1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이 되고, 1999. 1. 21.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됨으로 인하여 다시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1999. 9. 6. (주)동서개발과 1999. 9월경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 24. 이권 전체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수자인 (주)동서개발도 1999. 12. 27에 화의신청이 되어 불가피하게 2000. 1. 3. 계약금과 해약환급금 전액을 반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지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예기치 못하였던 문화재 발굴로 인한 공사지역과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으로 계속하여 공사하기를 포기하고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매수법인의 화의신청으로 매매계약을 해지하게 된 일련의 사유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전체 주택건설용 토지중 이권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으며,

둘째, 청구인이 이권 전체토지에 대해 계약금만 수령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취득이 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당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불하고 소유권자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경우이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으로 이권 전체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수령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었다가 이를 말소한 사실이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며, 대법원판결(1993. 9. 14. 93누 11319 및 1986. 3. 25. 85누 1008)에서도 소유권 이전등기의 원인이었던 양도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합의해제 약정에 기초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 조치의 결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 소정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

다는 취지로 판결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수령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계약을 합의해지하고, 계약금을 반환한 것을 이전 토지를 매각하였다가 다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지방세제관련 시사정보 ♣

☞ 종합토지세 부과절차

- 납 기 : 10. 16 ~ 10. 31(과세기준일 6. 1)
- 종합토지세액 = 과세표준(개별공시지가×적용비율×면적)×세율
- 부과절차

적용율 기준시달 ⇒ 적용율 결정고시 ⇒ 과세기준일 ⇒
 행정자치부장관, 5월중 시장·군수·구청장 5. 31까지 6. 1

부 과 수 준 ⇒ 고 지 서 발 부 ⇒ 부 과 정 수
 시군구, 시도, 10. 1. ~10. 10 10. 16. ~10. 31
 행정자치부 7~9월

※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6. 30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고시하므로 과세 기준일인 6. 1 현재로는 당해연도에 고시한 공시지가가 없어 전년도 공시지가를 사용함(시행령 제194조의16②)

- 편집실 -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현황」(2000. 3월 현재)



남편의 재기 밀전이 된 비스토 당첨!

「바가지를 긁으면 무슨 소용있겠어요. 남편도 하느라고 했는데 운이 안 따라주고 사람이 워낙 좋다보니 사기도 많이 당하고…」

신혼시절부터 둘이서 이 악 물고 돈 모아 집도 사고 어느 정도 살만할 때 남편 공장이 부도를 맞았고 또 한번의 재기를 통해 일어섰을 때는 절친한 친구한테 사기를 당했다.

부인인 김춘희(41)씨는 사는 것이 너무 억울했다. 남편에 해를 끼치며 살아온 것도 아니고 단지 한 일이라곤 잘 살아보려고 시장으로, 식당으로 닥치는 대로 일해서 돈 번 것밖에 없었다.

세상은 공평하다고 생각했는데 자신한테 이런 일만 생기니 모두가 원망스럽고 삶의 의욕 또한 떨어졌다. 남편은 미안해서 김씨에게 제대로 말도 못하고 밖으로만 돌고 부부사이도 안좋아졌다. 김씨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다시 한 번 둘이 힘 모아 살아보던가 아니면 이혼을 하던가.

『이혼은 남 일이라고만 여겼지, 제 자신의 일로 다가올 줄은 몰랐어요. 너무

도 어렵고 안되니까 이혼이란 낱말이 머리속에 떠오르더라구요』. 하지만 김씨는 이혼을 선택하지 않고 다시 한 번 남편의 마음을 다잡아 같이 살 궁리를 했다. 남편 또한 부인의 말에 따라 여기저기 막일도 알아보고 재기의 몸짓을 보였다. 김씨도 다시 식당에 나가 일하기 시작했다. 곳은 일이라면 자신있는 김씨였다.

그런 김씨 부부에게는 하늘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김씨가 산 「자치복권」이 비스토에 당첨된 것이다. 김씨는 생각했다. 차에 당첨된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운전을 잘 하는 남편이 차를 갖고 어떤일을 시작하면 이제는 망하지 않을거란 하늘의 계시가 아닐까라는.

김씨는 비스토를 팔고 트럭을 한 대 뽑았다. 남편에게 주기 위해서다. 지금 남편은 트럭으로 가구배달을 하고 있다.

「신혼초로 돌아간 것 같아요. 돈은 비록 없지만 부부사이도 그 어느때 보다도 달콤하구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으니까요」라고 하는 김씨의 얼굴엔 웃음이 가득했다.

논 단

21세기 지방세정의 환경변화와 발전방향

김 동 건

서울대학교 교수

1. 머리말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지방세정의 환경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민선자치시대에서 당해 지역의 정책결정과정에 자연히 주민들의 참여가 활발해질 수밖에 없고 주민의 요구에 대하여 선출직 공직자들이 적극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방 세정을 운영하는 데도 과거와는 다른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으며 또한 다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지방행정환경이 민선자치 시대에서 민주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변해 간다면 지방세무행정을 둘러싼 환경 역시 지방행정환경의 변화와 동일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주민들의 조세 저항을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세원 개발보다는 징수를 제고 측면에서 납세자들의 납세편의와 연결된 징수행정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 수 없다. 종래의 공급자 중심의 납세 서비스에서 납세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수요자 중심 서비스로의 전환을 다각도로

모색하여야 하는 것이다.¹⁾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환경변화는 정보화 시대의 도래이다. 21세기는 정보화 시대 이므로 정보화 사회를 맞이할 준비가 지방세정에서 일어나야 할 것이다. 경제 여건과 세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세정의 정보화 체계를 조속히 구축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납세자를 위한 공평과세의 실현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 기반확립을 위해 강력한 개혁이 지방 세정에서 확실하게 일어나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21세기 지방세정의 발전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²⁾

2. 납세자 권익 및 편의를 확대하는 지방세정구현

납세자의 권리는 납세자 권리헌장에서 밝히고 있듯이 헌법 및 법률 · 조례 등 자치법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존중되고 보장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아

1) 이삼주, “민선 시대 지방세정여건변화와 세수징수 제고 방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주관, 2000 지방재정세미나 발표논문 (2000년 7월 6일~7일), p4.

2) 행정자치부, 정보화시대에서의 지방세정 발전방안 -'99 전국지방세업무 연찬회 보고서-, 1999년 9월.

직도 때에 따라 이러한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것은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자세와 크게 연관되어 있는데, 납세자에게 필요한 정보와 편익을 최대한 제공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몇 가지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납세자는 각종 기장, 신고 등 납세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조세 탈루혐의가 없는 한 성실한 납세자이며 따라서 제출한 세무자료를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되는 데 이점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또한 납세 의무자는 법령 및 자치 법규가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조사결과를 통지 받을 권리가 있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때에 따라서는 이러한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과세 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러한 권리들도 종종 무시될 때가 있다.

이러한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확대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무 공무원의 자세 확립 및 윤리강령

정립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실무능력을 향상시키는 것과 동시에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이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기본자세를 확립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납세자 편의의 증대를 위해 새로운 납세 서비스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예컨대 신용카드·자동차 납부제도의 확대 시행이라든가, 폰뱅킹·EDI망 구축을 통한 납세 편의 제공,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한 민원처리활성화 등이 적극 검토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3. 지방 세정의 정보화 체계 구축

지방세정의 정보화 체계 구축은 이제 시급히 완성시켜야 할 역점 과제가 되었다. 그 동안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에서 이 부문에 대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지방세 종합 전산 시스템 구축이 핵심적인 과제라 하겠는데, 아직 광역 종합전산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못하고 세무 전산망과 외부 행정전산망과의 연계 활용도 미비한 상태이므로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적 추진전략 속에서 하나씩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전국 온라인 시스템 구축은 물론이고 지방세 전산 코드 및 서식 표준화, 세무행정 전 과정의 전산화 완비등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매년 지속적으로 시행해 온 업무 연찬이라든가 체계화된 부과·징수 등의 사례를 수집하여 종합 DB를 활용함으로써 지방세를 쉽게 이해하고 민원도 쉽게 해결하도록 하여 지방세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근 몇몇 자치단체에서는 인터넷 사용자의 급속한 증가 추세에 부응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지방세 신고 납부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세정발전과 납세자를 위한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지방세 인터넷 신고 납부제도란 아직 제도화되지 않고 있지만 운영 형태는 기업의 전자상거래 개념과 비슷하게 볼 수 있다. 자치단체는 세무관련 인터넷 민원 사이트에 대상세목(주민세, 사업소득세, 지역개발세, 면허세, 취득·등록세)의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서식을 올려 놓으면, 납세자는 신고기간 내에 언제든지

자치단체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서식대로 신고서를 작성하고 결제은행(지방자치단체와 인터넷 수납대행 계약이 체결된 은행)의 인터넷 뱅킹으로 결제를 하면 지방세 신고납부 처리가 되는 시스템이다.

납세자가 자치단체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고한 후 수납 대행 계약은행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결제하면 결제 은행은 자치단체의 금고은행으로 수납 내역을 작성하여 e-mail로 통보하고 수납은행은 자치단체와 수납대행은행간의 수납 대행계약에 약정된 기한 내에 교환 처리함으로써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이다. 납세자는 신고한 현황을 언제든지 자치단체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고 결제은행의 사이트에서 결제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은 인터넷을 통한 지방세 신고 납부제도는 몇 가지 시행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법률적으로 통신망을 통한 수납의 근거가 아직 부재하고, 또 과세자료 및 개인정보 유출 문제라든가 보안시스템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하겠다. 정보화체계 구축

3) 조기조, “전자상거래와 조세문제”, 『월간조세』, 2000년 1월호

과 관련하여 이런 제도는 적극 권장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아직 좀 이른 감이 있지만, 전자 상거래(e-commerce)와 과세 문제를 지금부터 정리하고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와 여기서 발생하는 소득들에 대하여 정부가 과연 과세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국가들간에 정립된 정설이 없다. 우리나라 중앙정부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나 OECD의 권고에 따라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인터넷의 보급과 정부기술의 발달로 전자상거래는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지불시스템이 개발되어 지불이 편리하게 되고 거래가 간편하게 되어서 그 결과 시공의 제약을 넘어 전자상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전자상거래에 대하여 과세하는 데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예상된다.³⁾

첫째, 거래 당사자의 신원확인이 어려워 과세원의 행사가 힘들게 된다. 예를 들어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수행하는 web site의 소유주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신원확인이 어려운 경우 거주자의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거주자간에 이루어지는 경제 활동에 대해서도 과세가 어

려워 질 수 있다.

둘째, 거래의 암호화, 원격조정, 전환 장치의 사용 등으로 세무조사와 소득 추적이 곤란해 질 수 있다. web site나 인터넷 주소의 소유자가 파악된다고 하더라도 거래의 암호화, 전송경로의 세분화 등으로 과세 당국이 인터넷 거래를 파악하고 추적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뜻이다.

셋째, 과세 증거가 되는 자료의 획득이 곤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과세 당국은 납세 의무자에 대하여 광범위한 정보 획득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정보 획득권은 해당 과세 당국의 과세 관할권 내에서는 그 행사가 용이하지만 다른 과세 관할권에서 일어난 활동에 대한 정보 획득을 위해서는 조세 협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만약 인터넷을 통해 조세 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는 조세 피난처(tax haven) 등에서 활동하는 경우 정보를 획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처럼 인터넷에 의한 전자상거래에 과세하는 문제는 조세행정에 큰 부담을 주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잘 만 활용하면 조세행정의 효율화에 기여할 수도 있다. 앞에서 소개한 인터넷을 통한 지방세 신고납부의 예에서도 확인했듯이 전자 지불 시스템을 잘 활용하면 조세

행정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전자 지불 시스템은 가치가 디지털 형태로 표현되는 새로운 형태의 화폐를 창출하게 되므로 이것이 세무행정에 끼치는 영향은 지대하다고 하겠다. 인터넷을 통한 자동신고 및 납부는 세무자료의 정확성 확보와 함께 납세 의무자 및 과세 당국 모두에게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서류 작업등이 축소되어 세무행정이 신속하게 처리 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가 다른 기존의 상거래 보다 불공평하거나 중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어디까지나 과세 방법이 공정하고 투명하며 예측가능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4. 공평과세를 위한 지방세 운영체계의 개혁

지방자치체가 정착되면서 도시화, 정보화의 도입 등 사회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나 정작 지방세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법령체도라든가 조례 및 부과징수 규칙은 시대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지방세 과세대상, 범위 등에 관한 내용이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기 보다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헌소지가 내포될 염려도 있다. 물론 운영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하위 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장점도 지니고 있고 또한 지방자치체의 정신에 맞게 포괄적 위임을 장려할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자칫 무리하고 불합리하게 법령을 적용하여 집행할 우려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는 도리어 납세자들에게 불공평한 과세가 될 수 있으므로 불합리한 법령이나 규칙의 사례를 정기적으로 수립하고 합리성에 대한 심층 분석을 행하여 시대환경에 맞는 법령이 되도록 개선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시·도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수렴하고 시민단체, 학계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 개최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세 과표의 균형조정과 현실화 노력이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제기된다. 지방세 과표를 적절히 조정하고 현실화 시켜야 한다는 논리는 지난 수 십년에 걸쳐서 논의해 온 것이지만 계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 관심과 추진 노력이 있어야 한다. 예컨대 취득세·등록세 과표가 개별공시지가, 지방세과세표준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조세부담의 형평성이 맞지 않으며 조세마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종합토지세 과표 산출시 당해연도 공시지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조세 마찰을 초래하고, 건물과표의 산출체계가 복잡하여 신뢰도를 떨어뜨리는가 하면, 골프회원권 같은 기타 물건과표의 경우 시가 반영이 미흡하여 조세 마찰을 초래하는 것 등이 좋은 예이다. 여기다가 건물·토지의 과표결정에 대한 불복 제도가 법제화되어 있지 못하여 납세자 권리보장 장치가 미흡함을 지적할 수 있겠는데 과표에 대한 불복절차를 법제화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최근 지방조직의 「슬림화」 개편추진에 따라 지방세 기구·인력이 급격히 감축된 경우가 많다. 지방정부조직의 구조조정이라는 차원에서 가능한 한 작은 조직으로 운영함이 바람직하다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으나 그러나 「슬림화」 작업이 지방세부과·징수 및 세원의 과학적 관리에 애로 요인이 된다면 이는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세 기구·인력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진단(예컨대: 외부 민간 전문용역 기관 활용) 결과를 토대로 한 기구·인력의 재 개편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5. 건전 지방재정 구조 확립 기반 조성

지방세정이 지방자치 단체의 건전재정구조확립 기반조성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명제는 민선자치 시대에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지방자치시대 도래이후 지방세 징수실적이 도리어 악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총 징수액 규모상으로는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세 징수율(즉, 부과액에 대한 징수액)로 보서는 1993년 이후부터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방세가 체납되고 있는 중요세목을 나열해 보면 주민세, 자동차세, 취득세의 순서로 가장 높은 체납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 3가지 세목의 징수율이 모두 90%이하에 머물고 있는데 이들의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각 개별세목이 갖고 있는 부과징수 특성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지만 세무 행정상의 미흡함도 여전히 많다.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지방세정의 환경변화는 급속하게 이루어지는데 세무행정상의 계획이라든가 기술 같은 것은 별로 개선이 없다면 징수율을 제고시킬 수 가 없다. 따라서 정보화시대, 디지털 시대에 맞는 세정개발, 실질적인 납세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자발적인 납부가 가능토록 하는 제도 개발 등을 서둘러야 한다. 주민세 소득할의 경우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기 위해 국세 세무서와 지방세 관련 부서를 이중으로 방문해야 하는 데 불편이 따르고 이것이 주민세 징수율 제고에 애로 사항이 된다면 이러한 문제는 국세 세무서와 지방세 세무기관간의 업무조정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양 세목을 통합 징수하도록 하되 단기적으로는 국세세무서의 업무부담이 크지 않는 그래서 비교적 제도 개선이 용이한 통합 고지의 방향을 선택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이다. 그리고 상습적인 고액 체납자에게는 출국금지, 개인 신용과 연계시킨 금융거래 제재 등의 조치를 고려해 보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다.

건전 지방재정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세 세원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앞에서 이미 언급한 지방세 부과·징수의 전 과정에 대한 지방세 전산화 추진, 지방세 통합 시스템 구축과 연계한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는 데에 지방세 전산화와 연계하는 것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가 많다.

그러나 현실은 아직 초기단계에 불과

하다. 지방세 과세자료 관리의 on-line 체계가 아직 확립되어 있지 못하고 광역시는 LAN이 설치되어 있으나 도 단위의 광역시스템은 미설치인데다가 기초자치단체의 세정운영 시스템이 각각 다르므로 지방세 통합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우선 지방세 과세자료의 on-line전산화가 시급히 구축되어야 하고, 지방세 통합전산 시스템 구축을 위한 LAN 설치 등 필요 조치들이 하나씩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숨은 세원 발굴에도 보다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한다. 새로운 세원의 발굴보다는 그 동안의 비과세·감면 대상자 중 일정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비과세·감면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조세 감면의 계속여부를 검증하는 사후관리 제도 같은 것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시스템의 데이터 베이스 등 자료의 고급화를 추진하여 과세 정보의 누락을 체계적으로 방지하고, 징세포상금 제도 등을 통해 징세업무를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차원에서 운영함으로써 세무공무원의 사기를 양양시키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 똑같은 차원에서 성실 납세자에게도 별도의 확실한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6. 맺는말

이상으로 21세기를 맞이한 지금, 우리 지방세정의 향후 발전방향을 몇 가지 간추려 살펴보았는데 지방세정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들은 하나같이 만만치 않는 것들이다. 무엇보다도 풀뿌리 민주주의를 기초하여 납세자 권리를 회복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납세자의 소리는 더욱 커지고 납세자의 불복청구는 더욱 늘어갈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거기다가 내외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냉혹한 기술경제전쟁, 범세계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세정의 투명성·민주성 제고

등 세무 당국에게 주어진 도전들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처럼 급변하는 주변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창출하려는 적극적인 행정마인드를 견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모름지기 과세 당국과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와의 자율적인 협력·조화관계를 유지하고 발전 승화시키기 위해 모든 세정을 알기 쉽게 공개하여 투명도를 높이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근거에 입각한 공평과세에 의한 공개·봉사행정을 실현하여 납세자의 공감을 얻어 내야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바로 21세기의 지방세정의 핵심과제라 생각된다. ☺

● 지방세제관련 시사정보 ●

◆ 1인당 지방세 담세액

(단위: 원)

구 분	1인당 지방세 담세액		세대당 지방세 담세액		인구수 및 세대수	
	'99년도	2000년도	'99년도	2000년도	인구(천명)	세대(천)
전국평균	343,445	391,270	1,063,655	1,199,320	47,335	15,4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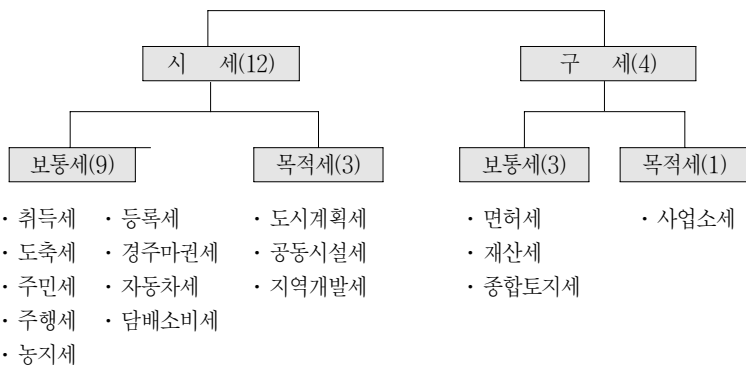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계현황』(2000. 3월 현재)

- 편집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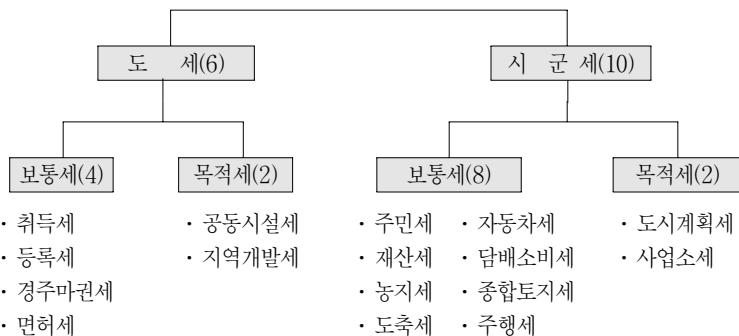
● 지방세제관련 시사정보 ●

◆ 지방세 세수구조(총 16개 세목)

○ 시세와 구세(특별시·광역시)



○ 도세와 시군세(도)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현황』(2000. 3월 현재)

- 편집실 -

산

노 향 립

누군가 나를 부르는 소리 있어
돌아보면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는데
이승 아래까지
미어 터지는 초록들
줄을 서 있네

누군가 나에게 소곤거리는 소리 있어
돌아보면 아무도 없네

머루랑 다래랑 함께 따먹던
까만 입을 그리운데
너는 여기에 없네

햇빛이 모닥불로 내리쬐는
산 산
여름 산



주민세 해설

김 종 만

행정자치부 세정과

I. 序

지방세에 있어 주민세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세목이다. 우선 균등할 주민세의 경우만 해도 '99 정기분 부과건수가 1,552만건(부과액 1,07억원)으로 지방세중 가장 많은 납세자를 가져 지방자치 구성원으로서의 회비적 성격을 가진 세목일 뿐 아니라, 세수규모로도 소득할을 포함한 '99 총부과액이 2조 8,871억원으로 등록세, 취득세에 이어 3번째의 세수규모일 뿐 아니라 전체 지방세 부과액 19조 904억원의 15.1%에 달하는 중요한 세목이다.

또한 재산과세 위주의 지방세 구조에서 소득과세 성격을 지니고 있어 지방세 세수구조의 건전화에 기여하고 있음은 물론 향후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신장도 기대되는 중요한 세목이다.

이렇게 주민세가 지방세에서 차지하고 있는 의미나 비중이 큼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은 물론 주민세 담당자 외의 일반 공무원들에게조차 주민세를 세대별로 납부하게 되는 개인균등할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99 지방세 총체납액 9,733억원중 주민세의 체납액수가 가장 많은 3,105억원(31.9%)으로

징수율 89.2%로서 지방세중 자동차세(징수율 88.7%, 체납액 2,461억원) 다음으로 징수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주민세의 체납액이 이처럼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앞에서 말한 납세자의 무관심 외에도 주민세 소득할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등 국세와의 과세시차를 들 수 있다.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주민세 납세의무도 당연히 발생 하는 것이나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대개 주민세는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몇 개월 후 세무서의 과세자료 통보에 의하여 자치단체에서 주민세를 부과고지하게 되는 데 이 시점에는 이미 납부할 돈이 없거나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가 많아 주민세 체납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주민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는 사람중에도 소득세와 2중과세라는 그릇된 인식으로 납세를 기피하는 경우가 있어 체납액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다행히 '99년말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내년 5월부터는 주민세를 소득세와 동시에 신고납부하고 주민세의 고지도 소득세와 함께 세무서에서 고지하도록 제도가 개선 되어 앞으로 본 제도가 시행될 경우 주민세의 체납세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체납액의 감소는 궁극적으로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세협조가 없는 소기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 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납세자 개개인은 성숙된 자치의식을 토대로 자발적인 납세협조를, 지방세담당 공무원은 공평하고 정확한 세정운영을 통하여 이러한 자발적 납세의식이 고양될 수 있도록 각자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II. 住民稅 主要內容

1. 本質 및 沿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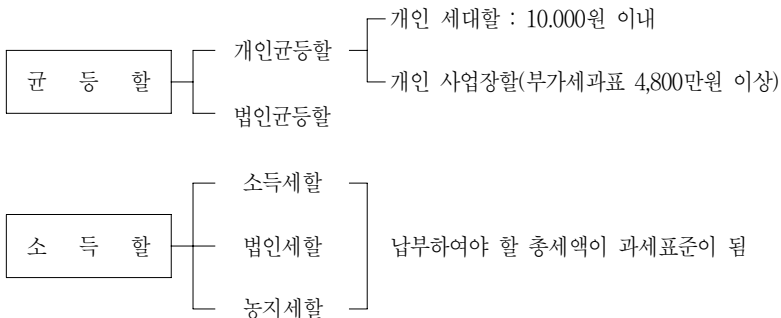
-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서 지방세의 특성 및 국민개세주의 원칙이 가장 잘 구현된 세목으로서
- 균등함은 인두세적인 성격의 조세로서 국세와 지방세를 통하여 유일한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가 속한 단체에 납부하는 최소한의 회비성격이며

- 소득환은 현행법에서 편의상 과세표준을 소득세액, 법인세액, 농지세액으로 하고 있어 이들 조세의 부가세적 성격을 지니기는 했으나 이들과는 별개의 독립세이며 근원적으로는 주민이라는 사실에 착안해서 소득의 정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분담시킨다는 데 그 기초를 두고 있다 할 수 있다.
- 주민세는 고종8년부터 시행된 호별세(戶別稅)가 그 기원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현행 체계의 주민세는 1973년 4월에 신설·시행되고 있으며 76년에는 지금의 시·군세로 되었다.

92년부터는 지역에 따라 차등 과세되던 법인세균등환을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종업원의 규모에 따라 과세하고, 94년부터는 법인세환 징수방법을 보통징수에서 신고납부방법으로 전환하였다.

98년말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개인균등환을 10,000원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99년부터 시행중에 있으며 당초 96년부터 98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려던 소득환의 10% 세율을 2000년까지 연장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99년말에는 소득세환 주민세의 징수방법을 소득세와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 住民稅體系



3. 納稅義務者

가. 均等割

(1) 개인균등할

(가) 주소를 둔 개인 : 당해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 지방세법에서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소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사실상의 주소가 상이할 경우에는 사실상의 주소에 의한다
- 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균등할의 납세의무가 없다

〈주민세 개인균등할의 납세의무자〉

①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납세의무가 있는지

- 주민세 개인균등할의 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개인균등할 이 부과되는 것이나, 주민등록상 단순히 동거 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는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세정 22670-2033, '89. 6.12)

② 회사 기숙사 등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납세의무여부

- 지방세법 제1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균등할은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제외)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가족과 떨어져 일시적으로 취업 등을 위하여 기숙사 등에 거주하고 있다면 주민등록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개인균등할의 납세의무는 없는 것임(세정 13407-839, '95. 8. 30)

③ 학생이 균등할 주민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 지방세법 제17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주소”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근거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문과 같이 학교에 다니기 위하여 가족과 떨어져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상 독립세대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주민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임(세정 13407-915, '98. 3. 10)

④ 영내 거주 군인이 납세의무자인지

- 귀문과 같이 주민등록상 단독 세대로 구성되어 있더라도 군에 입대하여 현재의 실제 거주지가 영내인 경우에는 균등할 주민세의 납세의무는 없는 것임(세정 13407-1212, '97. 10. 1)

(나) 사업장을 둔 개인

- 시·군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으로서 직전년도의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거주하는 주택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균등할 납세의무〉

- ① 소득세법에 의한 직전년도의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소득자로서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의 경우주민세 사업장할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별도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가 없고 사업자가 직접 주거하는 주택을 사업장으로 등록하여 수산업법에 의한 근해 어업을 영위하는 자는 사업장에 대한 균등할 주민세의 납세의무가 없음.
- ② 물적설비가 없이 순수하게 배달만 하든지 농산물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개인 사업장에 대한 균등할 주민세 납세의무가 없다(세정 13407-601. '95. 7. 3)
- ③ 노점상인이 개인사업장 균등할 주민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노점상인”이라 함은 노천, 노상등 건물 밖에서 계속적으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말하며 이와 같은 노점상인은 소득세법에 의한 수입이 2,400만원(95년부터는 4천8백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도 사업장에 대한 균등할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세정 22670-15180, '85. 12. 18)

(2) 법인균등할

- 시·군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마다 과세되나

① 인적설비가 있고, ② 물적설비가 있어야 하며, ③ 일정한 사무 또는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 법인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사무소 또는 사업소”마다 각각 부과하는 것으로 법인이 지점을 사실상 설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의 등기유무와는 관계없이 법인균등할 납세의무가 있음

〈 법인균등할 주민세의 납세의무자〉

① 주유소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의 납세의무

- 법인균등할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시·군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이 되는 것이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주유소를 위탁에 의하여 실제 운영하고 있는 법인(00정유회사에서 A에게 운영을 위탁한 경우 A)이 균등할 주민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세정 13407-935, '95. 9. 29)

② 노동조합의 균등할 주민세 납세의무 여부

- 주민세 균등할은 국민개세원칙의 이념을 가장 잘 반영하고자 하는 세목으로 지방세법 제17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30조의 4에 규정된 대상에 한정하여 비과세하고 있는 바 귀 단체가 사업소로서 요건을 갖추었다면 과세대상임(세정 13430- 176, '97. 4. 11)

〈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주민세 납세의무〉

① 아파트 관리를 위탁한 경우의 납세의무자

- 입주자 대표회의의 위탁을 받아 주택관리업자(법인)가 공동주택관리업무 를 수행할 경우그 관리사무소는 주택관리업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에 해당되므로 법인균등할 의 납세의무가 있음(세정 13407-1155, '97 .9. 18)

②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납세의무자

-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주민세 균등할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임대아파트관리 사무소를 임대아파트 사업주와는 별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다면 주민세 균등할 납세의무자는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되는 것이(세정 13407-137, '99. 11. 1)

※ 이 경우 임대아파트관리사무소에 대한 실제 주민세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문제는 임대주택법 제17조 제4항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자체관리하는 경우 관리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체세공과금을 관리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해 당사자간 따로 정할 수도 있는 것임

③ 자치관리에 의한 아파트관리사무소의 납세의무

-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기 위하여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고 과세관청으로부터 자치관리기구인가를 받았으므로 비록 법인격도 없고 등기를 필하지 않았더라도 동 아파트관리사무소는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기타 단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분청에서 균등할 주민세를 부과지한 것은 적법함(내무부 내시 제 95-28, '95. 1. 28)

나. 所得割

(1)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

(가) 거주자 : 국내에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소득세법 § 1①)

※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로 본다

(나) 비거주자 : 거주자 이외의 개인(소득세법 § 1①)

※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원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그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다.

(2) 법인세할의 납세의무

○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주민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 소득할 주민세의 납세의무자〉

① 거주자가 소득세 납세지를 지정신청한 경우

- 소득할 주민세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지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수시부과도록 되어 있는 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지정신청을 하여 납세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된 소득세 납세지가 소득할 주민세의 납세지가 되는 것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주소지가 되는 것임(세정 13407- 1085. '95. 10. 30)

② 비거주자가 소득세 납세지를 지정신청한 경우

-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를 신고하고 소득세를 납부하였다면 그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주민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며 세정 13407 - 475(2000. 4. 6)호는 거주자인 경우임(세정 13407- 1085. '95. 10. 30)

③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 소득할은 지방세법 제173조 제2항에서 시·군 내에서 소득세등 납세의무가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외국인이라도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면 주민세 납세의무도 성립하는 것임

4. 課稅標準과 稅率

가. 均等割

(1) 과세단위

- 법인균등할은 법인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 단위로 과세한다.
- 개인균등할은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별로 각각 과세한다

(2) 세율

(가) 개인균등할

- 주소지 시장·군수가 10,000원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으로 하고
- 개인 사업장할은 사무소 또는 사업소마다 50,000원(조례로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을 세액으로 과세한다.

(나) 법인균등할

- 시·군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 소유여부, 사업장 등록여부 불구(인적+물적+계속 사업영위)하고 과세대상이 되며 조례로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가감조정이 가능하다.
- 사무소 또는 사업소 규모별 세액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 종업원의 수에 따라 차등과세된다

종업원 \ 자본금액	10억 이하	10~30억원	30~50억원	50~100억원	100억초과
100인 초과	5만원	10만원	20만원	35만원	50만원
100인 이하	5만원		10만원	20만원	

〈무상출연된 기본재산이 자본금에 포함여부〉

지방세법 제176조 소정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라 함은 법인등기부 또는 정관상에 기재된 자본금액이나 출자금액중 높은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무상출연에 의한 기본재산도 “자본금액”에 포함됨(세정 13407 - 803, '96. 7. 18)

나. 所得割

(1) 소득세할

-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결정·경정으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 총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 〈소득세 결손처분에 따른 주민세의 결손처분 가능 여부〉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소득세액이 결손처분된 때에는 주민세 소득세할도 결손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97. 1. 1이후에는 본규정을 삭제하여 별건심사함.

(2) 법인세할

-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 원천징수한 법인세 및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한 법인세 특별부가세도 주민세 과표에 포함하여야 함.

— 〈법인세 가산세등 주민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

① 법인세 등의 가산세가 과세표준 포함여부

-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에서 가산세는 당해 세목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세의 의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가산세도 주민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세정 13407-1202, '99.10.1)
- ※ 법인세 본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는 법인이 법인세법상의 의무 불이행으로 본세없는 가산세 300만원만을 납부했다하더라도 그 법인은 이에 대한 법인세할 주민세는 납부하여야 함 .

②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하여 결정된 법인세 과표 포함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하여 결정된 법인세라고 하더라도 이를 법인세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므로 주민세과표에 포함됨
- ※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 제1항에서 국민주택건설용으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을 25%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건설업자가 국민주택 등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세액을 건설업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함

(3) 소득할 세율

구 분				세 율
소	득	세	할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	인	세	할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농	지	세	할	농지세액의 100분의 10

※ 상기 세율은 2000년 말까지 적용되며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연도분의 개인 사업장할, 법인균등할, 소득할 주민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이 가능하다.

〈 표준세율의 특례적용 시기 및 조례〉

- 지방세법('95. 12. 6. 개정된 법률 제4995호) 부칙 제7조에서 '98. 12. 31까지는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토록 규정
- '98. 12. 31 지방세법 개정으로 2000년 12. 31까지로 연장
 - ※ 서울시는 조례('95.12.30. 개정된 조례 부칙 제2조)로 '96부터 '98까지 과세기간이 종료된 법인세 등에 대하여 적용토록 규정(12월말 결산법인인 경우 '95 귀속분 법인세에 대한 주민세율은 7.5% 적용)

5. 賦課徵收

가. 普通徵收

〔 균등할
수시부과되는 소득할

나. 特別徵收

- 소득할 주민세 특별징수대상

- ① 소득세법(제5장)상의 원천징수
- ② 소득세법 제149조 내지 제153조상의 납세조합의 원천징수
- ③ 법인세법 제98조의 원천징수(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 ④ 지방세법상의 농지세 특별징수

(1) 특별징수대상

(가) 소득세할

- 소득세,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거나 농지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 당해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는 당해 소득세 등에 대한 주민세도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 ※ ‘원천징수’ 또는 ‘특별징수’는 같은 의미이나 국제에서는 ‘원천징수’로 하고 지방세에 있어서는 ‘특별징수’라 함
- 원천징수 대상(소득세법 제127조) :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갑종근로소득, 기타소득(봉사로 수입금액 제외),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봉사로 수입금액(음식, 숙박, 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

〈 사업소득의 종류〉

㉔ 사업서비스업

- a) 변호사업 · 공증인업 · 집달리업 · 변리사업 · 법무사업등 법무서비스업
- b) 공인회계사업 · 세무사업 등 회계서비스업
- c) 조사 및 정보관련서비스업중 컴퓨터조직 및 프로그램개발사업 또는 신용조사업
- e) 건축사업 · 측량업 · 기술사업등 기술검사서비스업
- f) 도선사업 · 직업소개소 또는 상담소업

㉕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 a) 의료법에 의한 의사 · 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업
- b) 의료기사법에 의한 임상병리사 · 방사선사 · 물리치료사 · 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

㉖ 자유직업

- a) 저술 · 서화 · 도안 · 조각 · 작곡 · 음악 · 무용 · 만화 · 삽화 · 만담 · 배우 · 성우 · 가수 · 기타 이와 유사한 자유직업소득
- b) 연예에 관한 감독 · 각색 · 연출 · 촬영 · 녹음 · 장치 · 조명 · 기타 이와 유사한 자유직업소득
- c) 설계감독 · 건축감독 · 기술지도 · 기술용역제공(기술연구용역 제공은 제외) 기타 이와 유사한 자유직업소득
- d) 음악 · 재단 · 무용 · 요리 및 바둑기사 · 기타 이와 유사한 자유직업소득
- e) 직업운동가 · 역사 · 기수 · 운동지도자(심판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자유직업 소득

- f)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증권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자유직무소득
- g) 저작자 또는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 h)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변리사·의사 등이 받는 고문료·수당·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 l) 교정·번역·고증·속기·필경·타자 또는 음반취입의 대가로 받는 금품
- j) 근로소득 및 a) 내지 i) 이외의 소득으로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소득
- ※ 자유직업소득중 접대부와 댄서가 받는 봉사료는 원천징수의 대상 아님

(나) 법인세할

- 법인세법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의 그 법인 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특별징수한다
- ※ 내국법인에게 이자등을 지급하는 경우 이에 대한 법인세는 원천징수하더라도 이에 대한 주민세는 특별징수하지 않는다.
- 이는 법인 결산후 당해법인이 부담해야할 법인세 총액을 사업장별로 안분하여 주민세를 계산하여야 하기 때문이며, 이 경우 주민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액에는 원천징수된 법인세액까지 포함해야 한다.

(다) 농지세할

- ①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연초를 수납하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보상금
- ② 인삼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인삼을 수납하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보상금에 대하여 농지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

(2) 특별징수의무자

소득세, 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자와 농지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주민세의 특별징수 의무자가 된다.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

- 개인사업자(부동산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
- 법인세납세의무자(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자 포함)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 민법 제32조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3) 징 수

소득세의 산출세액에서 저축세액 공제, 주택자금공제세액 등의 세액을 공제하고 실제로 납세의무자가 소득세로 납부한 또는 납부할 세액을 특별징수할 과세표준으로 하여 징수한다.

(4) 납 입

납입서에 세액계산서와 개인별 명세를 첨부하여 시·군 금고에 익월 10일까지 납입해야 한다.

※ 이자소득과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개인별 명세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나 필요시에는 제출요구를 할 수 있음.

(5) 의무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 특별징수의무자가 주민세를 특별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특별징수한 세액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징수·납입하여야 할 세액에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보통징수방법으로 징수한다.
- 주민세를 미달하게 징수·납입한 경우에도 그 미달하는 세액에 대하여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가산하여 보통징수방법으로 징수한다.
- ※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한미군의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한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음

(6) 납세조합의 특별징수 의무지방세법 제79조의3 ④)

-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주민세도 특별징수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납세조합의 조직(소득세법 §149)〉

- 읍종근로소득자(외국기관등으로 부터의 근로소득, 주한 미군근무자 제외)
- 농·축·수산물판매업자(20인이상), ○ 노점상인(20인이상)
- 기타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 납세조합에 대하여도 의무불이행의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한다.

〈 납세조합에서 특별징수하는 주민세의 납세자〉

- 지방세법 제175조 제4항에서 “제3항에 불구하고 특별징수하는 소득할중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은 납세의무자의 근무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부과하고, 이자소득·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 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은 그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근로소득에 속하는 읍종 근로소득에 대한 주민세는 납세의무자 근무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납입하여야 하고,
- 사업소득에 대하여 특별징수한 주민세는 제175조 제4항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납세조합이 소재한 시·군에 납입하여야 하는 것임

(7) 특별징수세액의 환부

- 주민세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입한 주민세액중 잘못 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여 납입할 주민세에서 조정 환부하여야 한다.
- 특별징수의무자가 환부할 주민세가 그 달에 특별징수하여 납입할 주민세를 초과 하는 경우에는 다음달에 특별징수하여 납입할 주민세에서 조정 환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음달에도 특별징수하여 납입할 주민세가 없거나, 그 금액이 환부액에 미달하여 납세자가 조정환부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가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 특별징수지 관할 시장·군수가 환부하는 경우는 보통징수의 환부절차에 의하되 특별징수의무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 < 주민세 특별징수 과오납금 환부 여부 >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67조의2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여 납입할 주민세에서 조정하여 환부할 수 있는 범위는 근로·이자소득등 계속해서 특별징수할 세액이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므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특별징수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징수 납입하였다면 이는 위 경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즉시 환부해 주어야 함.

— < 한·미 조세협약과 주민세 특별징수 > —

한·미 조세협약을 적용 받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액하여 원천징수하더라도 주민세는 전액 징수하여야 함. 이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2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 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 조제1 항에서 동협약의 대상이 되는 한국의 조세는 소득세 및 법인세만 설정하고 있으며 동협약 제1 조제2 항에서 “제1 항에 의하여 포함되는 조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로서 이 협약의 서명일자 이후에 현행 조세에 추가하여 부과되거나 또는 현행 조세에 대체하여 부과되는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협약 체결일인 '76. 6. 4 현재 이미 주민세('73. 4. 1 신설)가 과세되고 있었기 때문에 주민세를 동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로는 볼 수가 없어 지방세법 관계 규정에 의거 별도로 특별징수하여야 하는 것임(세정1268 - 7949, '80. 6. 10)

다. 申告納付

(1) 소득세할

다음에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 ①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추가납부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 ②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 ③ 소득세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으로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간의 만료일
- ④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소득세할의 신고납부·고지방법 개선》

- '99. 12. 28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6060호)되어 2001. 5. 1부터는 주민세 소득세할을 세무서장이 소득세와 함께 신고를 받거나, 부과지 하도록 개선됨
- ※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 제177조의4 및 제179조의 4

(2) 법인세할

다음에 정하는 날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 ①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120일내
- ② 법인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고지의 경우 고지서의 납부기한부터 30일내
- ③ 법인세의 신고기한을 연장한 경우 신고기간의 만료일부터 30일내
- ④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30일내

※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년도별로 추가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당해세액의 귀속사업년도에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분법인세할 주민세에 가감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가산세 및 환부이자구정은 배제된다.

〈 징수유예 등에 따른 주민세 납기〉

①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소득세 납기 기한연장 처분을 받았을 때

국세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소득세의 납기 기한연장승인을 받은 경우는 이에 대한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기도 연장되는 것임(세정 13407-478, '96. 3. 8)

②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국세징수법 제15조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소득세의 징수유예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지방세의 신고기한 연장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지방세법에 의한 기한 연장 처분을 받아야 함(세정 13407-618, '96. 6. 14)

※ 국세기본법이나 당해 세법에 의한 기한의 연장 처분을 받은 경우는 주민세의 납기도 따라서 연장되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징수유예는 주민세납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라. 國稅 등의 決定・更正에 따른 還付 또는 追徴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농지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세액이 당해 세법에 의한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명령 또는 환급 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

〈 부과제척 기간 및 환부 청구권의 소멸시효 〉

① '93 귀속법 법인세가 '99. 3. 경정된 경우 주민세 납세의무 여부

구 지방세법('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30조의 제1항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현행 지방세법에서도 법인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 주민세를 환부 또는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동 주민세는 동 법인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내에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99. 3. 부과지한 주민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임(세정 13407 - 960, '99. 7. 29)

② 당초의 부과처분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주민세의 환부대상 여부

지방세법 제178조 제2항에서 법인세의 경정 결정으로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주민세를 환부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할 주민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법인세 등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로서 주민세의 부과도 그 이후에나 가능한 것이므로 귀문과 같이 판결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액 결정 되었다면 주민세도 환부대상이 됨(세정 13407-618, '96. 6. 14)

※ 법인세·소득세등이 결정·경정된 경우 지방세법 제17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그때부터 주민세를 환부청구할 수 있거나 신고납부를 기다려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임

③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대법원 98두 11250, '99. 4. 9)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소득세법상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라 할 것이므로 소득세할 주민세의 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함('90. 7. 5 양도된 부동산에 대하여 '96. 7. 10 부과한 소득할 주민세는 적법함)

※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이견과 관련, '90. 7. 5 양도된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과세연도 과세표준의 확정신고 기한인 '91. 5. 31의 다음날부터 시작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소득세할 주민세도 그 때부터 부과할 수 있어 그 부과권의 제척기간도 그때부터 기산되는 것이므로 '90. 7. 5 양도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할 주민세를 '96. 7. 10 부과한 것은 당연무효라고 판결.

마. 納 期

- 균등할 ... 毎年 8. 16~8. 31(과세기준일 : 8월 1일)
- 기 타 ... 수시부과

〈 중간예납세액에 대한 수시부과 여부〉

법인세환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법인세로 실제 납입하거나 또는 납부할 전체 세액이 되어야 하므로 중간예납세액(법인세법 제30조)만을 과표로 하여 법인세환을 수시 부과할 수는 없음.

바. 納稅地

(1) 균등할

- 과세기준일 현재 개인은 주소지(사업장할은 사업장소재지), 법인은 본점·사무소·사업소·영업소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과세한다
- ※ 하나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가 2개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때에는 시설 등이 많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고 이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간에 협의하여 결정

(2) 소득할

(가) 소득세할

-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 다만, 특별징수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환은 납세의무자의 근무지를 관할하는 시·군, 이자소득·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의 소득세환은 그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시군이 납세지가 된다.

〈 주민세 소득세할의 납세지 검토〉

- 주민세 소득세할의 납세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75조 제3항에서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 소득세법 제6조 제1항에서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2 제1호에서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를 세액을 신고하는 때로 규정하고, 같은법 제43조에서 과세표준신고서는 그 신고 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주민세 소득세할의 납세지는 소득세법에 의한 신고 당시(양도소득세의 경우 예정신고)의 주소지가 되는 것이 타당함
- ※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예정신고는 했으나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확정신고 당시의 주소지가 주민세의 납세지가 되며, 확정신고도 하지 아니하여 세무서에서 소득세를 결정(부과고지)한 경우에는 소득세 결정시점의 주소지가 주민세의 납세지가 됨

※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 예정신고(소득세법 제105조)
 - 양도소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함 ⇒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예정신고의 효력이 없어짐
- 확정신고(소득세법 제110조)
 - 양도일의 다음연도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예정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됨)

〈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지 검토〉

① 근무지가 유동적인 자의 납세지

근무지가 유동적인 승객·화물 등의 운송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운전원, 안내원, 보조원)의 근무지는 동 업무를 시작 또는 마감하는 장소(차고지, 기숙사, 현장사무실 등)가 위치한 곳을 근무지로 보고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할 납세지를 결정하여야 함(세정 1268-7897, '80. 6. 9)

② 본점에서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주민세 납세지

지방세법 제175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소득·배당소득 등'에는 이자소득·배당소득은 물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중 근로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본점에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더라도 주민세의 납세지는 그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시·군임 (세정 13430 - 99, 2000. 1. 24)

③ 통장개설지와 사업소득의 지급지가 다른 경우 주민세 납세지

지방세법 기본통칙 175-3에서 지방세법 제175조 제4항 소정의 지급지를 “소득액이 현실적으로 지급되는 곳을 말한다. 예를 들면 이자와 배당소득을 통장으로 이체하는 경우 통장개설지”라고 하고 있음과 귀문과 같이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통장개설지와 직접 관련이 없고 본점 또는 지점.지사를 막론하고 방문판매원에 대한 사업소득이 실제로 지급되는 곳을 관할하는 시·군이 주민세의 납세지가 되는 것임(세정 13407 - 117, 2000. 1. 27)

(나) 법인세할

- 법인의 본점을 포함한 각 사업장의 소재지 각각의 시·군이 납세지가 되며
- 법인이 본사외에 사업장을 따로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법인세할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를 당해법인의 사업년도종료일 현재의 종업원과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 본사와 사업장의 각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별로 각 자치단체의 세율을 적용하여 주민세를 계산,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 또는 동일한 광역시내에 2개소 이상의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특별시 또는 광역시내에 소재하는 사업장 모두에 해당하는 세액을 그 특별시 또는 광역시내에 소재한 사업장중 인원이 가장 많은 사업장(본점이 있을 경우에는 본점)소재지 관할구청에 일괄 납부할 수 있다

- 법인세할의 안분 기준

시·군 납부세액 =

$$\text{법인세할 총액} \times \left(\frac{\text{당해 시·군내 종업원 수}}{\text{법인의 총 종업원수}} + \frac{\text{당해 시·군내 건축물 연면적}}{\text{법인의 총건축물 연면적}} \right) \div 2$$

(용어의 의미)

- ① 사업장 : 인적 또는 물적설비중 하나 이상을 갖추고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사무소 또는 사업소가 포함됨)
- ② 종업원 :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법인과의 일체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
- ③ 건축물 : 시행령 제75조의2에 규정된 건물과 구축물을 말하되 별도의 기계 장

치를 포함. 이 경우 건물이 없고 기계장치 또는 건축물만 있는 경우 그 수평투영면적을 사업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계산함.

〈 법인세할 주민세의 안분방법〉

① 임대업 법인이 임대해 공하고 있는 건축물이 안분대상인지

임대업 법인의 법인세할 안분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임대업운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만 해당하고, 임대해 공하고 있는 면적이나 임대되지 아니한 채로 공실로 있는 건물은 제외되는 것임(세정 13407-252, '96. 3. 8)

②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안분방법

귀 재단법인(원불교)의 경우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건축물 면적과 그 사업에 종사하는 인원만을 각각의 사업장별로 계산하여 안분하되 과세표준은 수익사업과 재산 양도로 발생한 법인세를 모두 합하여 계상되어야 함(세정 13407-375, '97. 4. 28)

③ 경비용역회사의 법인세할 안분방법

경비용역 인원이 과전되어 계속하여 근무하는 장소는 법인세할 안분대상은 되는 것이지만 별도의 물적설비가 없다면 법인균등할 과세대상은 되지 아니함(세정 13407 - 692, '95. 7. 19)

④ 포장도로가 법인세할 안분대상이 되는지('97년부터는 제외됨)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계산시 건물이 없고 기계장치 또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이 포함되는 것인 바 이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모든 건축물이 해당되는 것이므로 포장도로 및 포장 차량하치장의 수평투영면적도 법인세할 안분대상이 됨(세정 13407-1159, '95. 11. 15)

※ 본 질의회신은 '96. 12. 31 지방세법 시행령 제30조의 5가 개정되기 전의 것임을 특히 유의 → 현재는 영 제75조의 2 제2호의 건축물로 개정되어 포장도로는 안분대상에서 제외됨(세정 13407-232, '99. 10. 6)

바. 課稅資料 通報

- 세무서장은 소득세·법인세를 결정·경정하거나 신고납부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1개월내에 통보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4,800만원(직전 년도)이상인 개인사업자(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이상사업자 포함)의 자료도 통보하여야 한다.

사. 徵收方法

- 납세고지서는 납기개시 5일전까지 발부하되 균등할과 소득할의 합계액을 동시에 고지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따로 부과할 수 있다.

아. 少額 不徵收

- 주민세의 세액이 고지서 1매당 2,000원 미만인 때에는 주민세를 부과치 않으나 특별징수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6. 非課稅

가. 均等割

-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는 균등할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1) 균등할의 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 (2)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 (3) 주한 외국정부기관, 국제기관에 근로하는 외국인과 그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외국인(상호주의원칙)
 - (4) 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 (5) 주한외국 정부기관

〈 개인균등할의 비과세 범위〉

주민세 개인균등할은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소득의 많고 적음이나 직업이 무엇이든 구별하지 않고 똑같은 금액으로 과세하는 일종의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서 그 비과세 범위를 극히 제한하고 있는 바, 목사도 당연히 주민세 개인균등할의 납세의무가 있음. 다만,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나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경우에 한하여 개인균등할이 비과세됨.

- (6) 주한국제기구, 주한 외국원조단체
- (7) 주한외국 정부기관이나 주한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외국인
- (8) 법인이 경영하는 각급 학교
- (9) 법인의 사업장중 종교의식을 행하는 교회, 성당, 사찰, 불당, 향교등
- (10)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나. 所得割

소득할의 과세표준이 소득세액, 법인세액, 농지세액이므로 당해세의 비과세대상은 소득할 주민세가 자동적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다.

7. 過誤納金の 還付와 充當

- 주민세중 소득세(종합소득세 제외)할과 법인세할에 있어서 과오납금이 있는 때에는 당해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이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환부하거나 충당하여야 한다.
- 주민세 소득세할의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한 소득세할중 과오납금이 있는 때에는 자신이 원천징수한 세액중에서 환부해주고 조정 납입할 수 있으나 다음 달 이후 납입할 금액이 없거나 납세자가 원하지 않을 때에는 당해 주민세가 과오납된 자치단체에서 환부하여야 하며
- 소득세법에 의한 확정신고로 종합소득중 2종이상의 합산에 따른 환급세액이 2이상의 자치단체에 과오납된 경우에는 주민세를 환부받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환부 또는 충당하여야 한다.

〈 종합소득세 환급으로 인한 주민세 환부등 〉

소득세법 제4조제1항에 열거된 소득중 2가지 이상의 소득이 합산되어 환급된 경우 당해 자치단체에 기 납부된 세액이 전무하더라도 환부대상자의 거주지 자치단체에서 주민세를 환부하여야 함 (세정13407-560, '97.5.28)

Ⅲ. 自治團體別 住民稅 個人均等割 稅率 現況

금액구분	단체수(비율)	단 체 명
계	165(100%)	
5,000원	11 (7%)	[강원10] 태백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주군, 인제군 [충북 1] 옥천군
4,800원	3 (2%)	서울, 부산(기장군 3,000원), 대구(달성군 2,000원)
4,500원	12 (8%)	인천(강화·옹진군 3,000원), 광주, 대전, [경북 9]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각 시의 읍면 3,000원)
4,000원	31 (19%)	울산(울주군 2,000원) [경기16]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고양시, 구리시, 하남시, 용인시, 김포시, 이천시, 안성시(평택·이천·안성의 읍면 3,000원) [강원 3] 동해시, 속초시, 고성군 [충남 5]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논산시 (각 시의 읍면 3,000원) [전남 1] 여수시(읍면 3,000원) [경남 5] 창원시, 진주시, 밀양시, 거제시, 통영시 (각 시의 읍면 3,000원)
3,600원	5 (3%)	[강원 4] 춘천시, 원주시, 삼척시, 강릉시(각 시의 읍면 2,000원) [전남 1] 남원시(읍면 2,000원)
3,500원	2 (1%)	[경기1]군포시 [전남1] 목포시
3,000원	84 (50%)	[경기13] 과천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의왕시, 파주시, 양주군, 여주군, 화성군, 광주군, 연천군, 포천군, 양평군 [강원 1] 양양군 [충북 6] 청주시, 제천시(읍면 2,500원), 보은군, 영동군, 진천군, 단양군 [충남 6] 서산시(읍면 2,000원), 금산군, 연기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전북 9]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 고창군(군산·익산·정읍·김제의 읍면 2,000원)

지방세 해설

주민세 매설

금액구분	단체수(비율)	단 체 명
		[전남18] 순천시, 나주시, 화순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순천·나주의 읍면 2,000원) [경북14] 영주시(읍면 2,000원),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경남15] 마산시(읍면 2,000원), 진해시, 사천시, 김해시(읍면 2,500원),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함천군 [제주 2] 제주시, 서귀포시
2,500원	2 (1%)	[제주 2] 북제주군, 남제주군
2,000원	15 (9%)	[경기 1] 가평군 [충북 4] 충주시, 청원군, 괴산군, 음성군 [충남 4] 부여시, 서천시, 청양군, 홍성군 [전북 4] 완주군, 무주군, 순창군, 부안군 [전남 2] 광양시, 담양군

※ '98 : 서울 4,500원, 인구 50만 이상 市 3,000원, 기타시 1,800, 군 1,000원

● 지방세제관련 시사정보 ●

◆ 2000 지방세 성질별 세수구조

구 분	세 목	2000년 예산액(억원)	비중(%)
계	16개 세목	185,028	100
○ 소득과세(2)	주민세, 농지세	26,563	14.7
○ 소비과세(4)	담배소비세, 경주마권세, 도축세, 주행세	27,148	15.0
○ 재산과세		99,819	55.4
· 보유과세(4)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30,436	16.9
· 거래과세(2)	취득세, 등록세	69,383	38.5
○ 기 타(4)	면허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자동차세	26,896	14.9
○ 과 년 도		4,782	2.6

자료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현황」 (2000. 3월 현재)

- 편집실 -

배분과 지방세우선의 원칙적용 해설

전 동 훈

행정자치부 세정과 행정사무관

I. 의 의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과 그 활동을 위한 경제적 기초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세 채권이 다른 민사상의 채권과 달리 취급되어야 하며 이의 보장을 위하여 지방세 채권을 우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헌법에서 누구든지 성별, 종교 기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평등주의를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 채권을 일반 채권보다 항상 우선하게 한다면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헌법의 하위규범인 지방세법에서 지방세 채권을 합리적인 사유없이 언제나 우선하게 하는 것은 위헌문제가 발생하게 되나,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지방세를 일반 채권과 같이 동등하게 보게되면 그 재원을 쉽게 확보할 수가 없게 되는바 공익을 위한 지방세 채권의 우선적용문제와 개인의 이익보호문제를 여하히 조화할 것인가가 과제로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세 우선의 원칙적용은 사유재산권의 보호와 공공의 복리를 위한 공익을 조화시키면서 합리적인 일정부분에 대하여 지방세의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방세 우

선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사유와 논거는 무엇인가?

1. 무대가성

사적인 계약에 의거 계약의 당사자중 일방은 채권자의 지위에 서게되고, 다른 일방은 채무자의 지위에 서게 되는 바, 이는 계약을 통하여 서로가 채권채무이행을 통한 상호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적계약은 대가성을 전제로 하지만 조세의 채권채무 관계는 지방세법에 의거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무대가성을 전제로 성립되는 것이므로 사적계약에 의거 발생하는 일반채권과는 우선 취급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이와 같은 지방세의 우선 원칙적용은 무대가성을 전제로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사적권리가 지방세에 우선하는 논거로는 다소 미흡하다.

2. 공시성

조세는 법률상 과세요건의 충족에 따라 일률적, 무선택적, 필연적으로 성립한다는 점에서 일반채권과 근본적으로 그 성질을 달리하고 한편으로는 그 공익성으로 말미암아 그 징수확보를 위해 채권평등의 원칙에 예외적 효력인 조세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는 납세자 소유의 모든 재산에 관하여 등기등 기타의 공시방법의 필요없이 인정될 뿐 아니라 질권, 저당권 등 담보물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그 적용이 있다.(대판 83다카1105, 83. 11. 22 참조)

이는 조세채권의 성립은 법령에 의하여 성립되기 때문에 조세의 채권채무 자체가 공포되어 있고, 일반 채권자가 계약을 함으로서 조세 채권을 공시한 사실을 인식할 수가 있어 지방세 채권자체가 우선할 수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3. 공공성과 공익성

현재의 조세법률관계를 권력관계가 아닌 채권채무관계로 이해할 때에 조세채권자체의 우월성을 주장하기에는 다소 곤란할 것이나 지방세 채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기초가 되고 그 경제적 재원의 조달과 지출이 공공성과 공익성에 있다는 조세 특성에 기

인한다고 보면 지방세 채권은 고도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가지므로 일반 채권과는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

II. 배 분

가. 의의

배분은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등 채납절차로 획득한 금전에 대하여 조세 기타 채권에 의 배분금액을 확정시키는 처분을 의미하며 채납처분의 최종 절차에 해당하는 것이다. 배분할 배당금이 조세 채권이나 일반 채권액 보다도 많이 있는 경우에는 배분을 완료 하고 잔여액을 납세자에게 교부하면 그 절차가 종료되나, 통상 배당금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에는 일반 채권과 지방세 채권과의 우선 순위판단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방세법에 의한 채권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하게 되는 것이다.

나. 배분금전의 범위

지방세법 제28조 제4항 및 국세징수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그 배분금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압류한 금전
2. 채권·유가증권·무체재산권등의 압류로 인하여 채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4.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

다. 배분방법과 유형

(1) 배분주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세징수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배분금전을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제61조제1항 단서) 또는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하는 때(제62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를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금전배분은 한국자산공사가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것으로 보되, 약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금전의 배분을 한국자산공사가 공매를 대행한 경우에는 한국자산공사의 공매대행의 효력은 국세징수법제61조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공매하는 방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배분하거나 법원에서 경매에 의하여 배당할 수도 있고 한국자산공사와 약정에 의거 대행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 중 법원의 경매가 개시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부신청을 하게 되며 법원경매계에서 배분을 하게 되는 것이다.

(2) 법원의 배당절차

<법원 배당금 취급처리과정>

1. 배당금 수령전까지의 절차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 최고서 통보(법원 → 시군구) → 최고서 접수 → 해당법원(경매계)에 교부신청 → 입찰 또는 낙찰기일통지서통보(법원 → 시군구) → 입찰 및 낙찰기일통지서 접수 → 해당법원(경매계)교부청구 → 배당기일 소환장송부(법원 → 시군구) → 배당기일 참석

2. 배당참석이후의 절차

법원에 배당금수령위임장제출 → 배당표 및 법원보관금출금명령서수령 → 법원보관금출금명령서에 기재사항 작성후 법원보관계 제출 → 법원보관금출금지시서수령 → 은행에 법원보관금출금지시서를 기재작성하고 시군구 수입금출납원계좌이체 → 체납세에 충당 결재

<배당금 수령전까지의 절차>

①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및 최고서 통보와 교부신청

지방법원에서 경매개시결정을 하게 되면 시군구에 받은 지방세체납액과 법정기일을 통보하여 주도록 최고서를 통보(법원 → 시군구)하게 된다. 이때, 법원경매계에서 경매

물건을 표시하여 통보하게 되는데 이 물건에 대한 지방세 과세자료를 정리하여 『납세자 성명, 주민번호(법인번호), 주소, 법정기일 및 체납액』을 통보하면서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입찰낙찰기일통지서통보 및 해당법원(경매계)교부청구

법원에서 경매물건을 입찰하기 위해 입찰기일과 장소를 기재한 입찰기일통지서를 통보(법원→시군구)하면 시군구에서는 당해 물건에 대한 『납세자 성명, 주민번호(법인번호), 주소, 입찰기일현재의 체납액』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배당기일 소환장 송부 및 참석

법원에서 경매한 물건의 매각대금으로 배당을 하기 위하여 배당금을 배분하는데 이를 위하여 법원에서 시군구로 배당기일과 배당장소를 통보하게 된다. 여기서 배당기일 소환장은 배당기일전 10일전에 교부청구하라는 내용으로 우편송달되면 배당일까지의 증가산금을 계산·교부청구하여야 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배당수령 위임을 받은 세무담당공무원은 배당기일에 참석하여 법원경매계에 배당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배당참석이후의 절차>

④ 법원보관금 출금명령서의 작성 및 배당금수령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배당금수령 위임명령을 받은 세무담당공무원은 법원(경매계)로부터 배당표(부본)과 법원보관금출금명령서를 수령하면 해당법원(보관계)에 가서 위임장 및 법원보관금출금명령서에 기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한 후 법원보관금출금지시서를 수령한 다음, 법원보관금출금지시서에 기재사항을 작성하여 법원구내 은행 등에 가서 이를 제출하고 수표로 받거나 시군구수입금 출납원계좌로 이체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임받은 세무담당공무원이 은행에 가서 수표, 현금으로 수령할 경우 즉시 시군구의 사무실로 와서 시군구 계좌에 입금조치를 하여야 하며, 은행근무시간이후가 되거나 공휴일 등으로 시군구금고에 계좌입금을 할 수 없는 상황에는 세입세출외현금 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한 후 금고에 보관한 후 그 익일에 시군구수입금출납원의 계좌로

입금조치하여야 한다.

현재 시군구에서 법원으로부터 법원 배당금 수령시 현금수령을 하거나 시군구금고의 계좌입금 신청을 선택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반드시 시군구금고의 계좌에 입금신청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방세 체납액관련 배당금을 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을 경우 세무담당공무원이 배당금을 수표, 현금으로 수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금계좌로 입금토록 별지 서식(법원보관금 계좌입금신청서)에 의거 계좌입금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15조 제1항

출금청구자가 법원보관금을 자기의 비용으로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줄 것을 사건담당자, 계약담당공무원,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법원보관금을 신고된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법원 배당표와 체납액 총당내역 확인을 철저히 하여 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은 배당금과 배당표상의 금액을 대사하고 배당금을 지방세 체납액에 제대로 총당이 되었는지 여부를 담당과장은 반드시 일일 확인하고, 배당결과를 단체장에게 매월 보고하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는 것이다. 특히, 법원 배당표의 변조여부와 배당금 입금사항을 확인하되 법원의 배당통보서와 배당금 입금내역을 대사하여야 하는 것이다.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배당을 받을 경우 계좌입금 신청없이 바로 계좌입금토록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15조 제1항을 개정 추진할 계획이다.

⑤ 체납액 총당 및 결손처분

세무담당공무원은 법원으로부터 받은 배당표(부분)과 배당금을 납세자의 체납액에 총당하여 처리하고 체납액에 총당하고도 그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은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로서 결손처분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손처분하여야 한다. 또한 배당금을 수령한 이후에 체납액으로 총당을 하고자 하였으나 배당금수령전에 이미 납세자가 체납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배당금을 납세자에게 환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라. 배분금의 총당

배당금을 법원으로부터 수령하거나 직접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배당금을 체납액에

충당을 하여야 하는 바, 그 충당의 순서는 지방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우선 징수하는 것이며 이때, 매각대금은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의 국세·가산금과 채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한다.

1.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가산금과 채납처분비
2. 교부청구를 받은 지방세·가산금·채납처분비·국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한, 압류한 금전과 교부청구로 받은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지방세·가산금과 채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배분한 금전에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채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대금이 지방세·가산금과 채납처분비 기타 채권의 총액에 부족한 때에는 민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배분이나 채납액 충당에 있어서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순위의 착오나 교부청구의 부당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채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지방세환부금의 환부의 예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국·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압류한 국유 또는 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의 배분순위는 그 매수대금의 부분잔액(국공유재산을 매수한 자가 그 대금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잔여금액을 의미함)을 우선순위로 하고 채납액에 충당한 후 잔여금은 채납자에게 지급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배분한 금전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이를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예탁하여야 하고 그 예탁한 때에는 그 뜻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채납자에게 지급할 금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마. 배당표 작성요령

법원에서 경매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에서 직접 배당표를 작성하지 아니하지만 시군구에서 직접 배당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직접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배분계산서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전의 배분을 할 때에는 일정한 사항(채납

자의 주소·성명, 매각대금의 총액, 압류대상 지방세금액, 채권자의 주소·성명·채권액, 배분순위 및 금액, 매각대금교부일, 기타사항)을 배분계산서에 기재하여 작성하고 이를 채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때 배분계산서는 지방자치단체별 부과징수규칙상의 규정치이로 기재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국세의 배분계산서(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61호)에 의한다.

따라서 채납처분은 배분계산서를 작성함으로써 종결되고, 매각재산에 대하여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을 가진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배분계산서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열람의 청구가 있을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III. 지방세우선의 원칙 적용

가. 지방세 우선의 원칙 적용의 변천

지방세 채권의 우선 순위를 판단하기 이전에 왜 지방세 채권이 다른 채권에 비하여 우선되어야 하는가 라는 문제는 헌법상 재산권 보장문제와의 직접 충돌이 되기 때문에 위헌시비가 계속 있어 온 것이다. 그래도 지방세 채권이 일반 채권에 우선하여야 하는 사유는 지방세 채권은 고도의 공공성, 공익성을 갖춘 채권이며 공시성, 무대가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현행 지방세법상의 지방세 채권의 우선원칙은 기본적으로 권리경합과 우선관계로서 먼저 설명될 수가 있는 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물권이 채권에 우선)
- 시간에 앞서는 자는 권리에서도 앞선다(동일권리의 순위 판단)
- 물권과 제한물권의 충돌시 제한물권이 우선
- 채권의 선행주의(파산시에는 채권평등주의 적용)
- 특별법 우선적용(단, 조세채권은 압류선행주의 적용)
- 담보물권우선의 원칙
- 정세비 우선 원칙(채납처분비의 우선)

지방세 채권 우선의 원칙적용에 있어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 데 이는 채납

지방세 해설

배분과 지방세우선의 원칙적용 해설

처분비용을 충당할 목적으로 인정되고 나아가 거래의 안전도모등 정책적인 측면에서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세 우선의 원칙 적용문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는바 변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세 우선의 원칙 적용관련 규정의 변천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년 도 별	관 련 조 문 내 용	비 고
1978. 12. 6 (법률제3154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u>납기한</u> 으로부터 1년 전에 설정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단, 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헌법재판소결정('90. 9. 3 선고 89헌가 95)에 의거 『...으로부터 1년전에』 부분은 한정위헌결정됨
1991.12.14 (법률제4415호)	지방세의 <u>과세기준일</u> 또는 <u>납세의무성립일</u> (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전에 설정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은 추상적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을 뿐 구체적인 세액을 알수가 없기 때문에 위헌
1994.12.22 (법률제4794호)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전에 설정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1995. 12. 6 (법률제4995호)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전에 설정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당해세 제도의 도입되면서 그 범위에 대하여는 정하지 아니하였으나 96년도에 지방세법시행령으로 규정하였음(취득세 등 7개 세목)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	지방세법시행령 제14조의4에서 당해세의 범위를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로 함.	5개 세목으로 함(헌재 91헌가1 94.8.31 반영)

지방세 체납자의 압류재산 공매대금 배분과 관련하여 지방세 우선과 지방세법의 적용기준에 대하여 검토할 때 개정된 지방세법중 어느 시기의 법령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다음 사례를 통하여 검토를 할 수가 있다

[사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공매처분시 배당과 지방세 우선 적용판단

'91.4.19	'91.5.19	'91.11.30	'93.1.11	'93.3.25	'97.12
납세의무 성립일	신고납부 기한	저당권 설정	고지서 발송	재산압류 (채납처분시작)	공 매 (매각결정)

위 사례에서 '91. 4. 19 납세의무가 성립한 취득세에 대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고지('93. 1. 11 : 법정기일)하고 그 재산을 압류('93. 3. 25)한 후 공매('97. 12)하였을 경우 채권자의 저당권(저당권설정일: '91. 11. 30)과의 배분순위에 있어서 어느 시기를 기준으로 지방세우선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로서 압류재산을 공매하였을 경우 공매대금 배분에 있어서 어느 시기 지방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검토대상이 된다

여기서 고려할 수가 있는 대안은 다음과 같은 「취득세 납부기한 기준, 납세의무성립일 기준, 법정기일 기준」의 3가지 대안을 고려 할 수가 있겠다

첫째로, 취득세 납부기한 기준으로 할 경우로서 구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구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즉, 취득세 납기한('91.5.19)으로부터 1년전('90.5.19)과 저당권 설정일('91.11.30)과 비교하여 배분순위 결정하여야 하나 구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는 위헌인 조문으로 위헌부분(“~ 으로부터 1년전”)을 제외한 취득세 납기한('91.5.19)과 저당권 설정일('91.11.30)을 비교하여 배분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둘째로, 납세의무성립일 기준으로서 구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구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전의 것)는 위헌결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

으므로 취득세 부과처분('93.1.11)이 이루어진 당시의 지방세법을 적용, 납세의무성립 일('91.4.19)과 저장권설정일('91.11.30)을 비교하여 배분순위를 결정하여야 하며, 지방세 채납처분중 압류된 시점('93.3.25)에서의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납세의무성립일('91.4.19)과 저장권설정일('91.11.30)을 비교하여 배분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셋째로, 법정기일의 기준으로서 현행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대각결정일 당시의 법을 적용하여 법정기일('93.1.11)과 저장권설정일('91.11.30)을 비교, 배분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검토하면 지방세의 우선과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 과세요건이 성립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취득세의 과세요건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서 과세요건이 성립하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납세의무 성립은 납세의무 여부, 납세지 결정, 과세표준, 적용세율, 기타 관련법령의 적용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성립일은 구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지방세법령이 2차에 걸쳐서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 성립시점에서 관련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나, 납세의무 성립시점에서 적용될 법령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규정중 “으로부터 1년전”이 한정위원이므로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다른 일반 담보물권과 비교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방세 우선원칙의 적용관련 판례>

- 구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에서 “~으로부터 1년”이라는 부분도 헌법에 위배된다. (헌재91헌가6, '91.11.25, 헌재89헌가95, '90.9.3)
-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내 담보목적의 된 자산은 국세 등에 우선 못한다는 규정이 위헌판결나더라도 이미 근거한 모든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 (대판92누9463, '94.10.28)
- 구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에서 납부기한은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세법에서 규정한 법정납부기한을 가리킴. (대법93다4749, '94.1.25)
-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중 납세의무성립일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헌재94헌바18, 1995.8.28)

나. 지방세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의 범위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체납비용으로 충당할 목적이나 거래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세 채권에 우선하여 채권을 징수할 수가 있는 것이다.

- (1)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중에서 지방세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국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지방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된다.
- (2)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절차로 인하여 생긴 금액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든 비용은 지방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된다.
-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법정기일")전에 설정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지방세채권과 담보채권과의 우선순위 판단은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우선순위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나 법정기일은 지방세 우선의 원칙변천에서 알수 있는 바와 같이, 조세채권을 확정시키는 방법에 따라 그 법정기일에 차이가 있다.

<법정기일의 범위>

가. 신고납부하는 세목의 법정기일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중간예납하는 농지세를 포함)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나. 부과고지하는 세목의 법정기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특별징수하는 세목의 법정기일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라. 양도담보재산 등에 대한 법정기일

양도담보재산 또는 제2차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의 재산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마. 압류한 재산의 법정기일

지방세법 제28조제2항 후단의 규정(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는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지방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유형은 첫째, 자기부과제도로써 납세자가 스스로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것으로 신고납부세목의 경우 신고납부시점에서 확정이 되며, 둘째, 정부부과제도로써 과세권자가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것으로 보통징수하는 세목이 이에 해당되며 고지서를 발송하는 조사결정시점이 된다.

<납세의무의 확정과 법정기일과의 관계>

납세의무의 확정	법정기일
- 신고납부세목 : 신고납부일 - 부과고지 세목: 결정일 - 특별징수 세목: 특별징수시	- 신고납부세목 : 신고일 - 부과고지 세목: 고지서 발송일 - 특별징수 세목: 특별징수시

① 신고납부하는 세목의 법정기일

신고납부세목의 경우 법정기일 판단을 함에 있어서 지방세법제31조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중간예납하는 농지세를 포함)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와 동시에 납부하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신고납부하는 날을 법정기일로 보면 문제가 없으나, 예를 들어 취득세를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를 하지 아니하여 고지한 경우에는 법정기일을 언제

로 볼 것인가?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는 없고 신고납부로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취득세 등이 이에 해당되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 법정기일은 『신고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신고납부일』로 볼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소 지방세법령상의 규정이 미비하지만 대법원판례에서는 신고일을 법정기일로 보고 있다

[판례] 지방세 우선의 시기 판단

취득세 및 취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로부터 신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부과처분에 의하여 이를 확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3807 판결 참조), 근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에서 취득세 및 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세금과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설사 납세의무자가 위 세금에 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기만 하고 이와 동시에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가)목,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가)목에 의하여 각 세금의 신고일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을 비교하여 그 일자의 선후를 기준으로 우선순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98다 54298 99. 1. 26)

만약, 취득세 등 신고납부하는 세목을 신고조차 하지 아니하고 고지한 경우에는 법정기일을 『고지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신고납부기한 종료일』로 하여야 하는가?

비록 신고납부세목의 법정기일이 신고일이라고 하더라도 납세자가 신고한 경우에만 당해 지방세가 확정되기 때문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법정기일을 신고일로 되는 것이나, 신고조차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권자가 부과고지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고지일』을 법정기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또한,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중 등록세의 경우 법정기일 판단문제는 어떻게 하여야 하

는 것인가?

등록세는 신고납부하는 세목이지만 납세의무성립일인 등기일전에 납부하기 때문에 납부와 동시에 납세의무가 소멸되며 법정기일문제는 발생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과소 납부를 한 경우에는 추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하여는 고지일이 법정기일에 해당하는 것이다.

[판례] 당해세 우선효력의 판단

96. 1. 시행된 지방세법 제31조는 해당재산에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 등 당해세의 경우에는 그 재산에 설정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이 당해세의 법정기일전에 설정된 경우에도 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중에서 그 전세권, 질권 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신설하였는 바, 당해세 우선징수 규정에 의하면 위 개정 법률시행이후에 부과된 당해세는 위 개정법률시행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한다고 봄이 상당함으로 위 지방세법상의 당해세 우선징수규정은 96. 1. 1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원심판결이 있으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을 금지한 헌법제13조 제2항의 규정 및 지방세법의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개정법률에 의하여 새로 규정된 당해세의 우선효력은 개정법률시행전에 성립한 저당권 등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할 것임(대판 98다60880 99. 4.9)

[판례] 지방세우선의 시기판단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헌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개정된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된 것)에 의하여 새로 규정된 당해세의 우선적 효력은 그 우선적 효력을 설정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성립한 저당권이나 질권에 대해서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는 없고, 나아가 지방세법에 당해세 우선 규정이 전혀 없는 시점에 저당권을 설정받는 자에게 장래에 당해세 우선 규정이 신설될 것을 예측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으므로 저당권 설정 후 제정된 당해세 우선 규정을 그 규정 제정 전에 이미 성립한 저당권에 대해서까지 적용하는 것은 저당권자의 예측을 침해한다는 점에서도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따라서 과세관청이 배당요구를 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가 모두 근저당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부과된 당해세이고 그 법정기일(납

세고지서 발송일)이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 이후라고 하더라도, 그 조세채권은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 이전에 설정된 근거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해서는 우선할 수 없다.(대판 98다59125 99.3.12)

[헌 재] 당해세의 범위

1. 헌법재판소가 구 지방세법(1991.12.1 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 본문 중 “으로부터 1년”이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이미 판시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부적법하다.
2. 헌법 제38조 및 제59조에 근거를 둔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법정주의와 함께 과세요건명확주의를 그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고, 과세요건명확주의는 과세요건에 관한 법률규정의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불명확하면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규정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
3.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단서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방세”라는 부분은 그 안에 당해 재산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강화상의 소득세, 소비세 및 유동세까지도 모두 포함하거나 또는 그 일부가 포함되는 것으로 이를 넓게 해석하는 한, 조세법률주의의 이념인 국민의 경제생활에 관한 예측가능성의 보장을 허물고 기본권 제한입법의 한계와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규정에도 위배될 것이나, 이를 당해 재산의 소유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강화상의 재산세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는 한 헌법위반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한다.

<재판관 변정수의 반대이견>

3. 담보권 설정시거나 지방세 납부기한과 관계없이 담보권에 우선하게 되어 있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이란 당해 재산으로 인하여 부과된 지방세 및 가산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명확한 것으로서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반하거나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위 법률조항은 지방세의 확보라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담보권자의 이익을 다소 희생시키는 법률이고, 그 희생의 정도에 비하여 공공복리의 측면이 월등히

크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적법한 재산권 제한이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헌재91헌가1 94.8.31)

[사 례] 지방세 우선 적용시기와 당해세

'95. 12. 6 개정된 지방세법 제3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은 그 재산에 대하여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도록 하여 '96. 1. 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31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법정기일 이전에 그 재산에 대하여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그 설정시기가 이 법 시행일 이전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징수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 포함)이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은 우선할 수 없으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즉, '96. 1. 1이후일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이 다른 공과금과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행자부 세정13407-아619, '98. 10. 8)

② 담보 채권자의 우선권 입증

법정기일전에 설정한 담보채권을 지방세에 우선한다는 사실을 주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담보채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이 법정기일전에 설정된 사실을 『부동산등기부 등본, 공증인이 작성한 질권설정에 관한 증명으로서 그 작성일자가 법정기일전의 것, 은행장부 등에 의하여 증명되는 것, 기타 공부상에 의하여 증명되는 것』 등 공정증서로써 증명하여야 한다.

③ 당해세와 법정기일의 관계

담보채권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앞서면 우선하는 것이 타당하나 당해세의 경우 법정기일에 불구하고 담보채권에 항상 우선하는 것이다. 이 때 당해세는 당해 재산에 부과되는 지방세로서 그 범위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가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경우 당해세의 범위는 구 지방세법시행령과 관련하여 볼 때 종전('96년이후부터 '99년말 까지)에는 거래과세(취득세, 등록세)가 당해세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2000년1

월1일부터는 거래과세가 제외되도록 하였던 바, 현행법령의 적용과 관련하여 현재 압류재산에 대한 매각대금으로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세의 적용문제는 납세의무성립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 당해세를 인정하여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비록 당해세로 인정하지만 거래과세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의거 위헌 결정된 만큼 당해세로 인정을 하지 아니할 것인가가 대립되나 현재는 후자처럼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따라 위헌 결정된 만큼 당해세로 인정을 하지 아니한다.

[사 례] 당해세의 적용범위

구 지방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211호 1996. 12. 31개정) 제14조의4의 규정에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도 당해세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당해 재산에 부과되는 지방세"를 당해 재산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강화상의 소득세와 소비세 및 유통세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하게 되면 헌법규정에 위배된다는 결정(1994. 8. 31, 91헌가1 참조)을 한 바 있으므로 취득세와 등록세는 당해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행자부 세정13407-515, 2000.4.18)

[사 례] 법정기일과 압류의 효력범위

지방세법 제82조와 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는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행자부 세정13407-아176, '98. 8. 11)

[사 례] 지방세 우선 적용 관련규정 판단

지방세의 우선순위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납기한('91. 5. 19)을 기준으로 채권자의 저당권 설정일과 비교하여 판단함.(행자부 세정13430-15, '98. 3. 12)

'91.4.19	'91.5.19	'91.11.30	'93.1.11	'93.3.25	'97.12
납세의무 성립	신고납부 기한	저당권 설정	고지서 발송	재산압류	공매

[사 례] 당해세의 적용시기와 우선순위 판단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 제31조제2항제3호에 의거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은 그 전세권·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동 부칙(1995. 12. 6, 법률 제4995호)제1조에서 1996. 1. 1부터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의 시행시기('96. 1. 1) 이전에 이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인 경우로서 그 담보권 설정이 법정기일전에 이루어졌다면 지방세 우선권의 적용은 배제되는 것임.(내무부 세정13407-1761, '98. 1. 5)

(4) 임차보증금에 관한 채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는 임대차 관계에 있는 주택을 매각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는 지방세 채권에 우선하는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소액 보증금을 지방세 채권에 우선하여 보호하는 이유는 거래의 안전과 서민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인정한 것으로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우선 요건은 다음과 같다.

<적용요건>

- 소액임차인 : 보증금이 특별·광역시(군지역 제외) 3,000만원이하, 기타의 지역 2,000만원이하인 임차인
- 주민등록 : 주택 경매신청 등기전까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칠 것
- 범위 : 특별·광역시(군지역 제외) 1,200만원이하, 기타지역 800만원이하
- 변제한도 : 주택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우선 변제
- 임차인의제 :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 2인이상의 임차인이라도 1인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8 조 (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

- ① 임차인은 보증금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전에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② 제3조의2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3 조 (대항력등)

-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 3 조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등)

-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를 특별시 및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에서는 1,200만원이하, 기타의 지역에서는 800만원이하로 한다.
- ②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이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 변제권이 있다.
- ③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이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에 대한 각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으로 본다.
- ④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인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제 4 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는 보증금이 특별시 및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에서는 3,000만원이하, 기타의 지역에서는 2,000만원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사 례] 소액보증금과 지방세 우선의 범위

지방세법 제31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는 임대차 관계에 있는 주택을 매각함에 있어서 그 매각대금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에 관한 채권은 지방세 우선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에 의한 소액보증금(광주광역시의 경우 1,200만원이하)에 대하여는 지방세의 우선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행자부 세정 13407-아1054, '98. 12. 27)

(5) 근로채권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되는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지방세 채권에 우선한다. 임금채권에 대한 지방세 우선순위 판단은 다음의 국세기본법기본통칙을 참고하여 판단한다.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4-1-22...35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및 임금채권과 국세 등 다른 채권과의 우선순위에 관하여는 법 제35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30조의2의 규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그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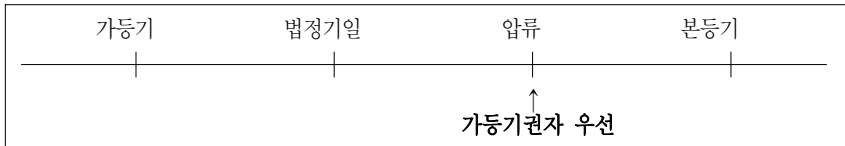
1. 압류재산에 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국세의 법정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있는 경우
 - <1 순위> :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2 순위> :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 <3 순위> : 최종 3월분 이외의 임금 및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 <4 순위> : 국세
 - <5 순위> : 일반채권
2. 압류재산에 국세의 법정기일 이후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있는 경우
 - <1 순위> :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2 순위> : 국세
 - <3 순위> :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 <4 순위> : 최종 3월분 이외의 임금 및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 <5 순위> : 일반채권
3. 압류재산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없는 경우
 - <1 순위> :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2 순위> : 최종 3월분 이외의 임금 및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 <3 순위> : 국세
 - <4 순위> : 일반채권

(6) 가등기 담보채권과 우선순위판단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에 기하여 권리이전의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등락을 포함) 기타 이와 유사한 담보의 목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당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압류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채담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지방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의 법정기일전에 가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지방세우선의 원칙 적용은 법정기일과 가등기일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판단하여야 하며 본등기를 기준으로 지방세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등기 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하는 때에는 그 뜻을 가등기 권리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7) 통정 허위행위와 지방세 우선징수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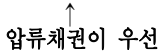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제3자와 통정하여 허위로 그 압류재산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이나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계약을 하고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당해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지방세의 법정기일전 1년내에 과점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판단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과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이나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통정한 허위계약으로 추정한다.

다. 조세채권상호간의 우선순위 검토

(1) 압류선착수로 인한 지방세의 우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하였을 경우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교부청구가 있을 때에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압류(1)	교부청구(2)	배분시 우선순위 판단
		 ↑ 압류채권이 우선

<배분의 순위판단>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하였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교부청구를 한 때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에 다음하여 징수한다.

(2) 담보가 있는 지방세의 우선

납세담보가 되어 있는 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교부청구자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라. 지방세 우선 순위의 결정판단

(1) 직접 체납처분비의 우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으로 인하

여 채납처분을 하였을 경우에 당해 채납처분비는 당해세나 담보채권에 의한 우선순위에 불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지방세법제28조 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채납처분에 관하여는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2조 제6호에서, “채납처분비”라 함은 국세징수법중 채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보관·운반과 공매에 소요된 비용(공매를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세징수법 제9조제2항에서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채납액중 국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경우에 채납처분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국세징수법시행령 제17조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채납처분비 고지서의 기재사항>

- 채납처분비의 징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와 세목
- 채납처분비와 그 산출근거·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채납처분비의 범위에는 서류송달비용, 한국자산공사공매비용 등 채납처분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이에 포함하여야 하며 그 세부내용(행자부 세정13430 - 491, 99. 4. 27에 시달한 지방세 채납처분비 징수업무지침을 참조)은 다음과 같다.

<채납처분비 징수의 일반원칙>

자치단체의 채납처분 상황에 따라 채납처분비 산출내용 및 금액은 상이하므로 실제 채납처분에 직접 소요된 비용을 징수해야 하고 납기경과후 「독촉장발부 우송료」, 압류조서 작성전에 납세자에 대한 「압류예고통지서 우송료」 등 사전예고통지에 소요된 경비는 직접채납처분비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채납처분 관련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담당공무원의 기본업무 수행에 따른 비용이므로 채납처분비 산정에서 제외하되, 채납처분 업무만을 위해 별도 보조인력을 채용·사용하는 경우에는 포함할 수 있다

<채납처분비 징수 세부요령>

- ① 채납처분비 고지서의 발부

지방세 해설

배분과 지방세우선의 원칙적용 해설

- 채납처분비 고지서에 기재할 사항
 - 채납처분비의 징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과세연도와 세목
 - 채납처분비와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 채납처분비 고지서의 발부
 - 압류물건이 있는 채납자가 채납세액을 납부할 경우 즉시 채납처분비 고지서 발부
 - 예 1) 압류물건의 채납자가 과세관청을 방문 채납세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을 시
 - 예 2) 압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후 채납자가 자동차세를 납부하여 등록번호판 교부시 등
 - 채납세액납세고지서 발부시 채납처분비 고지서 동시 발부

<채납처분비 산출방법예시>

물 건 별	내 용	금 액
부 동 산	<압류> · 등기부 열람 · 등기부등본 발급 · 압류촉탁 우송 · 압류사실 통보	열람료 + 여비 수수료 등기우송료+인지대 등기우송료
	<직접공매시> · 공매통지서 우송 · 이해관계인 통보 · 감정수수료 · 배분통지서 · 소유권이전 등기제비용	등기우편료 이해관계인 × 등기우편료 실비 이해관계인 × 등기우편료 실비
	<자산관리공사매각의뢰시> · 공매의뢰서 우송 · 자산관리공사 지급비용	등기우편료 실비(자산관리공사 청구금액)
	<압류해제> · 압류해제 촉탁서 송부 · 압류해제 통보	등기우송료 + 인지대 등기우송료

지방세 해설

배분과 지방세우선의 원칙적용 개설

물 건 별	내 용	금 액
자 동 차	<압류> · 압류통지서 우송 · 압류해제 통지서 · 통지서, 고지서, 봉투 등 용지대	등기우송료 등기우송료 실비
	<공매> · 견인료 · 보관료 · 공매통지서 · 공매비용 · 기타	실비(지급 또는 소요비용) 실비(지급 또는 소요비용) 등기우송료 자산관리공사 감정비 + 수수료 실비
유가증권	○ 주식 등 유가증권 압류	출장비 등 실비
귀금속 등	○ 귀금속 등 압류	은행·금고 보관비용
동 산	○ 동산 등 직접 공매시	공고료, 이해관계인 통지, 감정비등 실비
채 권	○ 급여, 예금 기타 채권 · 압류통지서 우송 · 압류해제 통지	등기우편료(채납자, 채무자) 등기우편료(채납자, 채무자)

※ 위 채납처분 항목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실제 투입된 비용이 있을 경우에만 채납처분비에 포함해야 함

※ 채납세액과 채납처분비 납부확인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중 우선순위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징수순위는 다음에 의하며 이 순서에 따라 충당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충당하여도 부족액이 있으나 다른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결손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채납처분비
2. 가산금
3. 지방세

위의 지방세 중에서 도세(취득세, 등록세 등)은 이 규정에 불구하고 시·군세(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예 시] 배당금을 1,000천원을 수령한 후 채납된 지방세액 1,500천원을 충당하는

순서를 판단하면 다음과 같다.(체납액 : 체납처분비 50천원, 가산금 및 증가산금 350천원, 취득세 300천원, 자동차세 300천원, 재산세 500천원- 재산세와 자동차세는 당해세가 아님)

우선 순위는 체납처분비 50천원, 가산금 350천원, 취득세 300천원을 우선배분하고 재산세나 자동차세는 우선징수 순위가 별도 없으나 시군별 부과징수규칙에 의거 달리 순서를 정할 수가 있다.

IV. 회사정리절차와 지방세의 우선 적용 판단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여기서 우선하여 징수한다함은 납세자의 재산을 강제 매각절차에 의거 매각하는 경우에 그 매각대금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지방세를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회사정리법 제210조의 규정에서는 회사재산부족의 경우 변제방법에 있어서 회사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공익채권은 법령에 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단, 공익채권에 관하여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과 우선 특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지방세 채권의 우선과 회사정리법상의 공익채권의 변제방법이 상이한 경우 이에 따른 지방세의 배당문제는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지방세법상에서 지방세 채권 우선의 규정은 존재하지만 회사정리법상의 공익채권은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되는 것이므로 지방세 채권의 경우에도 동일한 정리채권의 연장선상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방세법기본통칙31-4 제1호의 규정에서 회사정리법 제210조(회사재산 부족의 경우 변제방법) 또는 파산법 제42조(재단부족의 경우 변제방법)의 규정에 의거 공익채권 또는 재단채권과 동등 변제되는 것이 있다.

[판례] 취득세 가산세와 근저당권의 우선판단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및 그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에 대한 가산금의 각 납세의무 성립일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자진신고기간인 30일이 경과된 이후로서, 그 기간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후에 경과되었다면 그 가산세 및 가산금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할 수 없다(대판 95다51113 96.3.8)

[사 례] 가압류권자와 공매대금 배분대상자 판단

지방세법 제82조와 국세징수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바, 체납처분결과 공매대금을 배분함에 있어 가압류권자는 배분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행자부 세정13407-자439, '98. 6. 5)

[판 례] 가압류의 효력

현행법상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그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쪽의 절차가 다른쪽의 절차에 간섭을 할 수 없는 반면, 쌍방절차에서의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 밖에 없는 것이어서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처분이 종결되면 위 유체동산 가압류의 효력은 상실되며, 국세에 충당하고 남은 환가금에 대한 채무자의 반환채권에 위 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581조제1항에서 제3채무자에게 채무액을 공탁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이유는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다수 있고, 위 채권액이 모든 자에게 만족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에게 배당요구 또는 중복압류의 유무 및 각 압류의 적부를 심사하게 하고, 그 진실한 권리자 또는 우선권자에게 적절한 배당을 하게 하는 것은 제3채무자에게 극히 무거운 부담을 주고, 또 강제집행절차의 적정도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피해를 제거하려고 하는 데 있다.(대판88다카42, '89. 1. 31)

V. 배분이익의 환부처리

가. 배당이익

(1) 이해관계인의 배분계산서 열람청구권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여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은 배분계산서를 작성함으로써 체납처분이 종결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배당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을 가진자)는 배분계산서의 열람을 청구할 수가 있으며 배분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납세자의 배당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체납처분에 있어 불복이 가능함으로 납세자는 청산(배분)의 불복에 대하여도 이의신청 등 불복이 가능한 것이다.

지방세법기본통칙 72-6 【滯納處分에 대한 不服】

1. 납세자에 대한 재산의 압류·매각 및 청산(배분)의 체납처분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다.
2.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재산이 제3자의 소유인 경우 제3자는 압류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3) 법원배당금에 대한 과세권자의 배당이의신청

민사소송법 제590조에 의하여 당해 법정에서 실시한 배당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이 가능한 것이므로 우선 법원의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 이의신청있는 때에는 다른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진술을 하여야 하고 관계인이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합의된 때에는 이에 의하여 배당표를 경정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법원은 이의가 완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없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때 이의의 소제기를 위하여 이의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이의가 완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는 타채권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것을 기일로부터 7일의 기간내에 법원에 증명하여야 하나, 그 기간을 도과한 후에는 법원은 이의에 불구하고 배당의 실시를 한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593조에 의거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제592조의 기간을 해태한 경우에도 배당표에 의한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소로 우선권 기타를 주장하는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배당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관할은 채권자의 이의의 소송 배당법원이 관할한다. 그러나,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배당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합의부가 이를 관할하고 만약 수개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1개의 소를 합의법원이 관할하는 때에는 기타의 소송도 또한 이를 관할한다. 다만, 각 채권자가 모든 이의에 관하여 배당법원의 재판을 받을 것을 합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배당이의의 소송의 판결은 이의에 대한 판결에는 배당액의 계쟁부분에 관계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수액을 정하여야 한다. 이를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에 배당표의 재조제와 다른 배당절차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당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이의소송의 최초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민사소송법 제595조의 판결이 확정된 일 또는 제596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의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 일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배당법원은 이에 의하여 지급 또는 다른 배당절차를 명하여 소완료후의 배당을 실시한다. 이 경우 법원은 배당표에 의하여 다음 절차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채권전부의 배당을 받을 채권자에게는 배당액지급증을 교부하는 동시에 그 소지한 집행력있는 정보 또는 채권증서를 제출하게 하여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채권일부의 배당을 받을 채권자에게는 집행력있는 정보 또는 채권증서를 제출하게 한 후 배당액을 기입하여 반환하고 배당액지급증을 교부하는 동시에 채권자로부터 금액영수서를 제출하게 하여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의 배당액은 공탁하여야 한다.
4. 소완료후의 배당에 관한 절차는 조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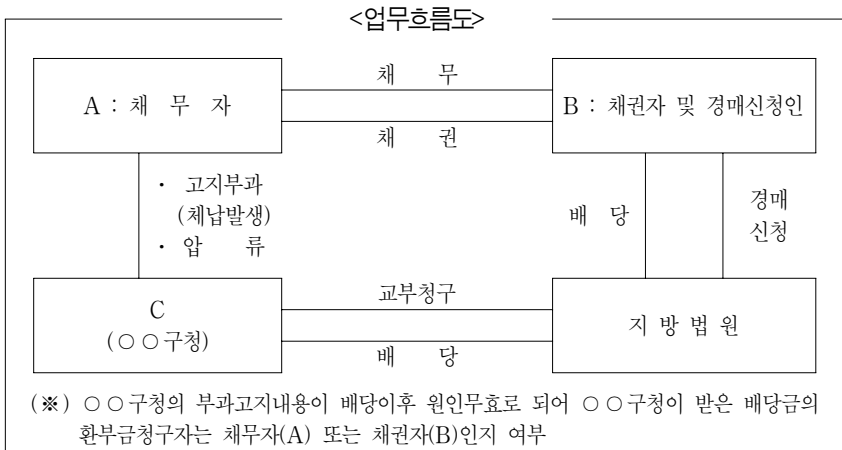
[판례] 배당이의와 조세채권의 효력

- [1] 체납처분의 압류등기가 되어있는 경우, 조세채권자가 경락기일까지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경매법원은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배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56조에 따라 경매법원에 대하여 국세의 교부를 청구하는 것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하는 배당요구와 성질이 같은 것이므로 국세의 교부청구도 배당요구와 마찬가지로 경락기일까지만 할 수 있으나,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절차로서 압류의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부청구를 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세무서장이 경락기일까지 체납된 국세의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의 당해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배당할 수 있다.
- [2] 확정된 배당표에 의해 실시된 배당에서 제외된 우선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유무
-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는 배당을 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
- [3] 강제집행진행중의 부동산에 대하여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한 압류가 있었으나 경락기일까지 압류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체납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조세채권자에게도 당해 압류등기촉탁서 등에 의하여 조사 가능한 체납세액은 그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강제집행진행중의 부동산에 대하여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한 압류가 있었으나 경락기일까지 압류사실을 신고하지도 않고 체납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조세채권자에게도 당해 압류등기촉탁서 등에 의하여 조사 가능한 체납세액은 그 우선 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에서 제외된 조세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한 사례(본 사건은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후 국가가 토지초과이득세 채권의 보전을 위한 압류를

하였으나 경락기일까지 압류사실의 신고, 체납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출, 고부청구 등의 어느 것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경락기일 이후 배당기일 이전에 금 166,798,484원의 고부청구를 하였으나 경매법원이 조세채권에 대한 배당을 하지 아니한 채 배당표가 확정된 사안임).(대판 96다51585 97.2.14)

나. 과오납 배당금의 환부

체납한 납세자의 압류재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체납지방세에 충당하고도 남은 잔여액이 있을 경우 그 잔여액은 체납자에게 환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법원의 배당금을 과다고부받은 경우에도 배당채권이 우선하는 순위에 의거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과오납된 법원배당금을 환부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납세자(A)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A의 채권자(B)가 경매신청을 하였고 A의 조세채권자인 ○○구청(C)이 법원에 고부청구를 하여 배당을 받았으나, 그 후 지방세를 부과취소한 때에는 지방세의 환급청구권자를 누구로 하여야 하는가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지방세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는 제25조의2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동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는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제46

조의 환부이자자는 다른 미납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납세의 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환부하여야 하되,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환부금(이자를 포함한다)에 관한 권리는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오납금의 환부대상자는 지방세법기본통칙45-1에서 규정한 바, 과오납금은 환부하여야 할 지방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한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환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런데 국세징수법 제81조제5항에서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충당에 있어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순위의 착오나 교부청구의 부당,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 환급예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제82조 :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의 준용)

여기서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에서 “교부청구의 부당”이라 함은 세무서장이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청구를 함에 있어서 국세채권의 금액을 잘못 판단하여 과다하게 청구하였거나 해당 국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국세징수법기본통칙 3-11-6...81참조) 그렇다면, 지방세 체납에 따른 경매실행으로 체납이 된 지방세를 배당받은 후, 당초 지방세가 원인무효로 배당금을 환부처리할 경우 환부청구권자는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

첫째, 체납지방세 납세의무자의 채권자로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 및 국세징수법 통칙 3-11-6...81의 규정에 의거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순위의 착오나 교부청구의 부당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의 환급 예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저당권자는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 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고 민법 제34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저당물건의 소멸·훼손 등으로 인하여 저당권 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별첨 : 대판 94다 16045, 대판 86다카 1058 참조)

또한 채권자는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거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의 받을 지방세환급금에 대하여도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A의 채권자(B)가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을 경매로 금전을 선순위자인 ○○구청 보다도 후순위로 배당받았다고 당초 지방세채권이 원인무효로 된 경우에는 A의 채권자에게 지방세 환급예의 따라 환급처리하고, 그 채권을 초과한 배당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납세자에게 환부처리함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체납지방세의 납세의무자에게 과오납된 배당금을 환부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지방세법 제25조의2, 제45조 및 통칙 45-1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의 부과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당해 납세의무자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환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체납지방세가 배당이 이루어진 이후 당초 체납된 지방세를 부과 처분 취소하는 경우 환부하는 지방세의 환부청구권자는 당초 납세의무자이고 채권자는 당초 납세의무자로 부터 채권이행청구를 하여 변제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첫째이유와 둘째이유를 검토하여 보면,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 및 지방세법 8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순위의 착오나 교부청구의 부당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지방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환부처리하여야 함으로 체납지방세를 교부청구하여 부당하게 배당받은 과세권자(C)는 당해 체납 지방세를 부과 취소하여 환급하는 경우 납세자(A)의 채권자(B)에게 환부처리하고 그 채권액을 공제한 후 잔여금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잔여금액에 대하여는 채무자인 납세자(A)에게 배분함이 타당하다.

<경매이후 조세환급 관련 대법원 판례>

[판례] 국가의 체납처분으로 인하여 질물인 금전채권을 압류당한 질권자에게 국세 환급에 따라 배분될 금액이 있는 경우 질권자의 물상대위권행사

가. 국세징수법 제34조, 제80조제2호, 81조제1항 및 제84조 등의 규정은 국가의 채

납처분으로 인하여 질물인 금전채권들이 압류되어 그 질권 등이 상실되는 경우 이러한 질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그 배분된 금원을 한국 은행에 예탁하도록 의무화한 것이고, 이처럼 세무서장에게 배분된 금원에 대하여 공탁의무가 부과된 이상, 위 금원은 압류된 것과 같이 특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질권자는 민법 제342조 단서에 의한 압류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그 물상대 위권의 효력이 미쳐 국가로부터 이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질권설정자 또는 이로부터 양도·전부받은 자는 그 배분된 금전 중에 위 담보채권을 초과한 잔액이 없는 한 국가에 대하여 직접 이를 청구할 수는 없다.

- 나. 위의 경우 질권자의 채권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비록 질권자가 위 환급채권에 대하여 민법 제342조 단서에 의한 압류를 하기 전에 제3채권자가 미리 위 환급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대판 86다카 1058, '87.5.26)

[판례] 부당하게 배당받은 국세의 환급금에 대한 청구권자 범위

- 가. 국가가 국세의 채납처분절차 당시 일반채권자로 부터 공매절차에 의한 매각대금 중 국세 등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을 받고 있었던 상태인 경우 국가가 그와 같이 과납세액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국세를 교부받지 않았더라면 배당에 참여한 바 있는 일반채권자들이 위 국세환급금 상당의 금원을 그들의 채권액에 따른 비율에 의하여 교부받았을 것이어서 국가의 부당이득으로 인한 실제의 피해자는 채무자가 아니라 일반채권자라고 결국 그 환급금에 대한 적법한 청구권자는 일반채권자들이다.
- 나. 국세 감액결정처분은 이미 부과된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사후에 일부 취소하는 처분이므로, 취소의 효력은 그 취소된 국세 부과처분이 있었을 당시에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이는 판결 등에 의한 취소이거나 과세관청의 직권에 의한 취소이거나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대판 94다 16045, '95.9.15)

[판례] 공매처분 부동산의 매각대금에 대한 체납지방세와 저당채권의 우선배분 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저당권 설정자가 타인에게 양도하고 저당권 설정자에게 아무런 조세의 체납이 없었다면, 양수인에 대하여 부과한 지방세를 우선 징수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의 공매처분한 매각대금 중에서 양수인의 체납지방세를 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분받는 것은 부당하다.(대판 88다 8385, '91.9.24)

[지침] 지방세 환부대상자 판단 및 환부방법(내무부 세정13407-122, '98. 2. 14)

1. 환부대상

- 지방자치단체장이 압류한 체납자의 채권에 제3자의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채무자로 부터 지방세를 우선 지급받은 후 당해 지방세의 감액결정으로 과오납되어 환부금이 발생한 경우
- 법원경매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체납세액을 교부청구하여 체납 지방세에 충당한 후 감액결정으로 과오납되어 환부금이 발생한 경우

2. 환부대상자

- 지방자치단체장이 체납지방세에 우선 충당함으로써 변제 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 질권자나 배당에 참가한 배당우선순위의 채권자를 알 수 있을 때에는 채권질권자나 배당에 참가한 배당우선순위 채권자에게 환부

3. 환부방법

- 과오납 환부를 하기전에 납세자, 채권질권자나 배당에 참가한 후순위 채권자에게 환급금 발생사실을 통보하고
- 정당한 채권·채무관계를 확인하여 지방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지급

[사례] 교부청구후 잔여 지방세 환부대상자 판단

지방세법 제82조 및 국세징수법 제8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순위의 착오나 교부청구의 부당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지방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환부처리하여야 하므로 체납 지방세를 교부청구하여 배당받은 과세권자는 당해 체납 지방세를 부과 취소하여 환

급하는 경우 배당순위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환부처리하고, 그 채권액을 공제한후 잔여금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잔여금액에 대하여는 채무자인 납세자에게 배분함이 타당합니다.(내무부 세정13407-122, '98. 2. 14)

[사 례] 부분결손처분여부 판단

지방세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될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바, 체납자의 재산조사 및 채권확보 조치를 완료한후 체납자의 체납처분대상 재산의 평가금액이 체납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때에는 체납액의 부족분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으나, 이는 과세권자가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에 재산조회후 재산유무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행자부 세정13430-204, '98. 7. 8) ☹

● 지방세제관련 시사정보 ●

◆ 2000 지방세 규모(세입목표액) : 18조 5,209억원

— <주요세목별 세수 규모 및 비중> —

· 등 록 세	4조1,040억(22.2%)
· 취 득 세	2조8,343억(15.3%)
· 주 민 세	2조6,541억(14.3%)
· 담배소비세	2조527억(11.1%)
· 자동차세	2조455억(11.0%)
· 종합토지세	1조2,209억(6.6%)
· 재 산 세	6,782억(3.7%)
· 기 타	2조9,312억(15.8%)

※ 2000년 국세(14개 세목) 79조7,029억원의 23.2%

자료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현황』(2000. 3월 현재)

- 편집실 -

부도업체 고액채납액을 완전정리 하면서...

안 도 영

강원도 삼척시 세무과

96년 세무과 정수팀에 근무하면서 세법에 전문성이 부족하였으나 97. 4월 내무부주관 세무교육과 그 동안의 법규연찬을 토대로 하여 평소 실무에 접하기 드물다 싶은 고액채납액을 정리하게 되는 기회가 있었는데 특이하다 싶은 정수 사례라 생각되어 소개코자 합니다.

우리시 관내에 소재를 둔 굴지의 시멘트 회사인 ○○제조업체가 매년 흑자운영을 해오다가 97년 IMF 여파로 인해 부도가 나자 연간 20여억원에 이르는 지방세입의 감소를 가져왔고 공장에 종사했던 많은 지역주민의 실직 그리고 시장경기 위축 등은 실로 금전으로 따지기에 너무나 큰 손실이었다.

시에서는 본 업체에 대해 원활한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자 세무조사 기일을 연기하는 등 아낌없는 세정지원을 하였으나 부도위기에 이르자 97. 7월 기간의 성실납세 여부를 실사한 결과 과소 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록세 등 총 4억2천여만원을 97. 12월에 추징하게 되었고 98년에는 정기분 지방세·세외수입 1억5천만원이 부과되어 총 6억7천여만원에 이르는 지방세가 채납되어 이월되었다.

98년 2월 채권확보를 위해 법인명의의 공장과 사택을 적기 압류하였으나 공장에 대한 모든 부동산이 주채권은행인 ○○은행에서 우선순위로 질권을 설정하였기에 공장이 경매될 경우 지방세 우선배당이 불가능하여 결손을 검토해야 할 처지였다.

행여나 주 채권은행이 확인하지 못한 부동산이라도 있을까 하여 재산세·종토세 과세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니 부동산을 취득해 놓고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한 토지(전 57필지 87,560㎡-등기부상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 설정이 되어 있음)가 조사되어 이를 대위등기 한 후 압류·공매를 검토해 보았으나 농지인 관계(농지취득자격 제외자)로 대위등기를 할 수 없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만 압류하여 놓았다.

공장이 97년 주 채권은행에 의해 경매되어 98년 8월 낙찰되자 법원에서 경매 배당을 하게 되었다.

배분하기를 98재산세·종합토지세를 당해세로 적용하여 7천8백만원을 우리시에 배당하였으나 이해권자인 성업공사가(주 채권은행 대위권자) 우리시에 배당한 당해세 적용은 부당하다고 이의를(당해세 우선규정이 제정되기전에 설정된 저당권을 우선해야함)제기 하였다.

배당 승소여부에 대해 과원 모두 한자리에 모여 토의한 결과 전문인에게 자문을 구하기로 하여 행자부 방문, 시청고문번호사에 수차례 자문, 전국 시·군·구청 협조 유사판결사례 수집(서울지법 97가단60679, 서울남부지원 97가단52503, 춘천지법원 주지원 97가합

1750, 대법 89다카13155 등)등을 통해 검토한 결과, 우리시가 유리(당해세인정)하다는 견해가 많아 결국 시 고문 변호사를 수임하였고, 98. 9월 배당이의 소에 대항하여 6개월간 다툰 결과 관할법원으로부터 패소(당해세 우선규정이 제정되기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서는 당해세 우선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하자 소송비만 날리고 채납액은 한푼도 받지 못하는 헛고생만 하였다.

결국 압류물건 중 공장부분은 날아갔고 남아있는 사택과 가등기청구권이 있으나 이 또한 채권은행에서 설정한 질권보다 후순위여서 공매를 할 수 없었고 다만 자동차 10대를 자체 매각 처분하여 6백여만원을 세입처리하였다.

98년 10월 채납세를 확보할 여지가 없어 전전공금 하던 중 타사 시멘트공장 근무직원을 통해 시멘트업체의 정황을 상의하던중 향만부두에 설치된 시멘트 출하기지 시설(싸이로와 부대시설)은 본 공장과 주종관계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본 법인의 출하기지 관리소인 ○○향만청관리사무소를 찾아갔다. 향만청에서도 부도법인의 향만사용료 체납 등 골머리를 앓고 있던터라 우리시 세정업무 협조에 매우 호의적이었다.

향만법상 향만시설관리권은 성질상

물권으로 보며 민법상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시설사용자는 항만청의 설치허가를 득하여 시설물을 설치한 다음 당해 시설물은(크링카싸이로와 사무실·운전실 1동) 항만청에 기부채납하여 20년간 무상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사용권리인 것인데, 당초에는 관리권의 의미는 물론 관리권이 있다는 사실 자체도 몰랐다. 다만 성업공사만이 채권회수 과정에서 알고 부도법인이 등기를 하지 않은 것을 98년 2월 대위등기하여 가압류를 해 놓은 상태였다.

따라서 즉시 등록관청인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에 문의하여 관리권을 압류하기에 이르렀고 훗날 본 공장을 운영하는 자는 반드시 본 시설물을 사용해야 하므로 채권확보에는 한시름 놓게 되었다. 다만, 압류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사무소 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법인대표에게 배달증명하고 일간지에 공시송달하였다.

그후 이듬해 6월 성업공사 소유인 시멘트 본공장을 임차하여 가동한다는 업체가 나타났고 드디어 공장임대차계약이 이루어져 공장가동과 관련한 우리시의 각종 인허가 사항은 모두 해결되었으나 항만시설관리권 매각처분만이 최종 문제가 되었다.

먼저 임차업체에서 동 관리권을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을 요구하였으며 이를 검토한 결과 (국정법 제62조 수의계약) 7억여원에 이르는 채납액도 해소하고 지역경기 활성화와 공매함이 제반 여건상 적절치 않아(항만권은 본 공장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성업공사 소유의 본 공장은 이미 경매중에 있어 공매·경매 낙찰자가 각기 다를 경우 지역으로나 공장운영자나 모두 이로울게 없음) 요구조건을 수용하기로 하고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 동 조건을(채납액 전액납부) 통보하였다.

그러나 관리권의 잔존가액을 비교 검토한 임차업체에서 채납액에도 미치지 않는 매매가액을 제시하며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해와 결국 수의계약은 파기되고 말았다.

어떻게 하든 공장은 가동되어야 겠고 지원해줄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던 중 본 공장소유주인 성업공사가 인수하게 되면 본 공장과의 매치되고 공장 일체를 임대차할 수 있으므로 성업공사가 인수하여 줄 것을 서면 요청하였다.

그러나 성업공사에서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거 부동산을 인수할 수 있는 경우가 제한되어 있다는 회신으로

양사 모두 수용이 불가하다기에 이럴수도 저럴수도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임차업체에서는 이미 제품생산을 시작하였고 물류수송방안은 없기에 하는 수 없이 관리권을 공매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공매는 여러번 경협이 있어 일반 부동산과 같이 진행하면 된다는 생각이었지만 이번 건은 고액이고 생소한 건이라 자칫 잘못하면 어떻하나 겁도 났다.

그리하여 공매가능 여부에 대해 항만청(이전등록필 여부), 고문번호사(하자 여부), 법무사(절차), 등기소(등기작성요령) 등 여러곳에 알아보니 공매가 가능하다는 답을 얻었다. 이어 감점사와 함께 관리권을 평가하러 현지를 방문해보니 문제가 생겼다. 싸이로를 가동하는 기타 부대시설(전기설비 등)이나 구축물(하역용 철골조 등)이 있는 것이었다.

문제는 관리권만 공매할시, 동 시설물 일부가 체납업체 소유이므로 낙찰자가 모든 시설물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다.

부라부라 구축물 등 26건을 추가 압류하여 감점하였고 그 결과 관리권이 9억, 부대설비가 7억원으로 평가되어 공매최저가가 16억원이 되자 너무 높아 임차업체로서는 매입재력 등을 고려하여 응찰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임차업체에서는 공장은 가동되어 제품은 계속 생산되고 시설물은 사용하여야 겠기에 자구책으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동의(압류권자로서 사용허가)를 요구했다.

이에 동의조건으로 반드시 공매에 응할 것과 이를 보증하는 조건으로 체납액에 상당하는 현금보증(7억원)을 제시하자 수락하였고 임차업체명의의 은행에 타금을 ○○은행에 질권설정(법인인감증명과 양도성예금통장)하고 항만청에 사용동의를 해 주었다.

공매는 계속 유찰되어 최저가 50%에 달하는 시점인 99년 10월에 임차업체가 최종(7회차) 낙찰에 응하므로써 종결되었고 설정한 예금질권도 해지하였다.

이제 마지막으로 배분·이전 등 청산절차를 밟아야 했다. 가압류권자인 성업공사는 배분에 참여치 못하므로 우리시만 배분하여 체납처분비를 포함, 7억원을 세입처리하였고 배분잔금은 체납법인에게 돌려주어야 되는데 수령자가 없어 공탁하고자 했다.

그러나 배분잔금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 채권자 3인이 우리시를 제3채무자로 하여 확정판결문(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을 각각 제시하므로 인해 채권이 경합되었다.

가압류권자로 인해 동 배분잔금을 확정할 수 없어 법원에 집행공탁하고자 절차를 밟는 중 공교롭게도 가압류권자가 취하를 하는 바람에 공탁취소를 하고 확정판결자 2인에게 안분 지급함으로써 무난히 처리하였고, 관리권 이전은 항만청에 촉탁의뢰하여 소유권을 이전해주도록써 채납법인의 밀린 징수금과 임차업체의 숙원사업을 모두 해결하였다.

자칫 채납으로 남아 결손처분 해야할

지도 모를 뻔한 고액채납 징수금을 생소하기도 하고 예상치 못했던 “항만시설관리권”이란 유체동산을 조사하게 되어 압류에서 공매에 이르기까지 복잡하기도 하였지만 그동안 배운 세무교육을 밑거름 삼아 큰 무리없이 처리하여 새로운 경험을 하였고 또한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는 점에서 지방세무공무원으로서 자못 가슴 뿌듯한 계기가 되었다. ☺

● 지방세제관련 시사정보 ●

◆ GDP대비 조세부담율

(단위 : %)

구 분	'97년	'98년	'99년	2000 예산
조세부담율	19.5	18.9	20.0	19.5
· 국 세	15.4	15.1	16.1	15.9
· 지 방 세	4.1	3.8	3.9	3.6

주 : 2000년 GDP : 5,021억원, 국세 797,029억원, 지방세 185,209억원

※ 외국의 조세부담률

(단위 : %)

구 분	일본('96)	미국('96)	영국('96)	독일('96)	프랑스('95)	이탈리아('94)
조세부담률	18.0	21.6	28.7	22.6	24.8	28.5
· 국 세	11.0	12.5	27.4	19.9	19.9	26.4
· 지방세	7.0	9.1	1.3	2.7	4.9	2.1

주 : 재정금융통계월보(일본, 대장성, 1998. 4) GDP기준, 사회보장분담금 제외
 자료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현황』(2000. 3월 현재)

- 편집실 -